※ 최종 책자는 2015년 12월 말 배포될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시행시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2015년 12월 28일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정부
korea.go.kr

# Contents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01 세제 3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3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4
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5
4.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6
5.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7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8
7.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9
8.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10
9.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11
10.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12
1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13
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4
13.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15
14.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16
15.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17
16.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18
1.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20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21

## 02 국토·해양 23

1.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23
2.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24
3.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25
4.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26
1.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27
2.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28
3.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29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30
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31
6. 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대상 확대 32
7. 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33
8.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 혼획저감장치 부착 조업 34
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 35
10.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36
11.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대상 기준 상향조정 37
12.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38
13.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39
14.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 40
15.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 41
16.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 42
17. 국가와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43
18.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44
19.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45

## 03 환경·기상·안전 47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47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48
3.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50
4.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51
5.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52
6. 사전적격심사제도(PQ) 시행 53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54
8.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55
9.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59
10.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60
1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61
12.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62
13. 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63
14.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64

# Contents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기상정보 선진화, 슈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65
2.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 66
3.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 확대 67
4. 3차원 기상분석 날씨해설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68
5. GIS 기반의 태풍정보 동적 제공 69
6. 북극해빙감시정보 대국민 서비스 개시 70
7.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110번)로 확대 운영 71
8.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 72
9. 세계기상통신망 전환 73
1.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74
2.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및 서비스 개선 75
3. 빅데이터 기반 「주간안전사고 예보」 한파, 폭염까지 확대 76
4.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77
5.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 의무화 78
6.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79
7.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신설 80
8.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을 스마트 폰에 모두 담았습니다 81

**04 복지·고용노동 83**

1.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83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84
3.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85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86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87
6.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 88
7.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89
8.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90
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91
10.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92
11.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93
1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94
1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95
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6
15.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97
16.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98
17.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99
18.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100
19.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101
2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02
1.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103
2.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104
3.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105
4.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축소 106
5. 해외취업 연수 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등 107
6.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108
7.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 부담 109
8.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110
9.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111

**05 국방·병무 113**

1.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113
2. 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개선 114
3.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115
4.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 운용 116
5.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 신설 117
6.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시 국가보상 실시 118

# Contents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기준 강화 119
8. 동원예비군 대상 지휘서신 발송 시 문자서비스 제공 120
9.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 121
10. 병 봉급 인상 122
11. 군인 수당 인상 123
12.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 124
13. 병영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카페 설립 125
14.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관련 제도 개선 126
1.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127
2. 군용 화약류 시험시료 품질보증 의무화 128
3. 업체의 기술료 부담 완화 129
4.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130
5.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 131
6.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 132
7. 국외조달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 시행 133
8. 기술력 중심의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 134
9. 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 개선 135
1.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136
2.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137
3. 나라사랑카드 은행선택 기회 부여 138

06 농식품·식약 139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139
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140
3.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141
4.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142
5.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143
6.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144
7.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145
8.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146
9.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147
10.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 대상 확대 148
1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149
12.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추진 150
13.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151
14.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152
15.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153
16.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154
17.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155
18.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156
19.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157
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158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159
1.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160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사망'에서 '장애'까지 확대 161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62

07 문화·통신 163

1.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163
2.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164
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한 감면제도 개편 165
2.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166
3.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167
4.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사업화 성과 지표 활용 유도 168
5.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169
6.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170
7.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 171

# Contents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172
9. 개인기초연구 연구기간과 연구비 탄력 지원 173
10.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모든 공관으로 확대 174
11. 부처별 상이한 연구 서식 표준화 175
12. 국가R&D 연구 책임성 확보 176
1.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PIMS, PIPL) 통합 운영 177
2.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 178
3. 재난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한 재난방송 준수사항 마련 179
1.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180

**08 여성·인사·법무·통일 181**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181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182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183
4.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184
5.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 185
6.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186
7.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187
8.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188
9.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189
10.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190
1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191
12.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192
13.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 내용 변경 193
14.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신규 지원 194
15.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 195
1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196
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197
1.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198
2.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199
3.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200
1. 특허 침해 소송 관할을 집중 201
2.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강화 202
1. 입법예고 내용 확인 및 의견제출의 편의성 획기적 제고 203
1.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204
1.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05

**09 조달·중소기업·산림 207**

1.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현장 할인율 상향 207
2.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208
3.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조달업체의 인증부담 완화 209
4.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210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점 신설 및 확대 211
1.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213
2.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215
3.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216
1. 특허청, 대만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217
1.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218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219
3. 벌채제도 개선 220
4.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 확대 221
5.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222
6.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223
7.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224

# Contents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기획재정부 3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3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4
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5
4.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6
5.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7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8
7.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9
8.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10
9.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11
10.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12
1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13
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4
13.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15
14.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16
15.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17
16.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18

### 국세청 20

1.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20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21

### 국토교통부 23

1.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23
2.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24
3.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25
4.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26

### 해양수산부 27

1.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27
2.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28
3.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29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30
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31
6. 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대상 확대 32
7. 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33
8.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 혼획저감장치 부착 조업 34
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 35
10.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36
11.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대상 기준 상향조정 37
12.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38
13.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39
14.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 40
15.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 41
16.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 42
17. 국가와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43
18.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44
19.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45

### 환경부 47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47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48
3.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50
4.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51
5.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52
6. 사전적격심사제도(PQ) 시행 53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54
8.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55

# Contents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환경부 59

9.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59
10.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60
1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61
12.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62
13. 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63
14.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64

### 기상청 65

1. 기상정보 선진화, 슈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65
2.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 66
3.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 확대 67
4. 3차원 기상분석 날씨해설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68
5. GIS 기반의 태풍정보 동적 제공 69
6. 북극해빙감시정보 대국민 서비스 개시 70
7.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110번)로 확대 운영 71
8.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 72
9. 세계기상통신망 전환 73

### 국민안전처 74

1.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74
2.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및 서비스 개선 75
3. 빅데이터 기반 「주간안전사고 예보」 한파, 폭염까지 확대 76
4.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77
5.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 의무화 78
6.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79
7.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신설 80
8.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을 스마트 폰에 모두 담았습니다 81

### 보건복지부 83

1.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83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84
3.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85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86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87
6.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 88
7.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89
8.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90
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91
10.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92
11.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93
1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94
1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95
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6
15.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97
16.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98
17.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99
18.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100
19.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101
2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02

### 고용노동부 103

1.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103
2.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104
3.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105
4.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축소 106
5. 해외취업 연수 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등 107
6.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108
7.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 부담 109
8.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110
9.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111

# Contents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국방부 113

1.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113
2. 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개선 114
3.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115
4.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 운용 116
5.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 신설 117
6.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시 국가보상 실시 118
7.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기준 강화 119
8. 동원예비군 대상 지휘서신 발송 시 문자서비스 제공 120
9.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 121
10. 병 봉급 인상 122
11. 군인 수당 인상 123
12.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 124
13. 병영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카페 설립 125
14.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관련 제도 개선 126

### 방위사업청 127

1.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127
2. 군용 화약류 시험시료 품질보증 의무화 128
3. 업체의 기술료 부담 완화 129
4.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130
5.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 131
6.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 132
7. 국외조달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 시행 133
8. 기술력 중심의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 134
9. 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 개선 135

### 병무청 136

1.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136
2.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137
3. 나라사랑카드 은행선택 기회 부여 138

### 농림축산식품부 139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139
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140
3.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141
4.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142
5.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143
6.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144
7.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145
8.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146
9.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147
10.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 대상 확대 148
1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149
12.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추진 150
13.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151
14.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152
15.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153
16.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154
17.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155
18.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156
19.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157
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158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159

# Contents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식약처 160

1.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160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사망'에서 '장애'까지 확대 161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62

### 문화체육관광부 163

1.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163
2.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164

### 미래창조과학부 165

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한 감면제도 개편 165
2.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166
3.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167
4.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사업화 성과 지표 활용 유도 168
5.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169
6.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170
7.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 171
8.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172
9. 개인기초연구 연구기간과 연구비 탄력 지원 173
10.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모든 공관으로 확대 174
11. 부처별 상이한 연구 서식 표준화 175
12. 국가R&D 연구 책임성 확보 176

### 방송통신위원회 177

1.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PIMS, PIPL) 통합 운영 177
2.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 178
3. 재난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한 재난방송 준수사항 마련 179

### 문화재청 180

1.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180

### 여성가족부 181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181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182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183
4.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184
5.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 185
6.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186
7.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187
8.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188
9.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189
10.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190
1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191
12.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192
13.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 내용 변경 193
14.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신규 지원 194
15.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 195
1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196
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197

# Contents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인사혁신처 198

1.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198
2.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199
3.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200

### 법무부 201

1. 특허 침해 소송 관할을 집중 201
2.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강화 202

### 법제처 203

1. 입법예고 내용 확인 및 의견제출의 편의성 획기적 제고 203

### 통일부 204

1.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204

### 국민권익위원회 205

1.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05

### 조달청 207

1.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현장 할인율 상향 207
2.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208
3.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조달업체의 인증부담 완화 209
4.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210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점 신설 및 확대 211

### 중소기업청 213

1.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213
2.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215
3.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216

### 특허청 217

1. 특허청, 대만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217

### 산림청 218

1.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218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219
3. 벌채제도 개선 220
4.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 확대 221
5.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222
6.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223
7.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224

# Contents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5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5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5
-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36
-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 40
-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5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54
- 북극해빙감시정보 대국민 서비스 개시 70
-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74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및 서비스 개선 75
-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 의무화 78
-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을 스마트 폰에 모두 담았습니다 81
-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92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103
-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 124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관련 제도 개선 126
-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127
- 군용 화약류 시험시료 품질보증 의무화 128
- 업체의 기술료 부담 완화 129
-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 131
- 국외조달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 시행 133
- 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 개선 135
-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146
-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164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170
- 국가R&D 연구 책임성 확보 176
-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199
-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200
-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현장 할인율 상향 207

### '16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1월 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3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4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6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7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8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9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10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11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12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4
-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15
-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16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17
-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20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21
-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23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24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28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30
- 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대상 확대 32
- 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33
-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대상 기준 상향조정 37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39
-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 41
-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 42
-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47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48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50
- 사전적격심사제도(PQ) 시행 53
-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55
-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59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61

# Contents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월 64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64
-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110번)로 확대 운영 71
- 빅데이터 기반 「주간안전사고 예보」 한파, 폭염까지 확대 76
-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79
-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83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84
-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85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87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89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91
-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93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94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6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98
-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99
- 위조 · 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100
-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101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104
-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105
-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축소 106
-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108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 부담 109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110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111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113
-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 운용 115
-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기준 강화 119
- 동원예비군 대상 지휘서신 발송 시 문자서비스 제공 120
- 병 봉급 인상 122
- 군인 수당 인상 123
-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130

### 1월 132

-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 132
-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137
- 나라사랑카드 은행선택 기회 부여 138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139
-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140
-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142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143
- 농어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144
-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 대상 확대 148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149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151
- 한 · 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152
-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154
-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155
-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156
-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157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159
-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160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사망'에서 '장애'까지 확대 161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한 감면제도 개편 165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169
- 부처별 상이한 연구 서식 표준화 175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PIMS, PIPL) 통합 운영 177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183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187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191
- 한부모(미혼모 · 부)가족 지원 강화 192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 내용 변경 193
-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시설 신규 지원 194
-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 195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196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197

# Contents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월 198

-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198
- 특허 침해 소송 관할을 집중 201
-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05
-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조달업체의 인증부담 완화 208
-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210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점 신설 및 확대 211
-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213
-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215
-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216
- 특허청, 대만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217
-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218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 확대 221
-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222
-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224

### 2월 63

- 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63
-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 확대 67
- 3차원 기상분석 날씨해설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68
- 세계기상통신망 전환 73
-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136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153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62

### 3월 27

-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27

### 3월 31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31
-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45
-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60
- 기상정보 선진화, 슈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65
-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 88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 신설 117
-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시 국가보상 실시 118
-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 121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관련 제도 개선 126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163
-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172
-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180
-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강화 202
-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204
-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208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219

### 4월 13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13
- 국가와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43
-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 72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167
- 입법예고 내용 확인 및 의견제출의 편의성 획기적 제고 203

### 5월 69

- GIS 기반의 태풍정보 동적 제공 69
- 기술력 중심의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 134
- 벌채제도 개선 220

# Contents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6월 25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25
-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26
-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 혼획저감장치 부착 조업 34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 35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 66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158
-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166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 178
- 재난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한 재난방송 준수사항 마련 179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223

### 7월 18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18
-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신설 80

###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6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9

-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29
-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38
-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44
-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50
-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62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77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86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90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95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97
-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02

###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6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07

- 해외취업 연수 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등 107
- 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개선 114
-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115
- 병영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카페 설립 125
-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141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145
-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147
-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추진 150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167
-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 / 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168
-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 171
- 개인기초연구 연구기간과 연구비 탄력 지원 173
-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모든 공관으로 확대 1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181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182
-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184
-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 185
-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186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188
-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189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190

# 분야별
# 달라지는 주요 제도


01 세제 — 3
02 국토·해양 — 23
03 환경·기상·안전 — 47
04 복지·고용노동 — 83
05 국방·병무 — 113
06 농식품·식약 — 139
07 문화·통신 — 163
08 여성·인사·법무·통일 — 181
09 조달·중소기업·산림 — 207

# 01 세제

##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 215-4232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 자영업자 및 농 · 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합니다.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의무가입 기간) 5년
  - 청년 (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추진배경 근로자 · 자영업자 및 농 · 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및 농 · 어민
**세제지원**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 : 5년 (청년 등 3년)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
**가입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

##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 215-4211 | 법인세제과 ☎ 044) 215-422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 (법인 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도입

• 개정내용은 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도 세법개정안 (12개)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 차단

■ 주요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 시 행 일 (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 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 215-4131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추진배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주요내용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의 경우 200만원)씩을 세액공제

■ 시 행 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 4.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 215-4233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 · 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가입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가입방법 :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 기존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도 포함
  - 세제혜택 기간 :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추진배경 민간부문의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요건
- (대상)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 (가입기간)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가입방법)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 (세제혜택 기간)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 5.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 215-4221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일반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하되,
-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 추진배경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을 통한 세부담 수준 합리화

■ 주요내용 ①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일반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100% (현행유지)

② 한도적용 제외대상(당해 연도 소득의 100%)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채권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 215-4311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세율 10%p가 추가 과세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정상적 운용을 위하여 개인 ·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추가 과세를 적용합니다.
-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결집효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추진배경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정상적 운용

■ 주요내용 ① 개인 ·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p 추가 과세를 적용
②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을 계산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7.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 215-4312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 현행 20세 → 19세
  - 연로자의 기준연령 : 현행 60세 → 65세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 추진배경 다자녀 · 연로자, 장애인 가구 지원

■ 주요내용 ①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공제액 상향 조정
-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② 기준연령 조정
-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 현행 20세 → 19세
- 연로자의 기준연령 : 현행 60세 → 65세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8.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 215-4312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거 기간 중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 현행 40% → 8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추진배경 부모 동거봉양 지원

■ 주요내용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확대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 현행 40% → 80%

② 동거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9.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 215-4312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5백만원 → 1천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추진배경 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

■ 주요내용 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간 :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0.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 215-4324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됩니다.
  - 현행 :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후 출국 항 등에서 환급
  - 개정 :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가격 100만원 이하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실시

■ 추진배경 외국인관광객 세금환급 편의 및 관광활성화 제고

■ 주요내용 ①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인 거래는 외국인관광객당 100만원까지 시내 각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즉시 환급
* 2015년 6월 현재 10,774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② 출국항에서의 반출물품 확인 방법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개선하여 세금 환급절차를 간소화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 215-4324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실시합니다.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합니다.
  - 대상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 :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또한, 환급대상 의료기관의 의료용역공급확인서 허위 또는 미발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

■ 추진배경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지원

■ 주요내용 ①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 대상용역 : 미용성형 의료용역
- 적용기한 :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②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시 행 일 2016년 4월 1일

## 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 215-432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대상 :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 적용기한 :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입법예고

■ 추진배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착 지원

■ 주요내용 ①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②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 제출

## 13.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 215-4421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 (개정)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 이하 → 2년 중 183일 이하 (6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의 거소요건(2년 중 183일) 기준과 일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이 확대되고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제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 7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70% + 고용기준 20% → (개정) 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40%
  * 5년형: (현행)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20% → (개정) 금액기준 40% + 고용기준 30%
-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등 우회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현행) 내국인 지분비율 10% 이상 → (개정) 지분비율 5% 이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 추진배경 역외탈세 방지 강화 등

■ 주요내용 다국적기업 제출 정보 범위 확대, 외투기업의 감면한도 고용비중 확대 등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4.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 215-4134

세무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업 · 휴업하는 경우의 세무서 신고의무 및 업무 관련 장부 작성 · 비치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15.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044) 215-4434

고급사진기 · 녹용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 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인하됩니다.

•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전기냉장고 · 전기세탁기 등)의 간이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현행 :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 소액물품(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현행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 추진배경 개별소비세 과세제외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 주요내용 ①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의 간이세율 인하
- 현행 :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
- 개정 :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

② 소액물품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 포함
- 현행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
- 개정 :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6.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 215-4471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 ·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 추진배경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이행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증진 및 FTA 활용률 제고

■ 주요내용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중심으로 법조문 재구성(36개 조문 → 46개 조문)
-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예: 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 협정관세 사전신청, 사후신청)
-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예: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 증명 원칙)

②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원산지 조사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 상담 및 교육 지원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 · 감면 등 근거 마련
-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과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③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 · 의무 관련 사항의 법률 근거 명확화
- 원산지를 자율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
- 원산지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 명확화
-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화

■ 시 행 일 2016년 7월 1일

## 1.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국세청 소득지원과 ☎ 044) 204-3812, 3817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 세목별 정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2016년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 추진배경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단계적 확대
- 주요내용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
- 시 행 일 2016년 1월

##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064) 780-6008

2016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 2016년 1월 1일부터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세관련 모든 분야는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모바일 상담 신청 방법

홈택스(상담/제보) 접속 ▶ 상담사례 검색 ▶ 상담신청

# 02
# 국토·해양

## 1.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044) 201-3667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책임성 있는 국고보조금 관리가 미흡하여 대내외 비판이 고조되었으나, 지방국토청 사업관리 위임으로 현장중심의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고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국토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 | |
|---|---|
| ■ 추진배경 | 국고보조금 관리 미흡에 따른 관리강화 방안 마련 |
| ■ 주요내용 | ① 보조금관리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및 위임사항 고시<br>② 보조금 집행관리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한 위임사무 세부집행지침 마련 |
| ■ 시 행 일 | 2016년 1월 1일 |

## 2.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 201-3707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하여 전체 인허가 기간이 3개월~4개월 단축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또한,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할 수 있고
  -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된다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 추진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건축법), 공장설립(산업집적법), 개발행위(국토계획법) 관련 인허가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절차 간소화)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 관계기관 일괄협의, 서류보완횟수 단축, 위원회 재심의 횟수 설정
② (예측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한, 보완회수 등을 명시하고, 투자비용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사전심의도 도입
③ (조정기능의 내실화) 기관 간, 기관 · 민원인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운용
④ (지원체계의 구축) 인허가 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 지원센터, 인허가지원시스템 등을 구축

■ 시 행 일 2016년 1월 21일

## 3.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 201-4342

여름철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소음대책지역에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되던 냉방시설용 전기료를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 고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따른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소음대책 중기계획 수립

### 2016년도 소음대책사업 확대 항목

■ 추진배경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주요내용 ①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 일반주민)
②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제1종 → 제3종 가)

■ 시 행 일 2016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 4.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 201-4342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지역을 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소음대책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확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소음대책 중기계획 수립

### 2016년도 소음대책사업 확대 항목

■ 추진배경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주요내용 ①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 일반주민)
②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제1종 → 제3종 가)

■ 시 행 일 2016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 1.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 200-5461

정부는 내년부터 어업인 등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 구입액의 80%까지 융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그동안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시 어업인의 부담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수산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어업인들이 경영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산 장비구입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금 대출기관(수협)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 한 후 융자금을 대출하게 됩니다.

• 수산 장비구입 자금 지원대상은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 · 가공),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 지원대상 장비는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 수산장비 구입 지원(융자)

■ 추진배경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하는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 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주요내용 • 수산장비 구입 지원(수산발전기금 30억원 편성)
• 융자조건
– 장비가격의 80% 이내 (융자 1억원 한도 / 고정금리* 연 2.0%~3% 또는 3개월 변동금리(매월고시) 1년거치 7년 균등 상환) * 고정금리 : 어업인(개인) 2.0%, 조합등 3.0%

■ 시 행 일 2016년 3월(잠정)

## 2.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 200-5431

태풍 · 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 · 유류오염 · 출어제한 등 자연적 ·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 등에게 2016년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영어자금(2.5%)보다 낮은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므로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2016년에는 총 300억원 범위 내에서, 어업인당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 〉 수산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

###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

| | |
|---|---|
| ■ 목 적 | 자연적 · 사회적 재난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 ■ 지원대상 |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어업인<br>① 태풍, 적조, 저 · 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br>②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br>③ 법령 등에서 어업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
| ■ 지원조건 |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br>(기간/용도) 1년 이내 / 운전자금 |
| ■ 시 행 일 | 2016년 1월 1일 |

## 3.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 200-5773

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박급유업은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유업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 선박급유업체가 없거나 적은 소규모 항만이나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유조차량을 통해 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상상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기에 급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 | |
|---|---|
| ■ 추진배경 | 소형선박 등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급유서비스 제공 |
| ■ 주요내용 | 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선박급유업 등록 요건 완화<br>②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세부기준에 따라 항만별 여건을 감안하여 항만관리청에 등록 허용 |
| ■ 시 행 일 | 2016년 상반기(잠정) |

##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 200-546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대상지역이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 · 면지역으로 확대 됩니다.

- 2015년까지 201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도를 제외한 부속도서에 대하여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농업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 · 면지역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약 3,000어가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주본섬 포함

■ 추진배경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주요내용 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읍 · 면지역) 포함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 200-5471

양식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 수 있도록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대상품목) 2016년 상반기 1개 품목을 상품화하는 등 연말까지 총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대상품목을 24개로 확대합니다.
  ※ 2016년 도입품목 :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 / 총 24개 품목
- (보장범위) 해조류 품목의 보장재해 범위에 조수(潮水)피해를 추가하는 등 재해보험 보장혜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미역과 다시마의 보장 재해 범위에 조수(潮水)를 추가하고,
  - 전복의 경우 보험 목적물 범위를 현재 해상에서 육상까지 확대합니다.
  ※ 조수(潮水) : 달 · 태양의 인력에 의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바닷물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2016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추진배경 현장 수요에 부응한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대상품목 확대 (21개 품목 → 24개 품목 + 3개 품목)
② 보장범위 확대
- 해조류 중 미역 · 다시마 품목 보장재해 추가 : 조수(潮水)
- 전복 품목 보험목적물 확대 : (기존) 해상 → (확대) 해상 · 육상 양식전복

■ 시 행 일 2016년 3월(잠정)
* 대상품목 확대 및 세부일정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 의결 후 확정

## 6. 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 200-5468

5톤 미만 소형 영세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을 강화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의 당연(의무)가입 대상이 4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어선원보험은 당연(의무)가입이 원칙이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 2016년부터 현재 '5톤 이상 어선'인 당연(의무)가입대상을 '4톤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3톤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도개선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이 2015년 9천척(어선원 37천명)에서 2016년 15천척(어선원 48천명)으로 약 6천척(어선원 11천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 계획

| | |
|---|---|
| ■ 추진배경 | 영세 · 소형어선 승선어선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
| ■ 주요내용 | ① 당연(의무)가입 대상 확대 (5톤 이상 어선 → 4톤 이상 어선)<br>② 2018년부터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추진 예정 |
| ■ 시 행 일 | 2016년 1월 1일 (4톤 이상 확대) |





## 7. 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 200-5468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됩니다.

-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어업인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였으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16년 1월 7일)에 따라 국가 정책보험인 어업인안전보험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새롭게 출시되는 어업인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를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보장범위에 어업작업 관련 질병을 포함하고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설하여 재해보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어업인 안전보험 출시 계획

| | |
|---|---|
| ■ 추진배경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대비 및 어촌 복지증진 향상 |
| ■ 주요내용 | ① 보험가입 대상 : 어업인(천일염 제조 종사자 포함)<br>② 보장대상 :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 질병 · 상해 또는 사망<br>③ 국고지원 :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 지원(경영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 ■ 보험상품 출 시 일 | 2016년 1월 7일 (법 시행일에 출시 예정) |

## 8.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 혼획저감장치 부착 조업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44) 200-5516

조업 중 혼획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어업(근해형망, 연안조망, 새우조망 및 패류형망)에 대하여 일정비율 혼획을 허용하는 대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조업하여야 합니다.

- 지난 2015년 2월 26일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 혼획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바 있으며,
- 이번에는 혼획 관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혼획저감장치를 제시하고 어업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는 물론 과도한 혼획 발생으로 어획물 선별에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고시 〉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시행

■ 추진배경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혼획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 등을 정함

■ 시 행 일 2016년 6월 1일

## 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044) 200-5921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설치가 가능한 항만시설에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하역장비의 추가 · 교체공사를 포함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신설 · 개축할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함께 별도로 장비 설치 신고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 왔으나,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등을 설치 신고하는 경우 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기업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입법예고 〉 항만법 일부개정안

### 항만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 · 교체하는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함께 장비 설치 신고로 인한 기업의 불편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중 규제 해소 필요

■ 주요내용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설치가 가능한 항만시설에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 · 교체공사도 포함
② 비관리청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국가비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을 계산

■ 시 행 일 2016년 6월 (잠정)

## 10.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 200-5961

2016년 상반기부터 그간 공공에서만 개발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한 부지를 민간에 장기임대하고, 입주기업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 항만공사 주도의 개발은 재정 부담에 따른 대규모 예산의 적기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2016년에는 인천 신항만과 평택·당진항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민간개발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 타 항만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계획

■ 추진배경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통한 항만 및 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①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허용(공공개발 → 공공 · 민간개발)
②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분양 허용(임대 → 임대 · 분양)

■ 시 행 일 2015년 12월
※ 시범사업 추진(인천신항 및 평택 · 당진항 우선 시행)

## 11.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대상 기준 상향조정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 200-5263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 대상기준을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범위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15년 3월 3일)

###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의 범위 조정

■ 추진배경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

■ 주요내용 항만구역 외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기준 조정
(2015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2016년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2.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 044) 200-525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2015년 7월 27일 개정안 국회 제출 / 2016년 상반기 국회 통과 전망

-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정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시설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 법개정 이전까지는 정비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부과만 가능

- 또한, 해수욕장 금연 및 차마출입 관련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여 상시 금연단속이 가능해지고 차량 출입 금지 구역이 명확하게 되어 해수욕장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

■ 해수욕장 금연 구역

- 해수욕장내 금연 (흡연 가능) 구역, 시간 등을 조례로 지정
  → 이에 따라 해운대, 광안리 등 도심형 해수욕장은 전지역 · 전일 금연 가능

■ 해수욕장 차마 출입 구역

- 출입 가능 차마의 종류, 구역, 운행 방법 · 시간 등을 해수욕장 사정에 맞게 조례로 지정

## 13.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044) 200-5303

해양환경 보전, 주변국과의 분쟁예방을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됩니다.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2012년 7월)을 수립하여 2013년 분뇨(오니), 음폐수부터 2016년 폐수(오니)까지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왔습니다.

- 앞으로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정밀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를 통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여 국민 행복 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폐기물배출해역 정밀조사

###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 계획

■ 추진배경 배출해역 환경악화 및 해양투기국 불명예 해소를 위하여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 등을 통해 해양배출 단계적 금지 추진

■ 주요내용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전면금지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4.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 200-5726

물류기업의 행정적 ·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5개 물류기업 인증제를 「물류정책기본법(해수부 · 국토부 공동운영)」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전까지 우수화물운송업, 우수물류창고업 등 업종별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으나,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2015년 12월 23일 시행)하여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인증제의 통합과 연속성에 중점을 두어, 4대 사업분야의 5개 인증제를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향후 필요한 인증 대상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인증심사를 위한 심사대행기관을 일원화 하고, 인증 기준 및 절차를 해수부 · 국토부 공동부령으로 제정함에 따라 물류기업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공고 〉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규칙

###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통합 내용

종 전

| 인증명칭 | 근거법/기준 | 대 행 |
|---|---|---|
| 우수화물운송업 | 화물차운수법/ 국토부령 | 능률협 |
| 우수물류창고업 | 물류시설법/ 공동부령 | 통물협, KMI |
| 우수국제 물류주선업 | 물류정책기본법/ 국토부령 | 국제물류협 |
| 우수화물정보망 | 화물차운수법/ 국토부령 | 교통연 |
| 종합물류업 | 물류정책기본법 / 공동부령 | 교통연 |

➔

개 정

| | 인증명칭(분야) | 법/기준/대행 |
|---|---|---|
| 우수 물류 기업 | (화물운송업) | 물류정책기본법 / 공동 부령 / 공동 지정 |
| | (물류시설운영업) | |
| | (물류서비스업) | |
| | (종합물류서비스업) | |

## 15.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 200-5718

외항여객선사에서 부과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에 대하여 유가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선사 자체 유류할증료 기준표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선사들에 대하여 자율운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할증료가 유가와 연동할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 선사 자율적으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마련하여 신고 · 부과하도록 하고 변동사항을 선사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더불어, 선사의 이행사항을 정기점검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외항선사의 운임관리체계 개선방안

■ 주요내용 외항여객선사의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선
- 선사별 유가변동과 연동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 신고 · 부과
- 변동된 유류할증료 선사 홈페이지에 고시
- 유류할증료 부과 이행실태 수시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시 행 일 2016년 1월

## 16.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 200-5449

정부는 내년부터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수준에서 20% 인하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천일염 생산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연간 약 13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중 FTA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요금에서 20%를 할인,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현재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한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반영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와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 2016년도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

■ 추진배경 천일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염전에서 사용하는 취 · 배수용 펌프 등 작동시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현재 적용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서 약 20% 인하
- 한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여 실시 예정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7. 국가와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 200-5777

항만의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항만보안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고 징수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전체 시설의 78%를 담당하는 민간 항만시설운영자들은 국가와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과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로 보안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상 모순이 있었습니다.
  - 국가와 항만공사 등이 운영하는 항만시설도 보안료 징수대상에 포함하여 자율 ·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안료 징수조건 완화 및 징수방법 개선으로 민간 시설운영자들의 원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

■ 추진배경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항만보안 강화 및 민간과 공공부문의 자율 · 공정경쟁 유도

■ 주요내용 ①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개정
②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대상을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민간의 보안료 징수요건 완화와 징수방법 개선으로 보안료 징수 실효성 제고

■ 시 행 일 2016년 4월 1일 (잠정)

# 18.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 200-5775

현행 임대료 체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TOC 부두 임대료 체계」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 현행 TOC 부두 임대료 체계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함에 따라 산정방법이 복잡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항만운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기존의 복잡한 선석임대료는 안벽의 재산가치를 중심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개편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 창고 · 야적장 · 통로 임대료는 기존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업체와 신설업체간 불합리한 임대료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 추진배경 2004년 이후 항만여건 변화를 반영, 기존 TOC와 신설 TOC간 임대료 격차를 해소 등 보다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 마련

■ 주요내용 ① 기존 선석임대료를 안벽의 재산가치를 반영한 안변임대료로 개편
② 창고 · 야적장 · 통로 임대료는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잠정)

# 19.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 200-5745

장거리 운항선박 승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을 2015년 6척에서 2016년 20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선박에 위성통신 및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선원-의사 간(해양의료연구센터) 화상으로 원격 의료 실시

- 원양선박의 승선원은 운항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고,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대상 선박을 확대하여 원양선박 승선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선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원양선박에 최적화된 원격의료 모델 및 장비개발을 통해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 서비스 개념 ①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②화상원격의료상담 및 응급 처치 지도

■ 서비스 구성 ①위성통신망을 이용한 해양원격의료시스템, ②의료장비 선내 탑재, ③개인건강기록 통합 조회 · 공유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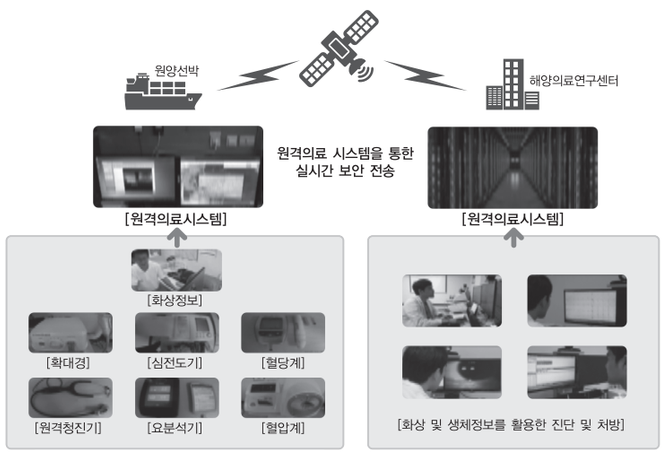

# 03
# 환경·기상·안전

##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 201-7061

2016년 1월 1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 同 물질은 2013년 9월 5일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시 신규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었으나 업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정화기술 확보 등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항목입니다.

  * 위해성 높은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받은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현행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질오염물질 지정 · 관리 주요내용

■ 추진배경 국내 유통량, 인체위해성 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의 연차별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업계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주요내용

| 물 질 명 | 지정배출 | 허용기준 (mg/L) | |
|---|---|---|---|
| | | 청정 | 가/나/특례 |
| 나프탈렌 | 특정수질유해물질 | 0.05 | 0.5 |
| 폼알데하이드 | | 0.5 | 5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 0.03 | 0.3 |
| 톨루엔 | 수질오염물질 | 0.7 | 7 |
| 자일렌 | | 0.5 | 5 |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 201-7071

수질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 기준이 2016년 1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 청정지역에 설치된 3종~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청정지역 3 종~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정도를 물벼룩의 생존 및 활동력을 통해 측정하는 TU 기준이 기존 2TU에서 1TU로, 적용 유예를 받았던 5개 업종도 기존 4TU~8TU가 2TU로 강화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현행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 추진배경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간 일부 지역 및 업종에 대해 완화하여 적용해오던 배출허용기준을 2016년부터 강화

■ 주요내용 ① 청정지역에 설치된 3종~5종 폐수배출 사업장 및 유예 받았던 5개 업종에 대하여 기준 강화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2016년 기준강화 업종 및 대상 현황

| 구 분 | | 지역 | 기준강화 | 대상수 |
|---|---|---|---|---|
| 기준강화 사업장 합계 | | | | 474 |
| 3, 4, 5종 사업장 (전업종) | | 청정 | TU 2→1 | 419 |
| 유예 업종 | 소계 | 가, 나, 특례 | | 55 |
| |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 TU 4→2 | 18 |
| |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 | 12 |
| | 80) 도금시설 | | TU 8→2 | 14 |
| | 31)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 | | 11 |
| |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 | - |

* 방류수 수질기준별 독성 산출기준

| 기준 | 방류수 | 희석수 | 설 명 |
|---|---|---|---|
| TU 1 | 100% | 0% | 방류수 원수에서 투입물벼룩 50% 영향 |
| TU 2 | 50% | 50% | 희석수에 방류수 50%를 혼합 후 투입물벼룩 50% 영향 |
| TU 4 | 25% | 75% | 희석수에 방류수 25%를 혼합 후 투입물벼룩 50% 영향 |

## 3.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환경부 유역총량과 ☎ 044) 201-7025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접 시 · 군 · 구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했으나,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인접구역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번 개정으로 지자체 간 인접지역에 대한 악취발생저감 등 생활환경보전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지자체 간 경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인접 지자체 간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 주요내용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접 시 · 군 · 구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 시 행 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회 법사위 통과, 2015년 10월 28일)

## 4.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 ☎ 044) 201-7266

- 2017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따른 도입종 확보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함

### 생물자원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에 관한 규정

■ 추진배경 2017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개원까지 생물자원 기증 등의 업무 절차를 정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기증 · 기탁 · 이관 및 교환 대상 생물자원의 범위
② 기증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③ 생물자원의 관리 및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 시 행 일 2015년 9월 25일

## 5.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 201-7277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됩니다.

- 지금까지는 환경영향의 경 · 중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적용하여 왔으나, 3만㎡ 미만의 창고, 주택 등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소규모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현행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6. 사전적격심사제도(PQ) 시행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 201-7277

2016년 1월 2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 · 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준정부 기관 등이 해당되며, 평가 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정가격 2.1억 이상이 대상입니다.
  - 따라서 2016년 1월 21일 이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현행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 201-736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고시'에 시 · 군 · 구에서는 전년도 성과평가를 3월 31일 까지 실시하여 4월 30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억제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세부내용

**발생억제 계획 수립 항목**
**[수립주기 : 연도별 세부계획 포함 5년]**

1.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2. 음식물류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처리계획
3.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목표 및 목표달성 방안
4.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재원의 확보계획 포함]

**연도별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주체 : 자치단체
■ 평가시기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평가범위 :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평가위원 :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명, 의회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분야전문가 4명 등 12명
■ 세부평가기준 : 환경부 장관 고시
- 환경부 고시 제2015-164호[15. 9. 3]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 추진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추진성과 평가

■ 주요내용 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을 마련
※ 시 · 군 · 구에서는 최초 연도별 성과평가보고서를 환경부로 제출 (2016년 4월 30일까지)

■ 시 행 일 2015년 9월 3일

## 8.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 201-6909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시행(2015년 7월 21일)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현행 6개(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 · 플라스틱 · 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됩니다.

※ 비산배출 저감제도 적용대상 업종 : 참고 2

• 2016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업종에서 관리대상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 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 환경청에 제출(신규공장 : 가동개시 전, 기존공장 : 2016년 6월 30일까지)하여야 합니다.

※ 비산배출 저감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 참고 3

•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하고,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며,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게 됩니다.

• 환경부에서는 제도소개와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세부이행지침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2015년 12월~2016년 1월)하고, 관련자료(신고서 · 점검보고서 작성 요령,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기후대기)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및 신고서 점검보고서 양식"

• 또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사업(환경공단에 위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 주요내용 ①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변경 신고 의무 부과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신고/변경 신고 한 사업자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
-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시 :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 신청 의무 부과
- 정기점검 미이행 : 300만원 이하 벌금

④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
- 정기점검 미이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참고 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 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1. 2015월 12월 31일 까지 적용 대상업종 : 6개 업종

| 분 류 | 업 종 |
|---|---|
| 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 1) 원유정제 처리업 |
|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br>2) 합성고무 제조업<br>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다. 1차금속 제조업 | 1) 제철업<br>2) 제강업 |

2. 2016월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업종 : 20개 업종(14개 업종 추가)

| 분 류 | 업 종 |
|---|---|
| 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 1) 원유정제 처리업 |
|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br>2) 합성고무 제조업<br>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br>4)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다. 1차금속 제조업 | 1) 제철업<br>2) 제강업 |
| 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br>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br>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br>4)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br>5)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br>6)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마. 전기장비 제조업 | 1) 축전지 제조업<br>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 강선 건조업<br>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br>3) 기타 선박 건조업 |
| 사.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1)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아.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1) 위험물품 보관업 |

## 참고 3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ㅁ 공통 적용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ㅁ 업종별 적용물질

| 업 종 | 적용물질 |
|---|---|
| 1) 원유정제처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보관업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
| 3) 제철업 및 제강업 |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 4)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
| 5)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
| 6)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 7)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 9.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 201-6902

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해당지자체에 공개하는 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 운영됩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1%가 비산먼지에서 발생되고 비산먼지 발생량 중 도로재비산먼지가 40%를 차지하는 등 차량주행시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오염우심지역의 도로 청소 우선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2016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지자체에 공개하게 되며, 해당 지자체는 이에 해당하는 도로 우선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현행법령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 추진배경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재비산먼지 발생량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인 도로청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 2차 수도권개선대책에 반영 (2013년 12월)

■ 주요내용 ①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대기오염도 측정 및 측정결과가 미세먼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개 등 운영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0.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 201-7141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용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 재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도시 재이용수'를 인체 접촉여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의 '청소 · 화장실용수(접촉)와 건물 외부의 '세척 · 살수용수(비접촉)'로 구분하고, 수질기준은 청소 · 화장실, 친수용수 등 인체 접촉이 가능한 용도는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등의 항목은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청소 · 화장실 용수 수질기준 : 총대장균군수(불검출), 결합잔류염소 0.2이상 등
- 인체 접촉이 없는 공업 용수 등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 목적 및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공업 용수의 경우 사업장의 이용 특성에 맞게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를 통해 용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함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현행법령 〉 물의 재활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 추진배경 민간 및 지자체의 건의 내용을 등을 반영하여 수질기준을 현장에 맞도록 개선

■ 주요내용 ①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인체 접촉가능용 또는 수질기준 강화
② 공업용수 법정 수질기준을 폐지하고 수요처, 공급처 간 협의로 수질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함

■ 시 행 일 2016년 3월 5일

# 11.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환경부 정책총괄과 ☎ 044) 201-6650

환경오염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환경오염피해자는 피해사실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고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증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도입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며,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현행법령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 추진배경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①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를 도입
②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
③ 원인제공자 미상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제급여 제도 도입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환경책임보험 관련 법 제17조는 2016년 7월 1일 시행)

## 12.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044) 201-6668

사업비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이 신설됩니다.

• 지금까지는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였으나, 2016년부터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 알림/자료 〉 자료 〉 법률/규정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조항 신설

■ 추진배경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상위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비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환수금 체납액 등을 명시하여 환수금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액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 행 일 (미정)

## 13. 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044) 201-6669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015년 2월 1일부터 환경표지 인증이 기존의 파생모델별 인증에서 제품별 인증 방식으로 바뀝니다.

• 지금까지 전체 인증제품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생제품에 대해 각각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 2016년 2월 1일부터 파생제품의 모체가 되는 기본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신청하면 되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제품별인증 예시) 형광등 100W, 200W 등 모델별 인증 → '형광등' 제품 인증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고시

### 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 추진배경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015년 2월 1일부터 환경표지 인증이 기존의 파생모델별 인증에서 제품별 인증 방식으로 전환

■ 주요내용 ① 2016년 2월 1일부터 파생제품의 모체가 되는 기본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신청하면 되도록 고시 개정 (예: 형광등 100W, 200W 등 모델별 인증 → '형광등' 제품 인증)

■ 시 행 일 2016년 2월 1일

# 14.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 201-6757

20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 환경보건법 제정(2009년 3월 22일) 후 어린이 활동공간 지정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시설은 지자체 ·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 시설은 법 적용을 2016년(또는 2018년) 이후로 유예를 받았습니다.
  - 따라서 그간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 59천개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임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 · 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 추진배경 도료 · 마감재 · 토양 등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설정 (2009월 3일)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 주요내용 ① 사용재료 부식 · 노후화
②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③ 방부목재 사용여부
④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⑤ 모래,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 · 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 1. 기상정보 선진화, 슈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 043) 711-0230

급변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국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수치예측모델 향상에 필요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이 구축됩니다.

-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 미리*)가 2016년 3월에 정식 가동하게 됩니다.

  * 누리, 미리: 대국민 공모를 거쳐 당선된 슈퍼컴퓨터 4호기(최종분) 명칭

  - 2016년 6월부터는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 미리)에서 가동할 전지구예보모델의 해상도 (25km → 17km)가 향상되며, 한반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해상도 3km)과 장기예측모델(Glosea5) 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가 정책 결정(탄소배출, 의료 등)에 필요한 과학적·정량적 객관 자료 생산을 위하여 고해상도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전구 60km, 8,000년 적분)도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슈퍼컴퓨터 4호기 가동으로 위험기상의 사전 대응능력과 강수 정량예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 〉 행정과정책 〉 보도자료 〉 기상용 슈퍼컴퓨터(4호기) 낙찰예정사 선정

## 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운영

■ 추진배경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 운영에 따른 슈퍼컴 4호기 도입 · 운영

■ 주요내용 ① 전지구수치예측모델 해상도 증가 : (현재)25km → (2016년)17km
② 국지앙상블모델 신규운영 : 3km, 25멤버

■ 시 행 일 2016년 3월(예정)

## 2.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

기상청 기상기술융합팀 ☎ 02) 2181-0906

기상청은 2016년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2015년 11월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개방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 안내

| 이용 방식 | 이용 환경 |
|---|---|
| • 웹포털(big.kma.go.kr) 접속<br>•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신청<br>• 최대 1년 이용(연장 가능) |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산자원(서버, 스토리지 등) 제공<br>• 분산처리(Hadoop), R(분석S/W) 제공<br>• 분석이 용이한 과거 기상데이터 제공<br>-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

• 2016년 6월부터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여 스타트업, 시장진입자 등 민간에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 웹 포털 big.kma.go.kr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

■ 추진배경 기상기후 빅데이터 외부 활용 확산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기반 조성

■ 주요내용 기상청의 방대한 기상기후 데이터를 인터넷(웹)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

■ 시 행 일 2016년 6월





## 3.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 확대

기상청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 02) 2181-0654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가 업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콘텐츠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15년 5월부터 정식 운영 중인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은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 되었으나, 2016년 2월 부터는 업무망에서도 사용가능함에 따라 망분리 기관에서 업무망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한 기상상황 파악 및 유기적인 방재대응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정식운영 이후 243개의 전체 지자체를 포함하는 500여개 이상의 기관에서 방재담당자들이 활용 중이고,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인 기관에서도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하반기에는 방재기상정보서비스로 제공되는 위험기상감시, 통합기상분석 이외에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존 콘텐츠 이외에 그래픽캐스트*, 뇌우감시추적* 및 3차원 기상표출* 등 고급 분석기능이 포함된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범국가적인 기상재해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래픽캐스트(기상상황 상세설명 추가 및 기상모식도 제작 가능), 뇌우감시 추적(뇌우 또는 호우 가능성이 있는 강한 대류셀의 탐지 및 이동예상), 3차원 기상표출(대기의 입체분석이 가능하도록 3차원적인 분석 가능)

(참고) 웹페이지 afso.kma.go.kr

###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선진기상기술의 확산을 통한 범국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

■ 주요내용 ① 망분리 기관의 업무망에서 활용하도록 행정망 영역 서비스 실시
② 방재기상정보서비스 콘텐츠 확대(그래픽캐스트, 뇌우감시추적, 3차원분석)

■ 시 행 일 2016년 2월(행정망 서비스), 2016년 10월(콘텐츠 확대)

## 4. 3차원 기상분석 날씨해설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기상청 예보국 위험기상대응팀 ☎ 02) 2181-0657

날씨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입체적 해설 동영상 제공으로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3차원 가시화 도구(3차원 기상표출시스템, GloView) 개발로 대기의 입체적인 구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용이해짐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날씨예보에 대한 기상 전문가의 과학적·입체적 해설 동영상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 단기 및 중기예보에 대한 캐스터 중심의 단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GloView 등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문예보관의 3차원 대기구조에 대한 현실감 있는 동영상 제작
-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적 영향이 큰 위험기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상되는 영향(위험노출) 등 콘텐츠를 확대·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날씨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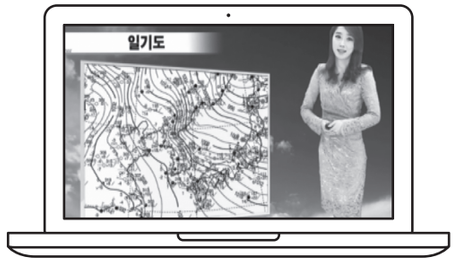


전문 날씨 서비스(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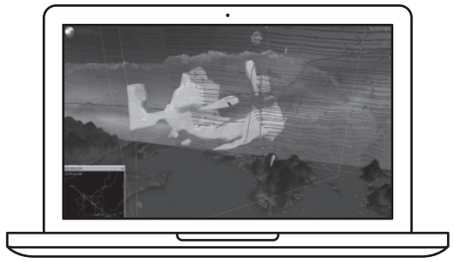

### 3차원 기상분석 날씨해설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 추진배경 전문예보관의 3차원 분석 중심의 날씨 해설 동영상 대국민 서비스
- 주요내용 ① 단기 및 중기 예보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 · 입체적 날씨 해설
  ② GloView(3차원 기상표출시스템) 등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한 대기구조의 현실감 있는 동영상 제작
- 시 행 일 2016년 2월 (예정)

## 5. GIS 기반의 태풍정보 동적 제공

기상청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 070) 7850-6371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태풍 상세정보를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다양한 정보를 지리적 공간에 표출해주는 시스템

- 기존 태풍정보에 담을 수 없었던 다양한 태풍 상세정보를 동적 이미지로 표출합니다.
  - 선택지점(자신의 위치)과 태풍의 최근접 거리·시간 표출, 태풍정보와 위성영상 중첩기능 등을 제공하여, 방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태풍과 관련된 기상정보(예: 특보,예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현재, 분리되어 운영 중인 열대저압부정보와 태풍정보를 통합하여 보다 쉽게 태풍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태풍통보문

태풍 동적홈페이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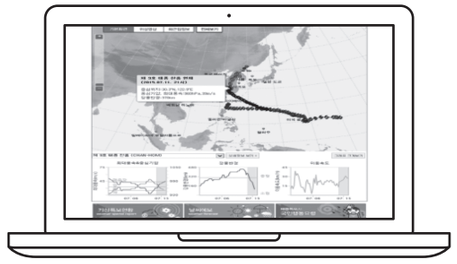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 〉 날씨 〉 태풍

### GIS기반의 태풍정보 동적 제공

- 추진배경 최신 정보화 환경에 맞는 태풍정보 제공
- 주요내용 ① 지리정보(GIS)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태풍 상세정보 동적표출
  ② 태풍정보와 관련 기상정보(예: 특보) 종합제공
  ② 열대저압부정보와 태풍정보의 통합
- 시 행 일 2016년 5월(예정)

# 6. 북극해빙감시정보 대국민 서비스 개시
## – 해빙정보(해빙전망, 북극항로 해빙환경정보 등) 확대 생산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 070) 7850-5801

기상청은 북극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북극해빙감시시스템"의 정보를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는 북극 전역 중심의 해빙정보(면적, 해빙표면거칠기)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11월부터는 북극항로 주변의 해빙환경정보와 앞으로 3개월까지 위성기반의 예측정보를 추가 제공합니다.
- 누구나 북극해빙감시시스템 누리집 (http://seaice.kma.go.kr) 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북극해빙환경정보를 접할 수 있어, 북극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북극해빙 관련 정보는 북극관련 연구, 북극항로 개척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웹페이지 seaice.kma.go.kr

### 북극해빙감시정보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북극정책 기본계획*(2013년 12월 10일 수립) 일부 이행
*7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합동으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및 31개 중점 추진계획 마련

■ 주요내용 ① 북극항로 주변 해빙분석 정보 제공
- 6개 해역(베링해, 척지해,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 카라해, 바렌츠해)에 대한 해빙면적 및 해빙거칠기 정보
② 북극해빙면적 전망 정보 제공
- 통계예측모델을 기반으로 최대 3개월까지 해빙면적 예측정보 제공

■ 북극해빙 감시시스템 개편시행일 2015년 11월 25일

# 7.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110번)로 확대 운영
## –기상상담서비스 강화 (110번 연계, 예보 콜백서비스, 외국어 상담서비스 확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02) 2181-0860

기상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 131번호를 110번 정부민원콜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기상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민원콜센터 110번(권익위원회)에 기상상담서비스를 추가하여 기상서비스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가 기존의 131번호에서 110번호가 추가되어 서비스 채널 다양화(2016년 1월)

예보변경을 즉시 알려 고객 생활 편익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기상상담 부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급변하는 날씨변화에 맞는 기상예보 변경 콜백서비스의 지역을 확대 운영(서울–경기지역 → 수도권 전지역, 2016년 4월)

국내체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국내 기상상황의 기상상담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하겠습니다.

- 평일(9시~18시) 외국어서비스(영어, 중국어)에서 휴일(9시~18시)까지 운영시간 확대(2016년 4월)

### 기상상담전화 110번호 통합 운영

■ 추진배경 기상상담서비스(131번)와 정부민원콜센터(110번)간 실시간 상담전화 연동체계 구축 및 부가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및 시행일 ① 기상상담전화 131번호와 110번호 연동체계 구축(2016년 1월)
② 예보변경 콜백서비스 지역 확대(2016년 4월)
③ 외국어 기상상담서비스 연중 확대운영(2016년 4월)

## 8.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

기상청 기상기술융합팀 ☎ 02) 2181-0909

기상청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웹기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취약계층 관리자 만여 명에게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리자
  ※ 취약계층 보호자, 개인요양사, 양로원, 요양원 등 포함
  - 서비스 내용 : (6월~9월)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12월~3월)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통해 공문으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웹기반 신청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수시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웹기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

■ 추진배경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건강보호 위한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주요내용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신청방법 개선
- (2015년)지자체 공문을 통한 간접 신청 → (2016년)웹기반 개별 신청 가능

■ 시 행 일 2016년 4월

## 9. 세계기상통신망 전환

기상청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 ☎ 02) 2181-0413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191개 회원국과 기상, 수문, 기후 관측자료를 세계기상통신망(GTS)을 통해 서로 교환하고 있으며, 2016년 2월부터는 기존의 속도보다 30배(128Kbps →4Mbps) 빨라진 세계기상통신망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 2015년 12월 1일 한국–중국 세계기상통신망을 전환하였고, 일본기상청과 2009년 3월 24일 현재의 속도인 128Kbps로 개선한 이후, 다시 4Mbps인 WMO 기간망(RMDCN)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속도의 개선을 넘어 1956년 세계기상기구 가입 이후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기상선진국에 걸맞는 세계기상통신망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입수하는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의 관측자료는, 한반도를 포함한 일기도의 생산과 수치예보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는데 특히, 전환된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입수하는 회원국의 추가 관측자료는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슈퍼컴퓨터에서 운영하는 수치예보모델은 대한민국의 기상관측자료 뿐만 아니라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입수하는 전 세계의 관측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함

### 세계기상통신망 전환

■ 추진배경 전 세계 기상자료의 원활한 입수를 위한 세계기상통신망 전환

■ 주요내용 한국 – 일본기상청 간 국제전용회선을 세계기상기구 기간망으로 세계기상자료 입수체계를 전환 (128Kbps에서 4Mbps로 속도 개선 포함)

■ 시 행 일 2016년 2월(예정)

## 1.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02) 2100-0423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합니다.

• 감축목표는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 2012년~2014년 평균 사망자 수(26,292명) 대비 16%(4,201명)이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구분 | 합계 | 교통사고 | 화재 | 자살 | 감염병 |
|---|---|---|---|---|---|
| 2012년~2014년 평균 | 26,292명 | 4,989명 | 300명 | 14,103명 | 6,900명 |
| 2016년~2018년 감축 목표 | 4,201명 (16%) | 844명 (16.9%) | 70명 (23.4%) | 2,203명 (15.6%) | 1,084명 (15.7%) |

• 국민안전처는 지자체별 감축노력을 지원하고, 지역별 확산거점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합니다.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 기간/대상 2016년~2018년(3년) / 17개 시도별 1개 시군구(총 17개소)

■ 주요내용 안전인프라 개선(H/W)과 안전문화운동(S/W) 동시 추진(기존사업과 연계)

■ 추진일정 공모(2015년 12월), 시도추천(2016년 2월), 최종선정 및 계획 승인(2016년 2월), 특교세 교부(2016년 상반기), 점검(연중) 및 평가(2016년 12월)

• 또한 범부처 지원 T/F 구성·운영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장애요인 제거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2.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및 서비스 개선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02) 2078-7820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언제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의 전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5년까지 생활안전지도 4대분야*에 대해서 1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였으나, 2015년 12월 말부터 전국(229개)으로 확대 서비스합니다.

* 4대분야: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

- 또한, 추가 4대분야*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갑니다.

* 추가 4대분야: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

• 교통사고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고 즐겨찾기 및 사용자 검색기능 추가 등 서비스 메뉴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웹과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며,

- 특히, 출퇴근 및 등하굣길 시간에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 대국민 공개

■ 추진배경 국민에게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

■ 주요내용 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대상지역 확대(115개 시군구 → 229개 시군구)
② 실시간 서비스 제공 (교통사고돌발정보, 미세먼지, 오존, 방사능 등)
③ 서비스 메뉴구조개선 (4단계 이상 정보검색 → 2단계 수준의 단순검색)

■ 시 행 일 2015년 12월 말 (잠정, 서비스 공개 준비 중)*
* 2015년 12월 중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전국 구축완료 예정

## 3. 빅데이터 기반 「주간안전사고 예보」 한파, 폭염까지 확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02) 2078-7820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주간안전사고 예보」의 예보분야를 한파와 폭염까지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화재, 농기계 등 10종의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서 예보가 되었으나,
  - 앞으로는 한파, 폭염 등 국민생명에 위협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보를 제공합니다.
  * 안전사고 유형 10종: 화재, 농기계, 물놀이, 어린이놀이기구, 산악, 승강기, 붕괴, 폭발, 기계, 추락
- 이를 위해 2016년에는 빅데이터 기반, 한파 및 폭염위험 예보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 2017년부터 예보 정확도 개선 및 신규예보 분야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6년도 주간안전사고 예보 확대(한파, 폭염)

■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따라 한파, 폭염에 의한 사망자 다수 발생

■ 주요내용 빅데이터(사망통계, 기상자료, 인구통계 등)를 활용하여 한파, 폭염 사망자 발생 위험 예보 생산
시도별 주간 단위로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 위험예보

■ 시 행 일 2016년 1월(잠정, 기술개발 및 예보 정확도 검토 중)

## 4.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 02) 2100-0717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積雪)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합니다.
- 지금까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하여 제설·제빙을 의무화하던 것을,
  -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대설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설물 지붕 제설 · 제빙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및 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다음 각 호의 시설물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또는 2종 시설물

■ 시 행 일 2016년 1월

# 5.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 의무화

국민안전처 민관제도담당관 ☎ 02) 2100-0971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 관리 및 훈련 실시가 의무화됩니다.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면적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되며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2016년 3월 31일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시 의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 추진배경 민간소유 다중이용이설의 재난 대응력 제고

■ 주요내용 ①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화(신설)
- 대상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잠정*)
- 매뉴얼 내용 : 대응조직의 체계, 구성원의 역할, 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 등

② 훈련실시 의무화(신설): 매년 1회 이상(잠정*) 주기적으로 훈련실시
* 시행령 개정 추진중

■ 시 행 일 2015년 12월 31일 다만, 민간시설은 시행일 후 3개월 이내 매뉴얼을 작성·관리

# 6.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02) 2100-0867

소방 용품의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화재방지 기능을 가진 소방용품 中 국가에서 그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에 소화전함 등 35개 고시품목 규정

- 지금까지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2016년 1월 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추진배경 불법 소방용품의 유통 근절

■ 주요내용 ①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벌칙 부과
- (대상)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부과
-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 행 일 2016년 1월 25일

## 7.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신설

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 ☎ 032) 835-2445

수상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와 직결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의 국가자격화 추진으로 구조능력을 내실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합니다.

- 「자격기본법」상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어, 실제 구조가능한 적격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수상구조법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위임 사항

》 시험과목,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 ·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 보수교육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 수상 구조사 관련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도 마련

■ 주요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함
②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취득 후 2년부터 6개월 내 보수교육 필수

■ 시 행 일 2016년 7월 25일

## 8.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을 스마트 폰에 모두 담았습니다

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 02) 2100-0019

지진, 한파, 낙상사고와 같은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 (인터넷 방송)가 스마트 폰을 통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 지금까지는 PC를 통해서만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속기기에 관계없이 모든 IT기기에서 시청이 가능하고
- 「스마트 DMB 앱」이 설치된 고객들은 바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韓-TV는 재난의 유형별, 계절별,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영상 검색이 가능하고,

- 특히, 저학년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재난안전 영상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 안전韓-TV 홈페이지: tv.mpss.go.kr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 홈페이지 소개

■ 운영목적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한 생활 속 안전 정착

■ 주요내용 ① 안전韓-TV :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 전문 인터넷방송(280여 편 보유)
② 영상정보
– 계절별: 황사, 폭염, 태풍, 집중호우, 폭설, 저체온증 등 예방 및 대처요령
– 유형별: 화재, 붕괴, 물놀이, 화상, 심폐소생술 등 예방 및 대처요령
– 생애주기별: 보행, 교통사고, 산악, 낙상사고 등 예방 및 대처요령
– 다문화: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몽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행동요령

# 04
# 복지·고용노동

## 1.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 202-2515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6년도 국가암검진 시행 내용

| | |
|---|---|
| ■ 추진배경 | 암검진 권고안 개정에 따라 관련 변동사항 반영 |
| ■ 주요내용 | 간암 검진주기 1년에서 6개월로 조정<br>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기준 30세에서 20세로 조정 |
| ■ 시 행 일 | 2016년 1월 |

##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2745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2016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2016년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2016년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③ 2016년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연중)

## 3.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 202-2780, 2774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됩니다.

-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개요

■ 추진배경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원관리의 효율과 중복신고 개선

■ 주요내용
① 신고일원화 대상사업(13종)
-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종):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종):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종):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

② 법령 개정(5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 서식 표준화(20종) 및 신고시 증빙서류 생략(31종)
④ 통합신고포털 및 유관기관 면허·처분정보등 연계(13종)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 719-6839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됩니다.

-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5년 14종 백신 → 2016년 15종 백신 지원(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상반기 중 추가 예정)

-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안내 예정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 (2016년 상반기 보도예정)

###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2016년도 지원 백신(15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 202-3052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201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 2015년 상반기(개편 전) 대비 21% 증가(약 105만원 → 127만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추진배경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2015년 대비 4% 인상
- 4인가구 기준(2015년 7월) 약 422만원 → (2016년) 약 439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2015년)28% → (2016년)29%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2015년 7월) 약 118만원 → (2016년) 약 127만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6.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 202-3072, 3077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됩니다.

-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2014년 1월 1일)됨에 따라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급(2000년~)

- 20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 '내일키움통장'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탈수급 포함)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수준) 1:1 매칭 지원,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2016년 상반기 보도 예정)

### 내일키움통장 정부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① 본인 저축액에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
- (기존)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5/10만원) + 수익금 (0~15만원)
- (변경)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5/10만원) + 수익금 (0~15만원) + 내일키움통장 정부 매칭금 (5/10만원)

② 가입대상 확대
-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까지 가입대상 확대(25천명 → 30천명)

■ 시 행 일 2016년 3월

## 7.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 202-3125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합니다.

  * '통합사례관리'란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 합니다.

-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여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편 시군구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 8.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7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입니다.

-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여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입니다.(10억원→15억원)

### 2016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확대 사항

■ 추진배경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규설치(17개소, 개소당 4.7억)
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설치(2개소, 개소당 4억)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예산 2배 확대(5억→10억)
공공후견서비스 확대(10억→15억)

■ 시 행 일 2016년 4월 이후

## 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 202-334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2015년 8,810원→2016년 9,000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 2015년도 장애인활동급여 신청자격 확대 사항

■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5.75만명→6.1만명)
활동보조가산급여 신규 지원 (최중증 독거·취약 등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단가 인상 (8,810원→9,000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 10.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 044) 202-3367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년 12월 23일)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란 :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 노후준비서비스 개요

■ 추진배경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

■ 분야별 주요서비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 | |
|---|---|
| 재무 |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 제시 |
| 건강 |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
| 여가 |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
| 대인관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갈등관계 대처법 소개 |

■ 이용방법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코너를 통해 이용)
오프라인 (국번없이 1355로 전화,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 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이용)

■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진단지 자가측정을 통한 노후준비 수준 파악 및 분야별 (재무 · 건강 · 진단 · 여가 · 대인관계) 취약점 파악 ⇒ (2단계) 노후설계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교육 ⇒ (3단계)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유관기관으로 연계 ⇒ (4단계) 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행태 변화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 시행일 2015년 12월 23일



## 11.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 202-3417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5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하여 문제가 있었으나,
  -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아동 가입 연령 확대

■ 추진배경 대상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2016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대상 :
만 12세 (2004년생) → 만 12세 (2004년생), 만 13세 (2003년생)
②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기초수급가구 기준 변경 : 생계, 의료 급여

■ 시행일 2016년 1월

## 1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특별대책팀 ☎ 044) 202-341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5년도에는 국내 입양한 가정에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 2016년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 16세 미만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만16세미만으로 확대

■ 추진배경 양육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원 강화

■ 주요내용 국내입양 가정에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연령을 확대하여 만 16세 미만까지 지급하도록 함

■ 시 행 일 2016년 1월





## 1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 202-3459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2015년에는 약 3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6년에는 대상자를 3.8만 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되어 제공됩니다.

•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행복e음” 통해 요청(시군구)하면, 사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 환급
- (사업연도 종료 시)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이월

• 서비스 해지자에게는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동 환급 실시

바우처카드 발급 횟수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 바우처카드 월 발급 횟수가 기존 5회에서 매주 월·목요일 8회로 확대되면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가능 대기 시간이 짧아집니다.

# 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 202-3475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 사업규모를 2015년 33.7만명(추경제외)에서 2016년 38.7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려 (3.8만명 → 4.9만명)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 (1,929명 → 2,318명)하고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 → 월 126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계획

■ 추진배경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주요내용 ① 공익활동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일원화
② 취업창업활동 확대(3.8만명→4.9만명) 및 고령 근로자 사회적 인식 개선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5.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 202-3458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0천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5천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개요

■ 추진배경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 경감 및 삶의 질 개선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모두 충족 시
① 연령: 만 65세 이상
②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③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범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신청절차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지원금 지원

■ 시 행 일 2016년

# 16.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 202-3569

시간제보육반을 2016년에는 전국 38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입니다.
- 2015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0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엽니다.

(참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추진배경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지원대상 ① (개요)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
② (이용료) 시간당 4,000원 중 기본형 2,000원 (월 40시간까지), 맞벌이형 1,000원 (월 80시간까지) 본인부담
③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시 행 일 2016년 1월





# 17.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 202-3633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

##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 추진배경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 완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8.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044) 202-2487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조 · 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하여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 제약 · 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보고 의무화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의약품유통경로한눈에본다

### 일선수협 투명경영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위조·불법의약품 사전 차단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일련번호 제도 시행

■ 주요내용 ①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 2015년 생산 · 수입 품목부터 단계적 부착→2016년 생산 · 수입되는 전문의약품 전체

②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출하 시)
- 제약 · 수입 ·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한 익월말까지 공급내역(가격 · 수량 등) 보고→ 2016년부터 제품을 출하하는 경우 일련번호 등 정보 보고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2015년 11월 11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19.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 044) 202-2587 | 보험약제과 ☎ 044) 202-2755

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되어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 집니다.

-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하여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여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2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 044) 202-3161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누락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수급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2016년도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 강화로 복지급여 수급권 강화

■ 주요내용 ① 단전, 단수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대상자 선제적 발굴
②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력을 시스템으로 지속 관리
③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





## 1.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 202-7456

60세 정년제 실질적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하였습니다.
  - 2015년 12월 이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 추진배경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 주요내용 ①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 한시 연장(2015년 말 → 2018년 말)
②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임금감액률 10%~20%→10%)
③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주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

■ 시 행 일 2015년 12월

## 2.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 202-7472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15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였으나.
  - 2016년 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하여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으로 3개월 4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급여는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배우자(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마당 〉 대상자별정책(여성) 〉 일가정 양립 지원

###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확대

| | |
|---|---|
| ■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 ■ 주요내용 | "아빠의 달" 급여지급 기간 확대(1개월→3개월) |
| ■ 시 행 일 | 2016년 1월 |

## 3.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7529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원 (6,030원×209시간) 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e고용노동뉴스 〉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

## 4.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축소 (대기업 80만원 → 60만원, 중소기업은 종전과 동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 202-7479

의무설치사업장의 인건비 지원 금액은 축소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대기업에 한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을 80만원→60만원으로 축소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동 지원금액 조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1.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1명당 월 6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0,000원)

2.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1명당 월 5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050,000원)

3.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 1명당 월 4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750,000원)

4.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 1명당 월 3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50,000원)

## 5. 해외취업 연수 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등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 202-7494

각 국가별 취업 유망직종을 대상으로 (가칭)청해진 대학을 운영하고,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및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 직종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가칭) 청해진 대학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2016년에는 10개 대학 2백여명을 대상으로 신규 공모를 통해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K-Move 스쿨은 3개월~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내년부터 취업성과가 높은 6개월~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에 진출하는 청년에 대하여 도전정신을 격려하기 위해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2016년에는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 해외취업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은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2016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2016년도 (가칭) 청해진 대학 운영계획

| | |
|---|---|
| ■ 추진배경 | IT, 기술분야 등 인력이 부족한 틈새 시장에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기 연수를 통해 해외 진출 확대 |
| ■ 주요내용 | ① IT, 건축, 금융 등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학과 또는 과정을 선정하고 장기지원(최대 2년)으로 확대<br>②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학과 또는 과정)을 선정, 중장기적으로 통합 프로그램 (기술+어학+문화+생활정보)를 지원 |
| ■ 시 행 일 | 2016년 상반기 중(잠정) |

## 6.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 202-7446

미취업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 대상을 우량 중소(강소)·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15년 상반기까지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중견기업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2015년 하반기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가 1.5만명 (2015년 중소기업은 3만명) 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강소·중견기업의 채용 목표를 3만명 (중소기업은 2만명) 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개편하였습니다.

###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내용

■ (2015년) 인턴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총 390만원 지원
→ (2016년) 인턴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95만원,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95만원 각각 지원 (총 390만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7.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 부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 202-7483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에서 최대 1,260,270원 (월 최저임금액) 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 2016년의 경우 2월 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 (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결정 고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 주요내용 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757,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832,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미만 고용: 908,4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984,100원

②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260,270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잠정, 행정예고 중)

# 8.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 202-7483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2016년부터 10만원 (50만원→60만원) 인상합니다.
- 참고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련,예규고시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추진배경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9.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 202-7561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2016년 1월 21일)

- 지금까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단위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 또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출연비용의 50%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최근제개정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 추진배경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단위에서 설립하도록 되어있어 규모의 경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공동기금 설립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①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②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하여 근로복지사업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매칭방식)

■ 시 행 일 2016년 1월 21일

# 05
# 국방·병무

## 1.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 748-5105

군무원 공개경쟁시험 일부 응시직렬에 특정 자격증과 면허증이 없는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일부 행정직군 직렬을 제외한 군무원 채용시험에는 직렬별로 규정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16년부터는 사서, 환경 등 필수직렬 11개를 제외하고 토목 등 30개 직렬은 기존 응시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전환·부여하도록 개선하여 일반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 군무원 채용시험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 개선

■ 추진배경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공채 시험시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을 개선

■ 주요내용 ① 필수직렬은 현행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유지

| 행정직군 | 기술직군 |
|---|---|
| 사서 |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② 현재 자격증·면허증 자격제한 직렬(토목 등 30개)은 가점(3%~5%) 부여로 전환

| 7급 | | 9급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5% | 3% | 5% | 3% |

■ 시 행 일 2016년 1월

## 2. 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개선

인사기획관실 병영정책과 ☎ 02) 748-5157

장병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측정방법을 '교차윗몸일으키기'로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기존 측정방법이 목과 허리에 손상이 초래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각 군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차윗몸일으키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방부는 2016년 장병체력검정 때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윗몸일으키기 시행방법 개선 추진계획

■ 추진배경 현 윗몸일으키기는 목과 허리손상 초래

■ 주요내용 '교차윗몸일으키기'로 시행방법 개선
① 검정기준치 재작성 : 2015년 12월
② 장병 체력검정 시행지침 시달 : 2016년 1월
③ 부대관리 훈령(체육) 개정 : 2016년 전반기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 3.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인사기획관 국방여성정책과 ☎ 02) 748-5175

2015년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하여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합니다.

•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준을 기존 연간 1회에서 분기1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 또한, 교육 미이수자는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군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 추진배경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

■ 주요내용 ① (기존)연 1회 교육 → 분기 1회 교육 확대
② 교육 미이수자 인사상 불이익 부여(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 대상 제외)

■ 시 행 일 2016년

## 4.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 운용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 02) 748-5176

국방부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내에서 활용할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하여 2016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그동안 군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하여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의사표명이나 신고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하였습니다.
- 국방부의 「성폭력 신고앱」은 군 내부 신고체계 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 및 상담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각 지역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기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16년도 성폭력 신고앱 운영

■ 추진배경 성폭력 신고 상담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운영

■ 주요내용 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담관에 신고 / 상담
② 외부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의 정보 및 관련 규정 제공

■ 시 행 일 2016년 1월

## 5.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 신설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 748-5245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학습권 보장 규정이 신설됩니다.

- 지금까지는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업보장 규정이 없었으나, 2016년 부터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 규정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학생예비군 학업보장 조항 신설

■ 추진배경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불이익 처분 금지 필요

■ 주요내용 학생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 참가시 학업보장 규정 신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2항, 「병역법」 제74조의 3, 4항

■ 시 행 일 2016년 3월 예정

## 6.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보상 실시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 748-5238

예비군이 훈련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군이 의무이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 이는 예비군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16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

### 예비군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시 국가가 보상

■ 추진배경 예비군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필요

■ 주요내용 재해보상금(사망·장애), 휴업보상금, 치료비 지급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 2 및 제9조, 「병역법」 제75조의 2

■ 시 행 일 2016년 3월 예정
※ 시행당시 부상자/사망자부터 적용

## 7.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기준 강화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 748-5245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에 대한 훈련면제 기준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예비군이 180일 이상 해외 여행 또는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였으나, 대상자가 많고 제도 악용 등의 소지가 있어 2016년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 중인 사람만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 이를 통해 예비군훈련 면제자가 감소되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예비군 홈페이지 〉 공지사항 〉 16년 달라지는 예비군제도 안내

### 국외체류 예비군의 훈련 면제 기준 강화

■ 추진배경 국외출국 사유 훈련 면제자 감소 및 제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국외 체류 중인 예비군훈련 면제 기준 강화
(국외 여행, 체류 시 180일 이상 → 365일 이상)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8. 동원예비군 대상 지휘서신 발송 시 문자서비스 제공

국방부 자원동원과 ☎ 02) 748-5225

동원령 선포시 동원예비군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재 동원예비군에게 지휘서신을 발송할 경우 소집부대별로 전자메일 또는 군사우편만을 이용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기존 전자메일, 군사우편 외에 동원지정부대, 소집일시, 직책 등 동원예비군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휘 서신의 핵심내용을 '문자서비스'로 추가로 제공합니다.
-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이 동원령 선포 시 언제, 어디로 가야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비군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 지휘서신 발송체계 개선

■ 추진배경 전자메일 지휘서신 수신확인률 저조, 군사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소요 증가 등 지휘서신 발송 간 도출된 문제점 해소

■ 주요내용 지휘서신 발송 시 기존 전자메일 외 문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시 행 일 2016년 1월

## 9.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 748-6611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을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교육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공상자에 대한 국가보상만 가능하였으나, 2016년 3월부터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자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합니다.
- 2016년에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를 먼저 시행하고,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 단계적으로 보험 보상 한도액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군인사법」상 군인의 신분에 해당하는 전 신분에게 보험적용 확대

■ 주요내용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지급대상 확대

■ 시 행 일 2016년 3월 21일 (잠정, 보험사 선정 후)

※ 1월 중 입찰유의서에 지급대상 확대를 반영하여, 3월 중 전우사랑보험 운용사를 선정하고 계약조건에 반영 예정

# 10. 병 봉급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 748-6613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하였습니다.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6년에는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 8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의무복무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

| 구분 | 병장 | 상병 | 일병 | 이병 |
|---|---|---|---|---|
| 2015년 | 171,400원 | 154,800원 | 140,000원 | 129,400원 |
| 2016년 | 197,000원 | 178,000원 | 161,000원 | 148,800원 |

■ 시 행 일 2016년 1월

# 11. 군인 수당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 748-6613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임무수행 환경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병영문화혁신과 연계하여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하였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병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군인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군인 수당 인상

■ 추진배경 군인수당 인상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

■ 주요내용 ① 지급액 인상 : 특수지근무수당(병), 항공수당(갑),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갑)1호(위관), 선박 및 함정근무수(을)1호(함정근무 항공기 정비요원), 잠수함 출동가산금, 위험근무수당 (을)호(저공강하자)

② 지급대상 확대 : 부사관장려수당(해병대), 위험근무수당 (병)호(헌병), 위험근무수당 가산금(병), 대우군무원 수당 (예비전력 군무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잠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지급 (1월부터 소급 가능)

## 12.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 748-6611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이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당행 월1회 면제되던 ATM 수수료를 당행, 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 공중전화요금 할인폭 확대 등 1차 사업 시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부가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군 마트 이용요금 적립, 교통카드 할인, 경조사 지원 등 신규 부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확대로 금전적 수단 외의 방법으로 병 봉급의 추가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나라사랑카드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시행

■ 추진배경 장병 복지 증진 및 병 봉급을 금전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인상효과 제고

■ 주요내용 ① 군마트 이용요금 적립
② ATM 수수료 당행/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
③ 병 무료 상해보험 보장범위를 영내 화재, 폭발, 붕괴사고까지 확대

■ 시 행 일 2015년 12월 19일

## 13. 병영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카페 설립

국방부 문화정책과 ☎ 02) 748-6706

신세대 장병들에게 다양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독서문화를 정착하고자 민과 군이 함께하는 독서카페를 격오지 부대에 설립합니다.

- 지금까지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읽을거리를 보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육·해·공군의 GOP 등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게도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독서카페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 이는 군이 민간기증과 병행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1소초(부대) 1출판사 도서기증" 시스템으로 도서를 확보하는 등 민·군이 함께하는 독서카페가 될 것입니다.
- 이는 장병들의 교양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립

■ 추진배경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지식 및 교양을 증진하여 무형 정신전력 강화

■ 주요내용 ① 軍 민간기증과 병행 시설설치, 民 도서기증 시스템 구축(1소초 1출판사 MOU체결)
② 연도별 독서카페 설립 계획(안)

■ 시 행 일

| 구분 | 계 | 2016년 | 2017년(안) | 2018년(안) |
|---|---|---|---|---|
| 부대(개소) | 1,220 | 310 | 500 | 410 예정 |
| 예산(억원) | 70.15 | 17.83 | 28.75 | 23.57 |

※ 육군 935개소, 해군 276개소(해병대 150개소 포함), 공군 9개소
※ 독서카페 구성: 서가대, 냉난방, 온돌, 테이블, 의자 등

## 14.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관련 제도 개선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 02) 748-5844

신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 관할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관할부대 협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 지금까지는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보호구역 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군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사전상담: 민원인이 정식 협의 전에 기본 서류(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등)를 제출하면, 관할부대에서 민원인의 협의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군과 협의 없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보호구역 내 개인·가족의 자연장지는 개인묘지와는 달리 군과 협의해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 자장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이와 같이 보호구역 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년 11월 18일부터 군과 협의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개인·가족의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사항

| | |
|---|---|
| ■ 추진배경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 편익 증진 |
| ■ 주요내용 | ① 사전상담제 도입에 따른 군 협의기간 단축(30일→20일)<br>② 보호구역 내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시, 군 협의 생략 가능 |
| ■ 시 행 일 | ① 군 협의기간 단축: 2016년 3월 2일(2015년 9월 1일 개정완료)<br>②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시, 군 협의 생략 가능 : 2015년 11월 18일 시행 |





## 1.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 02) 2079-6305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문턱을 대폭 낮추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부족의 해소와 사업정보의 불법유출 동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예비설명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업 예비 설명회 개최 회수는 기존 1회에 불과하였던 것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된 이후 제안요청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업체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사업일정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무기체계 성능·예산·사업기간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소요결정 문서에서 비밀로 분류된 ROC, 소요량, 전력화시기 등을 보안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방산업체 이외의 일반업체에게도 정보 제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명회 참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방산분야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일반업체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추가적 행정기간이 필요함에 착안하여 충분한 공고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까지 정보제공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짐에 따라 방위사업 참여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방위사업의 진입문턱을 크게 낮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알람소식 〉 보도자료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 시행 발령

### 제23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 | |
|---|---|
| ■ 추진배경 | 제23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
| ■ 주요내용 | ① 방위력개선사업 정보 조기제공(1회→수시, 단순히 사업일정 정보에 국한→성능, 예산, 사업기간 등 양질의 정보제공)<br>②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도 정보혜택이 돌아가도록 비밀취급인가 행정기간 고려 충분한 공고기간 부여(진입문턱을 크게 낮춤) |
| ■ 시 행 일 | 2015년 8월 31일 |

## 2. 군용 화약류 시험시료 품질보증 의무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 02) 2079-6308

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폭발 등 안전 위해 요소가 있는 '군용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하여 '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시험 의뢰 시 품질보증 의무화로 군용화약류 안전사고 예방강화가 필요하였습니다.
  - 이에, 군용 화약류에 대한 시험 시 품질불량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력 제고하기 위하여 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시 의무적으로 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함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 개정」 시행 발령

### 제24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 | |
|---|---|
| ■ 추진배경 | 제24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
| ■ 주요내용 | 군용화약류 안전관리 강화(군용화약류 시험의뢰시 의무적으로 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함) |
| ■ 시 행 일 | 2015년 10월 6일 |

## 3. 업체의 기술료 부담 완화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 02) 2079-6387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의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연구개발 주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방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이에 연구개발 주관업체 및 그 협력업체 대한 기술료를 면제함으로써 우수한 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술료 정책 및 제도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기술료에 대한 이견 발생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술료 심의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술료 관련 업무부서를 단일화하여 업체의 편의 및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 발령

### 국방과학 기술료 업체 부담 완화

| | |
|---|---|
| ■ 추진배경 | 연구개발 참여 업체가 해당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술료 면제 적용 |
| ■ 주요내용 | ①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에 기술료 면제<br>② 기술료 업무창구 단일화 및 기술료 심의위원회 신설 |
| ■ 시 행 일 | 2015년 12월 1일 |

## 4.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사업분석과 ☎ 02) 2079-6533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시 중단한 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의 경우에만 사업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 2016년에는 비리의혹 또는 문제점 등이 식별된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을 일시 중단·점검하고, 이를 해소·해결한 후 사업추진을 재개함으로써 투명한 사업추진 여건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마련

###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추진계획

■ 추진배경 방산비리 근절 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비리의혹 또는 문제점 등이 식별된 사업 일시 중단후 집중점검 실시

■ 시 행 일 2016년 1월 (잠정,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중)

## 5.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 02) 2079-6843

감항인증기준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최신 감항인증기준을 고려한 국내 실정에 맞는 감항인증제도 수립을 위해 군 표준 감항인증기준 및 업무규정을 최신화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 감항인증 기술기준, 적합성 검증방법을 구체화하고 항공기 운영군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900개→952개)은 감항인증기준의 적용방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감항인증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표준감항인증 개정

• 또한,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를 신설하여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 감항인증제도 주요 개정사항

■ 추진배경 국제적인 감항인증 기준 반영하는 등 군 감항인증 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표준감항인증기준 최신화 (900개→952개)
②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 감항인증팀 구성시기,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신설 등 업무절차 개선

■ 시 행 일 표준감항인증제도(2015년 11월 13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2015년 10월 6일)

# 6.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

방위사업청 일반장비계약팀 ☎ 02) 2079-4551

군수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인 군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군수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201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수요자인 군이 정부에서 계약한 한 개의 낙찰 업체가 납품하는 물품을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 2016년에는 군 장병들 병영생활에 가장 민감한 급식류의 일부품목부터 군에서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업체의 품목을 선택하여 조달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로 인해 군수품 만족도 향상 및 국방조달시장에 다수업체 참여유도를 통한 경쟁 활성화, 군수품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 제46조 제5항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2(군수품 선택계약)

## 2016년도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

■ 추진배경 수요자 중심의 조달체계 구축 필요성, 낙찰위주의 저가입찰에 대한 폐해 차단 필요성

■ 주요내용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란 한 가지 품목에 대해 다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군에서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업체의 품목을 선택하여 조달하는 계약제도

■ 시 행 일 2016년 1월

# 7. 국외조달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 시행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 02) 2079-4114

국외조달원의 경우 신규 등록 시 구비요구 서류가 단순하여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계약이행능력이 미흡한 업체도 등록이 가능하였고 기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정보 최신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등록된 입찰참가자 정보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국외조달원을 식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외조달원을 무역업, 무역대리업, 국외소재상사 국내지사로 구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법령에 부합된 용어로 명시하였으며,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를 기존의 4종에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입찰 및 계약서상의 서명권자 재직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입찰심사 전까지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3년마다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고 입찰 참여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조능력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 정보제공 의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 국외조달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 시행

■ 추진배경 부실한 국외조달원의 입찰참여로 안정적 방위사업 관리 애로 발생

■ 주요내용 ① 신규 등록 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서명권자 재직증명서 추가
② 입찰심사 전까지 등록정보 최신화 및 3년마다 일제정비 실시
③ 제조능력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기관 정보제공 의뢰

■ 시 행 일 2015년 7월 1일

# 8. 기술력 중심의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 02) 2079-4173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기준이 되는 적격심사의 가격 중심의 평가체계를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가격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이행능력 평가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행능력 50%(50점): 가격 50%(50점) → 이행능력 60%(60점): 가격 40%(40점)
  - 확대된 이행능력 10%(10점)를 기술능력 심사분야에 부여 (10점 → 20점, 2배수)
- 벤처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중소기업이 방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물품 적격심사 기준

## 낙찰자 결정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

■ 추진배경 우수 중소기업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VIP 지시)

■ 주요내용 ①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가격평가 비중 축소 및 기술능력 평가비중 확대
②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기술평가 시 벤처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 시 행 일 2016년 5월 1일

# 9. 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 02) 2079-6831~9

수출업체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을 일원화하고, 수출·중개업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관은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 일반방산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른 수출업체의 업무혼선 등을 해결하고자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 또한, 수출·중개업 신고 대상이 일반방산물자 수출업체까지 확대하여 수출업체 및 방산물자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와 수출허가 면제 신설

## 방산물자 수출 허가제도 개선

■ 추진배경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 및 수출 · 중개업 신고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② 수출 · 중개업 신고 대상을 일반방산물자 수출업체까지 확대

■ 시 행 일 2015년 9월 28일

# 1.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 481-2720

수능·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하던 해·공군, 해병대 모집에서 성적반영이 폐지됩니다.

- 2016년 2월 입영자 (2015년 12월 접수자)부터 해·공군, 해병대를 선발할 때 그동안 반영했던 수능(내신) 성적이 폐지됩니다.
  - 그동안 '군대도 성적순 인가?' 언론보도 등 성적반영에 대한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민원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개인의 자격·면허 및 전공 등 사회적성과 연계된 군복무를 통하여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군지원(모병)안내 〉 공지사항 〉 2016년 달라지는 현역병 모집 제도

## 모집병 선발 시 수능(내신)성적 반영 폐지

■ 추진배경 불합리한 선발요소 개선으로 우수인력 충원 및 민원편익 제고

■ 주요내용 ① 해·공군, 해병대 선발 시 수능(내신)성적 반영 폐지
② 자격·면허 및 전공 위주로 선발

■ 시 행 일 2016년 2월 입영대상자부터

# 2.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 481-2948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통하여 재징병검사 일자 확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재징병검사는 국외여행 사유 등으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 기간 중 특정 기간(11월)을 정하여 실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를 시행하여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생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재징병검사 장소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추진배경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 재징병검사 대상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관할 지방병무(지)청 징병검사 기간 중 재징병검사 일자 본인선택
② 학생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일자와 장소 선택

■ 시 행 일 2016년 1월

## 3. 나라사랑카드 은행선택 기회 부여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 481-2941

2016년부터는 나라사랑카드 제휴금융 은행이 복수(2015년까지는 1개 은행)로 선정됨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때 병역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나라사랑카드는
  - 징병검사 시 병역의무자 본인여부 확인 등 신분인식 기능이,
  - 현역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중에는 급여 등을 관리하는 전자통장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병역 의무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왔으나, 2016년부터는 2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나라사랑카드 발급 선택권 부여

■ 추진배경 나라사랑카드 제휴은행이 복수로 선정됨에 따른 의무자 선택권 부여

■ 주요내용 ① 2015년도 이전은 신한은행 단수 운영
② 2016년도 부터는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복수 운영

■ 시 행 일 2016년 1월





# 06 농식품·식약

##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 201-1756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3조원)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 대상자금 5.3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14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대출 농가 약 48만원의 금융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 기존금리 | 변경금리 | 대상사업(중장기 시설자금) |
|---|---|---|
| 2.5% | 2.0% |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 |
| 2.7% | 2.0% |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주택구입자금) |

-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추진배경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2.5~2.7% → 2.0%
*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2.5%→2%),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중 주택구입자금(2.7% → 2.0%)

■ 시 행 일 2016년 1월

## 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 201-2074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체결(2015년 10월) 및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이 시행(2015년 12월)됨에 따라 2016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된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 가공업체는 우리나라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포장하여야 합니다.
-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해 중국 측과 합의한 메틸브로마이드(MB)와 에피흄(PH3) 등 훈증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참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 〉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추진배경 2009년 중국측에 국산 쌀 수입허용 요청하고, 협상 타결 지속 노력

■ 주요내용 ①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및 중국측의 현지실사를 받아야 함
② 수출 전 메틸브로마이드(MB) 및 에피흄($PH_3$)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함

■ 시 행 일 2016년 1월 잠정 (* 중국측의 현지실사 결과처리 시기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





## 3.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 201-2453

2016년 강원 · 경북 · 전남 등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하여 농식품 벤처 · 창업의 기술 · 자금 · 판로지원을 위한 창업 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창업을 위한 기술(R&D)이나 자금, 판로 지원에 관한 정보를 각 기관별로 찾아가 상담을 받던 기존과 달리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마케팅, 경영, 회계 등 창업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창업 보육 지원과,
- 창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평가비용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투 ·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작한 시제품은 테스트숍 형태의 판매관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청년 일자리, 농업·농촌에서 찾으세요.

### 2016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농식품 벤처지원 특화센터 설치를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기술가치평가 지원(건당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②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전문가 컨설팅비 지원,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③ 시제품 판매관 운영
④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 4.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청년 300명, 최대 2년까지 월 80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 201-1518

2016년부터 농산업분야의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조사에 의하면, 신규농업인 중 30대 이하 비중이 2000년 29.2%에서 2010년 12.9%로 급감하고, 농업분야 창업 후 2년~3년간 낮은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6년 초에 각 도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300여명을 선발하여, 영농 창업 프로그램 연수 비용과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또한, 신규 창업농에 대한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 | |
|---|---|
| ■ 추진배경 |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기반 공고화 |
| ■ 주요내용 | ① 창업안정자금 지원 : 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원<br>②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br>③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 ■ 시 행 일 | 2016년 4월 |

## 5.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 201-1554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행합니다.

- 우수인력 및 자본이 유입되는 지역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분야 : 기업유치, 창업 및 일자리, 주거, 생활여건 개선 등
- 2016년도 초에 지자체(시 · 군)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시범사업 대상 6개 지구를 선정하고, 3년간 480억원(지구당 최대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향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활기찬 농촌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 | |
|---|---|
| ■ 추진배경 |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농촌 활력 제고 |
| ■ 주요내용 | ①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3년간)<br>② 지원규모 : 6개 지구 (2016년~2018년)<br>③ 사업비 : 1개 지구당 최대 80억원 (국비 56)<br>④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br>⑤ 2016년 예산(안) : 89억원 (총사업비 480억원×국비70%×1년차26%) |
| ■ 시 행 일 | 2016년 1월 |

## 6.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 201-1574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확인서 제출 시,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를 이 · 통장 및 읍 · 면 · 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하였으나,
  - 개인정보 노출 및 지역 주민 간 갈등 유발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2016년 1월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 관계기관 간(농식품부 – 해수부 – 각 공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연계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 서류제출 면제 가능
  - 그 외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은 기존 이 · 통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 · 면 · 동장 확인으로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관계기관 간 자료연계 등 협업 추진하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

■ 주요내용 ①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여부 확인절차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어업인의 경우 기존 이 · 통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읍 · 면 · 동장의 확인으로 간소화

■ 시 행 일 2016년 1월 이후

## 7.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 201-1578

2016년부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일부 조정되고, 상환 연체시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나,
  - 소득 계층 간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학기 융자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어업인 (소득 9 분위~10분위)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 타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연체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10개월인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을 6개월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안내 〉 학자금대출소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관련공지(6번)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 추진배경 농어촌 학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실질적 형평성 제고, 대출금 상환 · 관리 강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①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요건 변경
- (현행)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변경)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
* 농촌거주 농업인 및 취약계층은 소득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지원
② 상환관리 강화를 위한 연체이자 도입
- (현행) 연체이자 없음 → (변경) 연체이자 부과 : 3개월 이하 (3%) , 6개월 이하 (6%) , 6개월 초과 (9%)
③ 신용유의자 등록기간 기준 변경
- (현행) 연체 10개월 이상 시 등록 → (변경) 연체 6개월 이상 시 등록

■ 시 행 일 2016년 1학기 대출분부터

# 8.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 201-2360

2015년 12월 23일 개정 ·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6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검사 · 예찰 · 시설 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 축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 차단방역 기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하고 질병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금을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종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그밖에도 GPS 장착 대상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 및 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시행

■ 추진배경 구제역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개선

■ 주요내용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 운영(신설)
② 벌칙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 상향
② 축산차량 GPS 장착 확대 (조사료, 쌀겨, 톱밥, 깔짚 등 운반차량, 2016년 3월 23일까지 의무 등록) 등

■ 시 행 일 2015년 12월 23일

# 9.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90% → 9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044) 201-1719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여,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0%를 보전하였으나, 2016년부터 보전비율을 95%로 상향합니다.
  * 기준가격 : 대상 품목의 직전 5년간 최고 ·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 또한,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도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 추진배경 한 · 중 FTA 대책 및 여야정 합의사항 (2015년11월30일) 추진

■ 주요내용 ① 보전비율 상향 (90%→95%)
② 대상품목과 품목별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 시 행 일 2016년 5월~6월 (잠정, 개정안 준비 중)*
* 보전비율 상향은 「FTA 농어업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6년 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 · 발의 및 국회 심의가 예상

# 10.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 201-2340

2016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초 · 중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15년 7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 확대된데 따른 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
-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초 · 중교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인 340천명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학교우유급식사업

## 2016년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 추진배경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

■ 주요내용 (당초)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교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기타 시도에서 선정한 형편이 어려운 초 · 중 · 고교생 → (2016년 추가) 초 · 중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지원
※ 2016년 지원 예산 : 55,780백만원(국비 33,468백만원, 지방비 22,312백만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 1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 201-2436

20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 및 자조금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20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 2016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 추진배경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친환경농산업 육성

■ 주요내용 ① 친환경농업인 등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납부 동의서 제출 (2016년 1월 4일~29일, 거주 주소지 소재 읍·면·동)
② 1천㎡이상 유기 · 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조합은 자조금을 납부해야함 (3천원~5천원/1천㎡)

■ 시 행 일 2016년 1월

## 12.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 201-1538

2016년부터 미래 농업을 이끌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고·농대생들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계 고교는 사업연계 교육 사업을, 농대는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올해부터는 창업 중심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의지와 역량을 가진 3개 학교를 창조농업선도고교로 선정하여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 농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 5개교를 선정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미래농업을 이끈다!

### 창조농업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계획

■ 추진배경 고교단계부터 현장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농업 직업교육 실시

■ 주요내용 ① 창조농업선도고교(3개교): 기존 농업계 고등학교 중 의지와 역량을 가진 학교를 선정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 직업교육을 실시
②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5개교):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이 강화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 육성

■ 시 행 일 2016년도

## 13.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 201-2336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조건, 내용 및 규모 등이 대폭 개선됩니다.

- 우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 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축산분야에 ICT의 확산을 위하여 ICT 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낮추고 (30% → 20%), 융자 비율은 높였으며 (50% → 60%),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개선

■ 추진배경 FTA에 따른 개방 확대 및 국내 축산기반 변화에 따른 축산업 육성방향을 전환하고, 조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지원조건) (당초) 보조 30%, 융자 50%(3년 거치 5년 상환) 자부담 20% →
(2016년) 보조 20%, 융자 60%(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② (사업대상) (당초)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 후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 및 법인 →
(2016년 추가)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 (50세 이하)
② (지원대상, 지원 범위 등) 첨부 참조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4.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 201-2320

2016년부터 한·뉴질랜드 양국은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축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합니다.

- 농고와 농업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또는 졸업후 2년이내)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과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합니다.
-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나라 농업인 자녀(중학생 100명, 고1학년~2학년생 50명)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 농업 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박사과정 4명)를 대상으로 항공료· 장학금·체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 분야(1명) 전문가를 뉴질랜드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훈련·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2016년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프로그램

■ 추진배경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산기술을 국내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 자녀 영어연수 지원을 통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

■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명 | 프로그램 내용 |
|---|---|
| 농축산업 훈련 비자 |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3개월) 및 직무연수(9개월)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는 50명에 대한 지원 |
|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 농업인 자녀 중 초등 5학년~고등 2학년 학생 연간 150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지원(최대 8주) |
| 한-뉴 농업협력장학금 | 수의과학, 산림 분야별 매년 최대 2명에게 뉴질랜드 내 대학원 장학금 지원(최대 3년) |
| 농림 분야 전문가 훈련 · 연구협력 |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1명) 분야 공무원을 뉴질랜드로 파견하여 훈련·연구를 지원(2주~6개월) |
|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 수의역학분야 국제 워크숍을 한 · 뉴 교대로 개최 |
| 비용부담 | 양국 정부가 50:50으로 부담(단, 농축산업 훈련비자 제외) |

■ 시 행 일 2016년 1월





# 15.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 201-2317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대상을 2016년 2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돼지·닭·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2016년 2월 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며,
  - 1년 이내(2017년 2월 22일까지)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중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이상 15㎡미만인 농가는 2016년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하고,
- 종계·종오리업·부화업·닭 (산란계·육계) · 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2016년 10월 13일까지 방역·소독·장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축산법시행령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등

■ 추진배경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주요내용 2016년 2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면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 축종 | 〈2015년 2월 22일 이전〉~ 전업규모까지 | → | 〈2015년 2월 23일 이후〉~ 준전업규모까지 | → | 〈2016년 2월 23일 이후〉~ 소규모까지 |
|---|---|---|---|---|---|
| 소 | 600㎡ 초과 | | 300㎡ 초과 | | 50㎡ 초과 |
| 돼지 | 1,000㎡ 초과 | | 500㎡ 초과 | | 50㎡ 초과 |
| 닭 | 1,400㎡ 초과 | | 950㎡ 초과 | | 50㎡ 초과 |
| 오리 | 1,300㎡ 초과 | | 800㎡ 초과 | | 50㎡ 초과 |

■ 시 행 일 2016년 2월 23일

# 16.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 201-2317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2016년 1월 1일부터 상용화됩니다.

- 기존 집합 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농축협 등 195개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고,
  - 2015년 12월에는 100여명의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정식 운영 전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미숙자를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휴일 이용자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학습상담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집합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 종사자 편의 제공 확대

■ 주요내용 기존 집합 교육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

■ 시 행 일 2016년 1월 (2015년 12월 시범운영 실시)

# 17.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 044) 201-2375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해 개별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나,
  - 기존 방식으로는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지원(3개소, 개소당 40억원 규모)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개별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시설 보완 및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 추진배경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 주요내용 ① 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 : 40억원 내외 / 3개소(시· 도)
② 지자체는 가축분뇨의 공동처리 의무, (1순위) 악취저감, (2순위) 퇴액비, (3순위) 정화개보수, (4순위) 액비저장조, (5순위) 기계 · 장비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음

■ 시 행 일 2016년 1월

# 18.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044) 201-2383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용받던 동물장묘업이 2016년부터는 「동물보호법」에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 동물장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 2016년 1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제출이 폐지되고, 동물화장시설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가 생략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 또한, 동물 건조장 시설의 정기검사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검사주기가 완화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동물장묘업등록기준 등 개선

##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개선

■ 추진배경 폐기물관리법 개정 (2016년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포함

■ 주요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폐지
② 동물화장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사 제외
③ 동물건조장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3개월 1회 → 6개월 1회)

■ 시 행 일 2016년 1월 (잠정)

# 19.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044) 201-1384

2016년 1월부터 농업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상호 유착에 의한 사업비 부풀리기, 자부담 편취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금년부터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 시, 입찰 대상이 되는 범위를 당초 5억원에서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 계획입니다.
  - 이 경우, 조달청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조금을 3억원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산서류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법령정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강화

■ 추진배경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조달청에 위탁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 수행 업체 선정
②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집행내역에 대해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
③ 사업 수행 업체 선정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제한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잠정)

## 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 201-2217

2016년 6월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됩니다.

-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 · 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고,
  -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농가는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어, 지역 농업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②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

■ 시 행 일 2016년 6월 23일

##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 201-2240

2016년 1월부터 차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됩니다.

-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의 기술 개발 및 진흥 등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해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차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

■ 추진배경 농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

■ 주요내용 ①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② 차의 품질 등의 표시제 시행

■ 시 행 일 2016년 1월 21일

## 1.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043) 719-2856 |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 719-3246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 계란, 떡볶이떡 등 생활 밀착형 식품에 대한 해썹(HACCP) 의무적용을 가속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HACCP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

-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상생활에서 다소비 되는 순대, 떡볶이 떡, 계란 등을 생산·가공하는 업체는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썹 의무화를 위하여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썹 컨설팅 비용 40%(최대 320만원)와 시설개선 자금의 70%(최대 1,400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체 떡볶이 떡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업체들과 순대와 계란 생산·가공장 전체에 대해 해썹 적용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국민 간식 안전관리 강화 (2015년 11월 10일)

### 2016년도 생활밀착형 식품 해썹 적용 확대

■ 추진배경 순대, 계란, 떡볶이 떡 등 생활밀착형 식품의 해썹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시설개선자금, 컨설팅 비용 지원으로 생활밀착형식품의 조속한 해썹 적용
②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와 순대 및 계란 가공식품 전체가 해썹적용

■ 시 행 일 2016년 1월

##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사망'에서 '장애'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043) 719-2705

2016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장애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2014년 1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 2015년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장애에 대한 보상과 사망에 따른 장례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받은 국민이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 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사망'에서 '장애'까지 확대

■ 추진배경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 행복시대 구현

■ 주요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사망'에서 '장애'까지 확대 실시함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 이후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장애 피해에 대해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센터설립TF ☎ 043) 719-2313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의 통합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역센터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신규센터 증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지원범위 확대 : 집단급식소 (8,485개소, 61만명) → 급식소 (47,915개소, 143만명)

** 센터 설치·운영 현황 : (2011년) 12개소→ (2013년) 88개소 → (2014년) 142개소 → (2015년) 190개소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센터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식단 및 레시피 개발은 물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지역센터는 현장중심 업무에 집중토록하고, 센터별로 수행하는 공통업무는 협업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일괄지원 할 수 있도록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주요내용 ①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및 보급, 급식지원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지역센터의 어린이 대상 교육자료 개발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 컨텐츠 개발
※ 위탁사업(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모
※ 운영예산 : 2016년 : 711백만원 (신규반영)

■ 시 행 일 2016년 2월 (예정)





# 07 문화·통신

## 1.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044) 203-2834

외래관광객 급증 및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 등 관광수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층이 가장 넓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절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건립이 금지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50m 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2016년 3월 (잠정) 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 효과**

| 예상 수혜호텔 | 예상 일자리창출효과 | 예상 투자효과 |
|---|---|---|
| 23개 – 4,912실 | 1만 5,210명 | 8,055억원 |

### 관광진흥법 개정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추진배경 외국인 관광객 급증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 인프라 개선 필요

■ 주요내용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

■ 시 행 일 2016년 3월(잠정)

## 2.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 044) 203-2643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는 2016년 4월 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됩니다.
  - 동 개정안 공포(2015년10월 6일) 이후, 각 지자체를 통해 박물관에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요건 강화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내역

■ 추진배경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개정이전) 박물관 · 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 · 도난 방지시설'만 규정
② (개정이후) 박물관 · 미술관 등록기준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추가

■ 시 행 일 2015년 4월 7일





## 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한 감면제도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 02) 2110-19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년 7월 1일)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개편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201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급자(최대 76만명)들에게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혜택(가구당 4인 한도)을 받게 됩니다.
- 아울러,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들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보다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참고) 전자관보 홈페이지 〉 관보 제18648호 〉 대통령령 제26683호 〉 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계획

■ 추진배경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이동전화 요금감면(가구당 4인 한도)

■ 시 행 일 2016년 1월

## 2.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02) 2110-1935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요금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그 대상 범위가 데이터서비스만이 규정되어 있고, 음성·문자메시지는 제외되고 있어, 이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요금한도 초과 고지 개정사항

■ 추진배경 음성, 문자메시지도 요금한도 초과 시 의무 고시 하도록 제도개선

■ 주요내용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가 이통사의 의무고시 대상범위 확대
- 기존 데이터서비스 뿐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

■ 시 행 일 2016년 6월

## 3.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 02) 2110-1733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연결해줄 계획입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새로이 구축되는 '고용존'은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학과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굴된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 청년들에게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 기초체력 강화를 지원할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한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에게는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 취·창업을 아우르는 일자리를 전달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대구혁신센터 출범1주년 성과 및 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주요 기능

■ 추진배경 지역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허브' 기능

■ 주요내용 ① 지역 인력수요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쟁이'
② 청년들의 지속적 역량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취업 트레이너'
③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재 보육기관'

■ 시 행 일 2016년 4월

## 4.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과학기술전략본부 성과평가과 ☎ 02) 2110-2725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연구 현장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質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하여 평가 대상 사업 중 97%(187개/192개, 2015년 11월 기준) 사업이 논문건수 지표가 아닌 질적 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고, 향후에도 특수한 경우(착수 초기단계 등)를 제외하고는 논문건수 지표 활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과제 단위까지 질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2014년 12월 「제4차 표준 성과지표」와 2015년 3월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질적 지표 설정 기준을 제시하여, 과제 평가 시 질적 지표 가중치 비중을 전체지표의 50%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여부와 논문 지표 건수 활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서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람 〉 뉴스 〉 보도자료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실시

### 질(質)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을 구축

■ 추진배경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 주요내용 ①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 지양
② 질적지표 가중치 60% 이상 의무화
③ 사업화 목적 사업의 사업화지표 가중치 50% 이상 의무화

■ 시 행 일 2015년부터 매년 적용

## 5.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02) 2110-1834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기관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로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기술성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인지도 등에 의한 평가 대신 객관적 BMT 결과를 공공 SW 구매에 반영하여 기술력 있는 SW기업을 발굴하고 판로개척을 돕겠습니다.
- 이미 시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검색 〉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제13조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 평가가 필요한 제품
- 국가기관이 직접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
- 이미 평가시험을 실시한 소프트웨어제품은 해당 결과 활용가능
② 시험 및 교정에 관한 국제표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을 시험기관 지정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6.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02) 2110-1834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제한을 규정한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공공 SW사업에서 도급사업자가 과업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었고, 무제한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가능하였습니다.
  - 2016년부터는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과도한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인력송출을 통해 중간 마진만 챙기는 비정상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수급이 활성화되면 중소SW기업이 사업수행의 경험을 축적하여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 미래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뉴스 〉 보도자료 〉 2016년, 공공SW 참여기업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한다.

### 공공SW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계획

■ 추진배경 공공SW사업의 무제한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개선

■ 주요내용 ① 원도급자 하도급 비율 제한(50%), 재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 공공SW사업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만 일부 허용
- 10%이상 과업을 수행하는 하도급 기업은 컨소시엄으로 공동수급 참여 유도

②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으로 전부 개정

■ 시 행 일 2015년 12월 31일





## 7.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 02) 2110-257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 조성하여 연금급여 지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10억원(2016년 100억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로 조성(총 3,010억원)하여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2013년까지 정부재원으로 2,000억원을 조성하여 원금은 보존하고, 그 운용수익금으로 과학기술 출연(연)에 대해 장려금으로 연봉의 1.02% 지급

  ** 과학기술인연금 구성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개인부담비율도 사학연금 개혁수준을 감안하여 연간임금 총액의 2.5%에서 4.5%로 확대됩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보도자료 〉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확대 계획

■ 추진배경 과학기술인 연금급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추가 조성

■ 주요내용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확대(2015년 2,000억원 → 2016년 2,100억원 → 2018년 3,010억원) 및 개인부담비율 증가(2.5% → 4.5%)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잠정)

## 8.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안전환경팀 ☎ 02) 2110-2781

연구실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의 유해인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가 201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는 해당기관의 안전환경관리자의 역할로만 보았으나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일정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동 제도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동 제도가 정착되면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어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추진배경 연구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주요내용 ① 연구실책임자에게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는 책임부여
-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시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에 게시

■ 시 행 일 2016년 3월 예정

## 9. 개인기초연구 연구기간과 연구비 탄력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 02) 2110-2374

개인기초연구 지원을 학문분야의 특성과 연구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2015년까지는 3년 고정, 연도별 5천만/1억/3억원 등 사업별로 획일적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지원해 왔습니다.
- 2016년부터는 과제당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2015년 | 2016년 |
|---|---|---|
| 연구비 / 기간 | 5천만 / 1억 / 3억 × 3년 | 1천만 ~ 3억 × 1년 ~ 5년 |
| 지원방식 | 연간연구비 고정<br>(예: 1억 + 1억 + 1억) | 연도별 연구비 자율 설정<br>(예: 1.5억 + 0.7억 + 0.3억 + 0.5억) |
| 연구관리 | 연구계획 변경 불가 | 연구과제 변경 허용<br>※ 타당성 평가 통과시,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변경 |

- 후속연구 등 장기 지원 확대, 중복성 검토* 완화, 2인 공동연구 자율선택 허용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수요에 부응하고, 한우물 파기 연구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 같은 주제라도 심화 · 발전 또는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 · 지원

* 동 사항은 2015년 12월말 확정될 「2016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최종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연구현장 의견수렴 추진중에 있음

* 연구현장 의견수렴용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재단소식 〉 안내사항 〉 2016년도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사업 사전설명회 자료 공지"에 게재

# 10.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모든 공관으로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 02) 2110-2921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인인증서를 해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정부3.0정책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재외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모든 재외공관(162개 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확대 운영합니다.
  -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재외국민의 인터넷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2013년 1월 15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2년 간 2,595건(2015년 9월)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공관 : 7개(2013년 1월 15일) → 42개(2014년 12월 22일) → 162개(2015년 12월 31일)

(참고) *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표

##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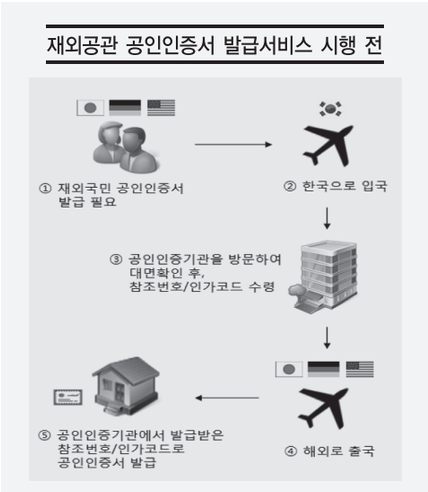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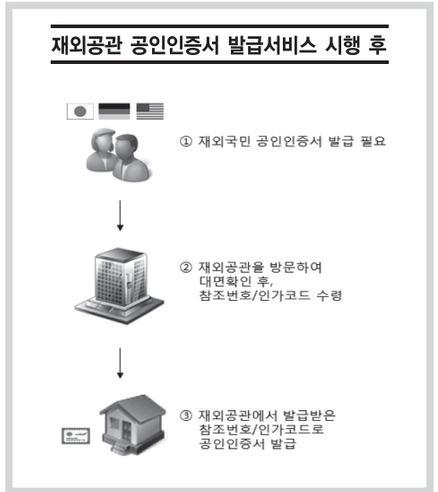


# 11. 부처별 상이한 연구 서식 표준화

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제도과 ☎ 02) 2110-2732

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규정이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연구현장 방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십종의 연구서식(부처별 26종~84종, 평균 50종)을 연구신청, 계약 등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하여 2015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2016년부터 국가R&D 사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개선 전·후 비교

| 구분 | 현행 | | 개선 |
|---|---|---|---|
| 기본서식 | 부처에 따라 26개 ~ 84개의 서식 사용 | → | 7종의 표준서식으로 통일 |
| 첨부서류 | 부처에 따라 8개 ~ 58개의 서류 사용 | | 첨부서류 9종으로 표준화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보도자료 〉 연구수행 관리서식 표준화

## 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

- 추진배경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연구현장 방해요인 최소화
- 주요내용 ① 연구서식 (부처별 26종 ~ 84종, 평균 50종)을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2. 국가R&D 연구 책임성 확보

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제도과 ☎ 02) 2110-2735

일부 연구자의 연구비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성실한 연구자까지 매도되고 R&D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연구의 자율성은 최대한 확대하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현재 사용금액의 최대 150%까지 부과하고 있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최대 450%까지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한 경우에 참여제한 2년이 부과되고, 국가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 · 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됩니다.
  - 참고로, 2015년 8월 24일부터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 유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여제한 5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R&D 연구 책임성 확보

■ 추진배경 일부 연구자의 연구비 부정행위 등으로 R&D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 주요내용 ① 연구비 용도외 사용시 제재부가금 부과율 상향(최대150% → 최대 450%)
②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명의로 출원 · 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2년으로 강화

■ 시 행 일 2015년 12월 23일





## 1.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PIMS, PIPL) 통합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2110-1529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이 2016년 1월부터 하나의 제도로 통합됩니다.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2010년 11월 시행)

※ PIPL(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 오프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2013년 11월 시행)

- 통합인증제의 명칭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단일화하고 인증마크도 기존의 PIMS 인증마크를 사용합니다.
  - 인증기준은 양 인증제의 인증기준을 조정하여 단일 체계로 운영하되 유형별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기준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또한, 양 인증제의 기존 인증심사원은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증 유효성을 인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방통위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통합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통합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유사 성격의 개별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해소

■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 · 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통합인증기준(86개)을 4가지 적용 유형(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차등 적용
②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NIA(한국정보화진흥원) 간 기능 조정에 따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단일 인증기관으로 운영 예정

■ 시 행 일 2016년 1월 (잠정, 통합고시안 준비중)

## 2.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02) 2110-142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을 재난방송 대상으로 하였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인터넷TV)방송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재난방송의 개시시점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을 하도록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년도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

■ 추진배경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무대상사업자에 지상파, 종편 · 보도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에 SO(종합유선방송국), 위성, IPTV(인터넷TV) 등으로 확대

■ 주요내용 기존 69개 의무사업자에서 164개 의무사업자로 확대

■ 시 행 일 2016년 6월 (잠정, 개정안 국회 전체회의 통과)*
* 2015년 11월 30일 국회 전체회의 통과

## 3. 재난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한 재난방송 준수사항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02) 2110-1428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대피·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금지 및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금지,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오보시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PD(프로듀서),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시 재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준수사항 마련

■ 추진배경 재난방송 실시과정에서 방송사간 취재경쟁 및 준칙 준수 확보 방안 미흡으로 오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② 대피 · 구조 ·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③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금지 및 질문과 답변, 회견 등 강요 금지
④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⑤ 오보시 지체 없이 정정방송 실시

■ 시 행 일 2016년 6월 (잠정))

## 1.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042) 481-4970

'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2016년 3월 28일부터 새롭게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 먼저 '중요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 변경되고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를 법제화하였습니다.
-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의 기준에 맞춰 기능 및 예능에서 전통지식, 생활관습,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범주로 확대됩니다
- 또한, 도제식 전수교육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전수교육대학 선정을 통한 전수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수 심사를 문화재청이 직접 실시하고, 전승공예품 인증제 · 은행제, 전승자 창업·제작·유통 지원, 기술개발 등 무형문화재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참고) 문화재청홈페이지 〉 새소식 〉 보도자료 〉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5.3.27)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범위 확대) 기·예능 위주 → 전통지식, 생활관습 등 7개 범주
- (신규 제도 도입)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전수교육대학 운영 등
- (진흥정책 강화) 전승공예품 인증 · 은행제, 창업 · 제작 · 유통지원, 기술개발 등

■ 시 행 일 2016년 3월 28일





# 08 여성·인사·법무·통일

##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 2100-6203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온라인 취업지원상담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새일센터: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종합 취업서비스 제공 기관
  (2015년)147개소 → (2016년)150개소
  ※ 온라인 취업지원: 꿈날개(dream.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진로상담, 경력개발코칭,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취업지원 등 일대일 맞춤형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온라인 취업상담 지역 (2015년) 8개 시도 → (2016년) 17개 시도 (전국)

고숙련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종(IT, 콘텐츠, 디자인 등)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을 시범운영(10억원, 20여개 과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확대(5,480명 → 5,680명)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 (2015년) 5,480명 → (2016년) 5,680명

(참고) 새일센터 대표전화 ☎1544-1199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추진배경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 주요내용 ① 새일센터 3개소 추가 지정 및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②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③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 확대(5,480명 → 5,680명)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 2100-6315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됩니다.

-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검진 (매 3년 단위) 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비취학 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약 1,500여 명에게 건강검진 진원
- 2016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 (2015년) 1,500여 명 → (2016년) 15,000여 명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추진배경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 주요내용 ① 검진대상 : 학교 밖 청소년
② 검사주기 : 3년마다 실시
③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





##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 2100-6326

가족 유형별로 제공했던 가족지원서비스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로 확대됩니다.

- 2016년부터는 전국 78개소의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강화, ▲한부모, 조손, 북한이탈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또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간 · 주중 중심에서 야간 · 주말까지 운영시간이 확대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 정책안내 〉 가족 〉 통합적 가족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서비스

■ 추진배경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 : 다양한 모든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
② 지원시간 확대 : 주간 · 주중 중심 → 야간 · 주말 운영 확대
③ 지원서비스 확대 : 보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와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시 행 일 2016년 1월

## 4.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 2100-620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3년 주기)가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조사대상 : 8천여 가구)

• 조사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변화,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정책 선호도 등입니다.조사 결과는 2016년 12월 중 발표됩니다.

(참고) 1차 실태조사 결과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 정책안내 〉 인력개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자료실 〉 '2013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추진배경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된 여성 등의 실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 지원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및 정책자료 구축

■ 주요내용 ① 조사대상 : 25세~59세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예정)
② 조사방법 : 가구방문, 개인 면접조사
③ 조사내용 :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및 일자리 경험, 경력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와 현재 일자리 상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수요 등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 5.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 2100-6195

민간과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대상이 확대됩니다.

※ 여성인재 아카데미 : 저출산 · 고령화 시대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여성 중간관리자 등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기관의 여성중간관리자 대상 맞춤형 조직역량강화 교육 지원

• 2016년부터는 그간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등 지역 여성인재들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별 사전 역량진단, 전문가 조언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교육 신청 문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02)3156-6101

###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 확대

■ 추진배경 조직 내 여성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실시 및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대상확대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재직여성 → 문화예술체육 분야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추가
② 지원 내용 : 개인별 사전역량진단, 전문가조언, 멘토링 · 네트워크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 6.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 2100-6195

여성인재 DB* 등재자에게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 여성인재 DB : 여성리더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해 DB에 수록

• 2016년부터는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를 경력별(초급 · 중간관리자, 시니어(중 · 고급)관리자, 임원급 등) 직종별(회계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언론인 등)로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 추진배경 여성인재 DB 등재자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주요내용 ① 임원급 이상 →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② 중 · 고급 관리자 → 고위관리자 조직역량 교육, 네트워크 역량교육(심화)
③ 초 · 중급 관리자 → 중간관리자 조직역량 교육, 네트워크 역량교육(기초)
④ 전문직종 종사자/지역여성리더 → 전문직종별 역량 교육 및 네트워크 역량 교육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 7.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 2100-6313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방식이 소득 · 재산(금융, 부채 등)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청소년특별지원대상자 : 사회 ·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지금까지는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 했던 자료가 많았으나, 2016년부터는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됩니다.

• 소득 · 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도 단축되어 해당 청소년은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류는 간단히, 지원은 신속히"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방식 변경

■ 추진배경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등 집행절차 간소화를 통해 특별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적시 지원

■ 주요내용 ① (기존) 소득재산 조사 → (변경)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대상가구 소득확인

■ 시 행 일 2016년 1월

## 8.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 2100-6257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됩니다.

- 전국 2,100개 동아리가 개별 동아리당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1,460개 동아리, 각 100만원 지원 → (2016년) 2,100개 동아리, 각 125만원 지원
-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는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구성 · 운영*됩니다.
  * 연 1회 이상 동아리 연합활동, 정기 및 수시회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는 선정 · 시상(여성가족부장관상 등)되고, 우수 사례로 보급됩니다. 거짓 혹은 부정하게 운영된 동아리는 1년간 지원이 중단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청소년들이 자립적 · 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계발 · 체험하고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내용 ① 동아리 지원확대 : 1,460개 각 100만원 → 2,100개 각 125만원
② 지자체별 동아리활동 총예산의 10% 내외 한도에서 지역 동아리 연합회 운영
③ 우수동아리 선정, 시상 및 사례 보급
④ 거짓 혹은 부정하게 운영한 동아리 1년간 지원 중단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 9.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 2100-6275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 연계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 운영됩니다.

※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 · 보호 ·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또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044명에서 1,066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전화 ☎ (지역번호)1388

###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지역 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 ·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 확대(200개 → 222개)
② 청소년동반자 확대(1,044명 → 1,066명)

■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

## 10.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 2100-6273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 대학 졸업 후인 3월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자격증을 교부하여 상반기에 취업하는 경우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 2016년부터는 자격시험 시행시기를 졸업 이전 하반기(10월)로 변경함으로써 졸업예정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만,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응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자격시험을 2회(3월, 10월) 실시합니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 추진배경 졸업예정자들에게 졸업 전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 취업에 활용

■ 주요내용 ① 필기시험(3월), 서류심사(4월), 면접시험(6월), 최종 발표(7월) → (변경) 필기시험 (10월), 면접시험(12월), 서류심사 (다음 해 3월), 최종 발표 (다음 해 3월)
※ 다음 해 2월 졸업예정자가 필기시험(10월) 응시 가능
※ 2016년은 상 · 하반기(3월, 10월) 실시

■ 시 행 일 2016년

## 1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 02) 2100-636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 지원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이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도울 것입니다.
-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우리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참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 1577-1366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 진 배 경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증가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확대

주 요 내 용 ①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및 부모
② 지원기관 : (2015년) 시범사업 2개소 → (2016년) 전국 80여 개소
③ 신청방법 :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프로그램 내용

| 영 역 | 주요내용 |
|---|---|
|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 자아정체성 확립, 가족상담, 부모교육(부모역할, 부모-자녀 의사소통 스킬 습득, 갈등관리 등) 가족통합캠프 운영 등 |
|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 사회성 진단, 청소년 동아리활동(자조모임), 봉사활동, 리더십캠프,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
| 미래설계 프로그램 | 동기부여, 적성검사, 진로소양교육, 진로설계, 직업체험활동 등 지원 |
| 위기사례 지원 | 심층상담, 미술·음악·놀이치료 등 |
| 유관기관과의 연계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레인보우스쿨,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 등과 연계 |

시 행 일 2016년 1월

## 12.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 2100-6346

청소년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참고)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부터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2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신청 및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참고)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위드맘 홈페이지(withmom.mogef.go.kr)

###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 :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자녀연령 제한 삭제)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지원대상 : 출생신고가 안된 자녀 양육 미혼부 지원불가 →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부터 법률지원 가능
※ 자녀 출생신고 절차지원 및 출생신고 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 13.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 내용 변경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 2100-6352/635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2015년)6,000원에서 (2016년)6,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됩니다.

• 정부 미지원 유형(정부지원이 없는 유형)에 해당할 경우, 소득판정 절차 없이도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상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0~1세 (월 130만원, 200시간) | | 시간제(시간당 6.5천원) | | | |
|---|---|---|---|---|---|---|---|
| | | | | A형 | | B형 |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 이하 (264만원) | 91만원 | 39만원 | 4,875원 | 1,625원 | 4,225원 | 2,275원 |
| 나형 | 85% 이하 (374만원) | 65만원 | 65만원 | 2,925원 | 3,575원 | - | 6,500원 |
| 다형 | 120% 이하 (527만원) | 39만원 | 91만원 | 1,625원 | 4,875원 | - | 6,500원 |
| 라형 | 120% 초과 | - | 130만원 | - | 6,500원 | - | 6,500원 |

※ (A형)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2016년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복지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14.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신규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 2100-6385 / 6387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해바라기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국비지원은 4개소,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 국비지원은 1개소를 확대합니다.

*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시 · 도 – (지방)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 수사 · 법률 · 의료 · 심리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상담소) 상담,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 인도, 수사 및 재판동행 등 지원

*** (보호시설) 주거지원, 피해자 상담 및 치료회복, 자립지원 등 지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설치신고가 가능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신규 지원

■ 추진배경 성폭력 피해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① 해바라기센터 확충(36개소 → 37개소)
② 성폭력 피해상담소 국비지원시설 확대(100개소 → 104개소)
③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국비지원시설 확대(7개소 → 8개소)
④ 성폭력 상담원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제외

■ 시 행 일 2016년 1월

# 15.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 2100-6395/6396/6398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됩니다.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 · 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및 자활매장 운영, 취 · 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10개소 → (2016년) 11개소

자활지원센터 설치 · 운영 현황(2016년 1월 기준)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1 | 1 | 1 | 1 | 1 | 1 | 1 | – | 2 | – | – | – | 1 | 1 | – | – | 1 |

성매매피해 상담소 1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 · 법률 등 상담 지원이 강화됩니다.

• 상담소는 성매매피해 상담 및 피해자 구조, 현장방문 상담 · 홍보, 지원시설에 피해자 연계, 피해자 건강진단 및 치료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5년) 26개소 → (2016년) 27개소

##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화

■ 추진배경 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및 접근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10개소 → 11개소)
② 성매매피해 상담소 확충(26개소 → 27개소)

■ 시 행 일 2016년 1월

## 1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 2100-642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개소, 호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가족보호시설 | 20 | 2 | 1 | 1 | - | 1 | 1 | - | - | 1 | 2 | 2 | 2 | 2 | - | 3 | 2 |
| 임대주택 | 246 | 10 | 42 | 20 | 18 | 20 | 12 | 28 | 24 | 10 | 11 | - | 10 | - | - | 32 | 9 |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의 전담인력 18명을 증원하여 365일 24시간 전문적 · 체계적인 긴급상담 · 보호, 관련기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에 대한 주 · 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1366긴급피난처 전담인력 : (2015년) 18명 → (2016년) 36명

※ 생계비 : (2015년) 491백만원 → (2016년) 621백만원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피해자 지원확대

■ 추진배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대

■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20개소 → 21개소) ②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확충(246호 → 266호) ③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증원(18명 → 36명) ④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 생계비 지원확대(491백만원 → 621백만원) ⑤ 가정폭력 추방주간(신설) : 매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시 행 일 2016년 1월

## 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 2100-6429, 643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간병비 및 건강치료비 등 생활안정지원이 확대됩니다.

- 2016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월 생활안정지원금은 전년 대비 21%(2015년 월 104만 3천원 → 2016년 126만원), 간병비는 전년 대비 39%가 인상(2015년 1인 평균 월 75만 7천원 → 2016년 105만 5천원) 됩니다.
- 또한,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1인당 평균 월 35만 6천원에서 37만 9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고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기념사업도 확대됩니다.

- 2015년 시범실시 된 초 · 중 · 고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교육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위안부' 기록물을 국내 · 외에 전시하고, 국외의 일본군 '위안부'관련 신규 사료도 조사 · 발굴할 계획입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 추진배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에 대한 관심 고조

■ 주요내용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및 건강치료비 증액 지원
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 맞춤형 지원
③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 전국 확대 실시
④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 추진

■ 시 행 일 2016년 1월

## 1.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02) 2100-6888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번 개혁에서는 기여율 단계적 인상(7% → 9%, 2016년 8%),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1.9%→1.7%, 2016년 1.878%) 연금수령연령 단계적 연장(60세→65세, 2022년 61세→2033년 65세) 등
  '더 내고 · 덜 받고 · 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연금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향후 5년간(2016년~2020년)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 되고,
  - 일부 정지 소득기준*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자평균임금월액(337만원) → 평균연금월액(224만원)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인 정부보전금이 당장 내년에 1.5조원 절감되고, 향후 70년간 497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종전 2.1배에서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조정되어 공적연금간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인사소식 〉 언론뉴스 〉 보도자료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성과

### 공무원연금 개혁 주요내용

■ 추진배경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연금수급자 연금액 5년간(2016년→'2020년) 동결
② 연금 기여율 인상(7% →9%, 2016년 8%) / 지급률 인하(1.9% →1.7%, 2016년 1.878%)
③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65세 / '2022년 61세→'2033년 65세)
④ 연금 지급정지제도 강화,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등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2.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02) 2100-6784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2016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시행됩니다.

- 의사자의 배우자 · 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 · 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합니다.

- 다만 이 경우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
  -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 받는다

### 의사상자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 추진배경 의사상자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

■ 주요내용 ① 대상시험은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② 가산 점수는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부여함
- 의사자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부상등급 1급 ~ 6급) : 과목별 만점의 5%
- 의상자(부상등급 1급~6급) 배우자 또는 자녀 : 과목별 만점의 3%
③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 행 일 2015년 11월 19일

## 3.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 02) 2100-6735

정부에서는 다시 일하고 싶은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반듯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2014년도부터 일괄채용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시 다른 경력경쟁채용과 동일하게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합격한 후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선발시험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공무원임용령 참조

###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 현황

■ 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 주요내용 ① 시간선택제 경력경쟁 채용 요건 완화(퇴직 후 3년 → 퇴직 후 10년)
② 임용대기 기간 축소(결원발생시 임용 → 즉시 임용 )

■ 시 행 일 ① 2015년 9월 25일
② 2015년 11월 19일





## 1. 특허 침해 소송 관할을 집중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 2110-3166

특허 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특허 침해 소송은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분쟁해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허권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 이에 특허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통한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의 경우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도 가장 많은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국관할을 인정하였습니다.

## 2.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강화

법무부 국적과 ☎ 02) 2110-4127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생계유지능력기준이 1998년도 제정 이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자산 3천만원 이상에서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인당 국민소득(GNI) : 2,968만원
- 다만, 혈연적 · 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뉴스 〉 보도자료 〉 일반귀화허가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생계능력 강화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일반귀화 신청자는 혈연적, 지연적 관계가 적은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국민 정체성 뿐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국민과의 조화 중요

■ 주요내용 일반귀화 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자산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또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으로 신규 적용

■ 시 행 일 2016년 3월 1일





## 1. 입법예고 내용 확인 및 의견제출의 편의성 획기적 제고

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 044) 200-6566

국민들이 입법예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없앨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들이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으나, 2016년 4월부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는 법령안 개정 전문과 신 · 구조문대비표 외에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 · 설명자료 등을 함께 게재하여 국민들이 법령개정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또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입법예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입법과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입법예고 제도 개선

■ 주요내용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① 모든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필수적으로 실시

② 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개정 내용에 관한 충실한 자료 제공

③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 구현

■ 시 행 일 2016년 4월 21일

# 1.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통일부 이산가족 콜센터 ☎ 02) 1644-2381 | 대한적십자사 ☎ 02) 3705-3652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3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는 「이산가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

조사방식은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 · 방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오래전에 신청을 하여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동 기간 중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 이산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분과, 사망한 신청자의 형제 등 가족도 이산가족교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홈페이지, 전화, 팩스, 우편, 모바일 등도 가능)

※ 아울러, 유전자 검사와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이산가족들도 신청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 02) 3705-3652)

(참고) 남북이산가족 찾기 홈페이지 : reunion.unikorea.go.kr

##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

■ 관련근거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법 제6조

■ 조사개요 ① 기간 : 2016년 3월~5월
② 조사대상 : 남북 이산가족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및 미신청자 포함)
③ 방법 : 온라인 · 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 · 방문 조사

■ 안내문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 1644-2381
– 대한적십자사 ☎ 02) 3705-3652





# 1.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 044) 200-7752

민간분야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공익신고 대상은 180개 법률 위반사항에 한정되었으나, 2016년 1월 25일부터는 279개 법률 위반사항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문신고자(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소식 〉 보도·해명자료 〉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2016년 공익신고제도 주요 변경사항

■ 추진배경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180개 → 279개)
②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내부 공익신고자 특별보호조치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형벌, 징계 → 형벌, 징계, 행정처분)
③ 공익신고 보상제도 변경 - 보상금 지급대상(내외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
- 보상금 확대(최대 10억원 → 최대 20억원)

■ 시 행 일 2016년 1월 25일

# 09
# 조달·중소기업·산림

## 1.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현장 할인율 상향

조달청 자재장비과 ☎ 070) 4056-7237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신규 공급계약으로 현장 할인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계약은 현장 할인율이 3.99%였으나 신규 공급계약은 5.74%로 상향되었고 Cash bag point 적립 1.1%를 합할 경우 6.84%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조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SK협약 주유소에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을 제외한 자치단체 및 일반 공공기관은 매년 4월 11월에 Cash bag point를 나라장터를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안내

### 공공기관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동구매

■ 추진배경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추진방안 (2012년 2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①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행정자치부 자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시 행 일 2015년 12월 1일

## 2.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070) 4056-7273

조달업체의 계약체결 부담완화와 계약담당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효율적인 MAS계약을 위해 공고 및 계약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MAS 공고 및 계약기간은 원칙상 2년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공고는 2년에서 10년,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여 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를 악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 2016년도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연장

■ 추진배경 조달업체 계약체결 부담 완화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

■ 주요내용 ①다수공급자계약 공고 (2년→10년) 및 계약기간 (2년→기본 3년) 확대
②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탈퇴 가능

■ 시 행 일 2016년 3월 1일 시행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 1723호 2015년 11월 27일)

## 3.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조달업체의 인증부담 완화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070) 4056-7273

조달기업의 경쟁력과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은 유지하되, 인증의 과다 · 중복 요인은 제거하여 조달기업들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인증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 · 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 또한,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의 평가점수를 기존의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하고,
  - 2017년 1월부터는 2단계 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평가대상 제외 인증: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2016년도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완화

■ 추진배경 인증의 과다 중복 보유요인을 제거하여 조달업체의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기술항목 간소화 및 배점 축소
기존 (고도, 일반, 녹색 3분류), 배점 10점 → 변경 (고도, 일반 · 녹색 2분류), 배점 7점
② 대상 인증항목의 축소 (19개 → 11개), 2017월 1월 1일 시행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4.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조달청 토목환경과 ☎ 070) 4056-7254

(최저가낙찰제 개선)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50점~60점) 이외에도 공사수행능력(40점~50점) 및 사회적 책임(1점 가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 공사수행능력 : 시공실적, 매출액 비중, 배치기술자, 시공역량 등
  ※ 사회적 책임 :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상생협력 등
-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의 시행에 따른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조달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2016년도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추진배경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주요내용 ①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
② 낙찰자결정방법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점 신설 및 확대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 070) 4056-6112

사회경제적 조직의 자생력과 지속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동일한 혜택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에 0.5점 가점 부여(신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일 ·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0.5점 부여(신설)

서비스의 품질 · 생산효율 · 생산기술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의 적용을 받는 KS서비스분야의 KS서비스인증서 보유업체에 대하여 0.7점 가점 부여(신설)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추진 및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 고용노동부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0.2점 가점 부여하고 3년 일몰제 적용(신설)

중소기업청장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범위 확대

-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에 대하여만 부여했으나 벤처와 우수그린비즈에 대하여도 0.5점 부여(신설)

일 · 가정양립 정책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하여 가점 확대(0.5점에서 1.7점)

여성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가산점 확대

•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5년 미만 0.5점, 5년 이상은 0.7점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0.75점으로 10년 이상은 1점으로 확대

• (여성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 10%이상이고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0점에서 1.25(5% 및 5인 이상 0.5점에서 0.75점)으로 확대

(참고)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으로 2015년 12월 중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정
2. 개정된 세부기준은 조달청 정보공개 업무별 자료 및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열람가능





# 1.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042) 481-8913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수 기준인 18개 업종, 2개 그룹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 2016년부터는 업종별 매출액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 업 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 15년 기준 (상시근로자) | 개 편 (매출액) |
|---|---|---|
| 제조업 (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 50명 | 120억원 |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10명 | |
| 제조업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50명 | 80억원 |
| 농업 · 임업 및 어업, 금융 · 보험업 | 10명 |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명 | 50억원 |
| 도·소매업 | 10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50명 | 30억원 |
|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10명 |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50명 | 10억원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10명 | |

2016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아울러, 왜곡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피터팬 증후군'을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며,
-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소기업 범위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 2016년도 소기업 범위 개편 매출액으로 개편

■ 추진배경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으로 개편

■ 주요내용 소기업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정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명 미만 → 매출액 10억~120억)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2.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 481-4569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달성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년 12월)

-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가 권장사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중기청과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로 전환됩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13종) : 성능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구매조건부 R&D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중소기업융 · 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제품

이제 공공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고,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대한 제품 판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성장과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품 구매 의무화

■ 추진배경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 및 기술개발의욕 고취

■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구매 권장사항
(개정)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구매 의무사항

■ 시 행 일 2016년 1월(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

## 3.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 481-4382

2016년 1월부터 전기 · 전자, 섬유 등 한 · 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 중 FTA 취약분야 전용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 · 중 FTA 체결로 본격적인 교역 증가가 예상되나, 전기 · 전자, 섬유 등 한 · 중 FTA에 취약한 일부업종이 발생하여 동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6개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자금을 신설(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內 별도 편성)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 · 중 FTA 발효 후 단기 생산감소 업종〉 전기 · 전자, 섬유, 생활용품,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제약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지원정책 〉 금융 〉 지원정책 상세보기

### 한 · 중 FTA 전용자금 지원 조건

| 구분 | 융자규모 | 융자범위 | 지원대상 | 비고 |
|---|---|---|---|---|
| 신성장기반<br>(산업경쟁력강화) | 300억원 | 시설 | 6개 취약부문<br>관련 업종 | • 융자한도 10억원<br>• 생산설비, 시험장비 등 |
| 재도약지원<br>(사업전환) | 260억원 | 시설, 운전 | | – |
| 긴급경영안정<br>(일시적경영애로) | 50억원 | 운전 | | – |





## 1. 특허청, 대만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 481-5135

특허청은 2016년 1월 1일부터 대만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에 후속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소급인정 받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지만, 대만의 경우 WIPO 회원국이 아니어서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 이에 한–대만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2015년 6월),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양 특허청 간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기존의 서면 처리 · 전자화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출원인 편의와 행정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 한–대만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에 따른 출원인 불편 및 행정 낭비

■ 주요내용 한–대만 특허청간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의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1.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 481-4141, 4215 | 산림휴양치유과 ☎ 042) 481-4211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여가 수요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은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서만 허용되었으나, 보전산지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최근제, 개정법률 〉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추진배경 산림휴양 활성화 및 불법 야영장 등의 난립에 따른 국민안전 제고

■ 주요내용 ①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가능

■ 시 행 일 2016년 1월 21일

#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 481-4211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년 3월 28일)으로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검색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추진배경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화 유도

■ 주요내용 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

■ 시 행 일 2016년 3월 28일

## 3. 벌채제도 개선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 481-8875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벌채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모두베기 최대면적을 50ha까지 허용하여 대면적 나지 노출에 따른 경관훼손,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면적을 20ha로 축소하여 벌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모두베기 벌채 시 단목존치로 인해 수목이 바람과 폭설에 부러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단목존치를 금지하고 군상 또는 수림대 형태로 존치하도록 하여 산림생태계와 유전자원이 다양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산림청, 국민 여론 수렴해 벌채제도 개선

### 2016년도 벌채제도 개선 내용

■ 추진배경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벌채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모두베기 면적 축소 : 50ha → 20ha
② 모두베기 존치 방법 변경 : 단목, 군상, 수림대 → 군상, 수림대

■ 시 행 일 2016년 5월(잠정)

## 4.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 확대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 481-4201

신(新) 기후체제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주민이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역제한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2015년) 2,000대 → (2016년) 3,000대

다만, 국고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 2016년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변경 항목

■ 추진배경 신 기후체제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거주지역 제한없이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참여 제한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 5.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 481-4191, 4192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시중금리와의 연동을 위해 13개 사업에 대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에게 변동금리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임업인이 숲속야영장, 산악레포츠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 정책 〉 통합자료실 〉 2016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및 지원확대

■ 추진배경 산림사업종급자금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로 임업인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변동금리 적용 : 3.0% 이상 사업(사립수목원 조성 등 13개 사업)
② 자금지원 대상 사업 확대 : 숲속야영장, 산악레포츠시설 추가

■ 시 행 일 2016년 1월

## 6.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 481-4094

국유림을 이용해 버섯, 산나물, 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소득사업자의 국유림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림 대부료 산정 규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국유림 가격의 10/1,000을 곱한 금액을 대부료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과 최근 공시한 해당권역의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 정책 〉 소관법령 〉 입법 및 행정예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현재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입법예고 시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 추진배경 국유림 대부료 산정방식의 합리화로 임업인 부담경감

■ 주요내용 ① 국유림 가격 및 해당 권역의 임업총수입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부료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국유림 이용

■ 시 행 일 2016년 6월(잠정)

## 7.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 481-4246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행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수목장림을 혐오시설로 보는 국민정서와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 관리를 위하여 수목장림의 조성을 제한하였습니다.
  -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2016년부터는 산림보호구역 중 국민안전, 생태계보호, 상수원 수질 등과 관련이 적은 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설치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령검색 〉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관련 주요 법령개정 사항

■ 추진배경 친환경 수목장림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산림보호구역내 설치 허용

■ 주요내용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1·2종)에서 수목장림 설치행위 허용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 가능

■ 시 행 일 2016년 1월(잠정)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226
국세청 234
국토교통부 234
해양수산부 235
환경부 238
기상청 241
국민안전처 243
보건복지부 246
고용노동부 251
국방부 254
방위사업청 260
국토교통부 263
병무청 263
농림축산식품부 263
식약처 269
문화체육관광부 270
미래창조과학부 271
방송통신위원회 274
문화재청 275
여성가족부 276
인사혁신처 280
법무부 282
법제처 282
국민권익위원회 283
조달청 284
중소기업청 286
특허청 287
산림청 287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br>(제도 시행일)<br>관계 부서 |
|---|---|---|---|
| **기획재정부** | | | |
| 1.<br>개인종합자산<br>관리계좌(ISA)<br>과세특례<br>신설 | ㅇ 신 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br>ㅇ (가입대상)근로자, 사업자, 농·어민<br>ㅇ (세제지원)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br>ㅇ (의무가입)5년, 청년 등은 3년<br>ㅇ (납입한도)2,000만원(총 1억원) | 조세<br>특례제한법<br>91의18<br>('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br>금융세제과<br>044) 215-<br>4232 |
| 2.<br>업무용<br>승용차<br>과세합리화 | ㅇ 신 설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br>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br>-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br>-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br>※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미적용<br><br>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br>ㅇ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br>(=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br>* 리스·렌트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br>ㅇ 업무용승용차 양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초과금액은 이월<br><br>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도 세법개정안(12개)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 법인세법,<br>소득세법법인<br>·<br>성실신고확인<br>대상자<br>('16년 1월 1일)<br><br>복식부기<br>작성대상<br>개인사업자<br>('17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br>법인세제과<br>044) 215-<br>4221<br><br>소득세제과<br>044) 215-<br>4211 |
| 3.<br>청년고용<br>증대세제 | ㅇ 신 설 |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씩을 세액공제 | 조세특례<br>제도법<br>('15년 12월<br>31일)<br>기획재정부<br>조세특례제도과<br>044) 215-<br>4131 |
| 4.<br>해외주식투자<br>전용펀드<br>비과세특례 신설 | ㅇ 신 설 |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특례 신설<br>ㅇ 요건<br>-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br>- (가입기간)'16. 1. 1~'17. 12. 31<br>- (가입방법)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br>ㅇ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br>ㅇ 세제지원: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 조세특례<br>제한법<br>91의17<br>('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br>금융세제과<br>044) 215-<br>4233 |
| 5.<br>이월결손금<br>연간 공제한도<br>신설 | ㅇ 신 설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br>ㅇ 일반기업 : 당해연도 소득의 80%<br>ㅇ 중소기업 : 현행유지<br><br>한도적용 제외대상<br>ㅇ 법원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br>ㅇ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br>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법인세법<br>('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br>법인세제과<br>044) 215-<br>4221 |
| 6.<br>비사업용<br>토지 양도시 중과 및<br>장기보유 특별공제<br>허용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br>ㅇ 개인 · 중소법인에 대하여 10%p 추가과세 유예 ('15. 12. 31일까지)<br>ㅇ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정상적 운용<br>ㅇ 개인 · 중소법인에 대하여 10%p 추가과세 적용<br>ㅇ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br>- 다만, '15.12.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16.1.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 계산<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br>재산세제과<br>044) 215-<br>4311 |
| 7.<br>상속재산에 대한<br>인적공제 확대 | 인적공제<br>ㅇ (자녀) 3천만원<br>ㅇ (미성년자) 20세까지 연간 5백만원<br>ㅇ (연로자) 3천만원, 60세 이상<br>ㅇ (장애인) 기대여명 기준 연간 5백만원 | 인적공제 공제액 확대 및 기준연령 조정<br>ㅇ (자녀) 5천만원<br>ㅇ (미성년자) 19세까지 연간 1천만원<br>ㅇ (연로자) 5천만원,65세 이상<br>ㅇ (장애인) 기대여명 기준 연간 1천만원<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상속세및<br>증여세법<br>('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br>재산세제과<br>044) 215-<br>4312 |

| | | | |
|---|---|---|---|
| 8.<br>동거주택<br>상속공제<br>공제율<br>상향 조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br>[①, ② 중 작은 금액]<br>① 5억원<br>②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br>동거주택 판정기간<br>○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 상속공제 금액 확대<br>(좌 동)<br>○ (좌 동)<br>○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br><br>동거주택 판정기간<br>○ (좌 동)<br>○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상속세및<br>증여세법<br>('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br>재산세제과<br>044) 215-<br>4312 |
| 9.<br>증여재산에 대한<br>공제액<br>상향 조정 | 증여공제액(10년 합산)<br>○ (배우자간) 6억원<br>○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br>○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br>○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5백만원 | 증여공제액 확대<br>○ (좌 동)<br>○ (좌 동)<br>○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br>(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간) 1천만원<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상속세및<br>증여세법<br>('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br>재산세제과<br>044) 215-<br>4312 |
| 10.<br>면세판매장에서<br>외국인관광객에<br>대한<br>즉시환급 실시 | ○ 신 설 | 면세판매자는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즉시환급할 수 있다.<br>○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br>○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거래들의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조세<br>특례제한법<br>('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br>부가가치 세제과<br>044) 215-<br>4324 |
| 11.<br>외국인<br>관광객<br>미용성형<br>의료용역에 대한<br>부가가치세<br>환급 특례 | ○ 신 설 |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 부가 가치세 환급 특례<br>○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br>○ (적용기한) '16. 4. 1~'17. 3. 31<br><br>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br>○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발급<br>○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조세<br>특례제한법<br>('16년 4월 1일)<br><br>기획재정부<br>부가가치 세제과<br>044) 215-<br>4324 |
| 12.<br>온실가스<br>배출권<br>등에 대한<br>부가가치세 면제 | ○ 신 설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br>○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br>○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br>○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 조세<br>특례제한법<br>('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br>부가가치 세제과<br>044) 215-<br>4323 |

| | | | | |
|---|---|---|---|---|
| 13.<br>역외<br>탈세<br>방지<br>강화<br>등 | ①<br>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 신 설<br>※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br>○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br>○ 제출서류: 국제거래명세서<br><br>○ 제출시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br>○ 미제출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다국적 기업에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추가<br>○ 적용대상: 일정 거래 및 자산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br>○ 제출서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br>*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 현황<br><br>○ 제출시한: 법인세 신고기한<br>○ 미제출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국제조세<br>조정법<br>('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br>국제조세제도과<br>044) 215-<br>4421 |
| | ②<br>연결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 |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 제출 의무<br><br>○ (제출자료)<br>- (특정외국법인 관련)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등<br>- (해외현지법인 관련)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 명세서 등<br><br>○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기한*<br>*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br><br>〈추 가〉 | 연결모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br><br>○ (좌 동)<br><br>- '연결법인의 신고기한*'<br>*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국제조세<br>조정법,<br>법인세법<br>('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br>국제조세<br>제도과<br>044) 215-<br>4421, 4422 |
| | ③<br>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 신설 | ○ 신 설 |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 근거 및 방법<br>○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원활한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비거주자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br>○ 금융회사는 식별한 계좌가 보고대상 계좌로 분류(국세청에 보고의무 발생)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 정보를 보유<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국제조세<br>조정법<br>('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br>국제조세제도과<br>044) 215-<br>4424 |

| | | | | |
|---|---|---|---|---|
| 13. 역외 탈세 방지 강화 등 | ④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등 위반 처벌 대상 확대 |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처벌<br><br>○ 신 설 | **처벌대상 확대**<br>○ 보안 위반 행위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회사도 처벌<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국제조세 조정법 ('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 215-4424 |
| | ⑤ 재외국민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 기준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br>○ 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 (현금, 주식 등)<br>○ 기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 초과<br>○ 신고의무자: 거주자, 내국법인<br>○ 신고제외자<br>-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중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br>-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중 주소 · 거소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등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br><br>좌동<br><br>- 1년 → 183일<br><br>- (좌 동)<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국제조세 조정법 ('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 215-4421 |
| | ⑥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주식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br>○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 보완**<br><br>○(좌 동)<br>-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도 합산<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br><br>판정기준(현행)<br>$\frac{\text{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text{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geq 50\%$<br><br>판정기준(개정)<br>$\frac{\text{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 + \left[\text{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times \frac{\text{다른 법인의 부동산}}{\text{다른 법인의 총자산}}\right]}{\text{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geq 50\%$ | 소득세법, 법인세법 ('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 215-4422 |

| | | | | |
|---|---|---|---|---|
| 13. 역외 탈세 방지 강화 등 | ⑦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 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br>○ 면제대상: 비거주자, 외국법인<br>○ 면제요건: 금융감독원 약관승인을 받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정기외화예금<br>○ 감면추징: 계약해지나 중도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br>○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적용 종료**<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조세 특례제한법 ('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 215-4422 |
| | ⑧ 해외자원 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br>○ 해외자원개발사업 배당소득 중 자원 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br>○ 적용기한: '15.12.31. | **적용 종료**<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조세 특례제한법 ('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 215-4422 |
| | ⑨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①+②<br><br>① 금액기준<br>- 7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70%<br>- 5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50%<br>②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br><br>(i)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 1인당 2천만원<br>(ii)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 : 1인당 1천5백만원<br>(iii) 기타: 1인당 1천만원 | **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br><br>① 금액기준<br>- 7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50%<br>- 5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40%<br><br>② 고용기준<br>- 7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4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30%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br><br>좌동<br><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조세특례 제한법 ('16년 1월 1일)<br><br>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 215-4423 |

| | | | | |
|---|---|---|---|---|
| 13. 역외 탈세 방지 강화 등 | ⑩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br>○ 내국인이 직 · 간접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 지분상당 투자액<br>○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외국인투자가 에게 대여한 금액 | 우회투자 감면배제 강화<br>○ 내국인이 직·간접 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 지분상당 투자액<br>○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외투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br>* 대한민국국민 등이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조세특례 제한법 ('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 215-4423 |
| | ⑪ 외국인 투자 이행지연 방지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br>○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 최초출자가 없는 경우:<br>감면결정 효력 상실<br>〈추 가〉 | 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br>○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조세특례 제한법 ('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국제 조세제도과 044) 215-4423 |
| | ⑫ 평창동계 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 신 설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식기관 및 Top스폰서 외국법인*의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br>*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말함. 단, 기록측정 등 관련업체가 일시적으로 설치한 국내고정사업장 발생소득은 법인세 면제<br>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br>*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대회 참가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br>적용기한: '18.12.31.<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조세특례 제한법 ('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 215-4423 |
| 14.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 | 개업, 폐업, 휴업시 기획재정부에 신고<br>장부 작성비치 | ○ (폐 지) | 세무사법 ('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제도과 044) 215-4134 |

| | | | | |
|---|---|---|---|---|
| 15.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 품목별 간이세율<br>○ 고급사진기 : 50%<br>○ 녹용 : 41%<br>○ 향수 : 27%<br>○ 가전제품 : 25%<br>합산세율(20%) 적용 대상<br>○ 녹용, 향수는 제외 (각 41%, 27% 적용) | 품목별 간이세율<br>○ 고급사진기 : 20%<br>○ 녹용 : 32%<br>○ 향수 : 20%<br>○ 가전제품 : 20%<br>합산세율(20%) 적용 대상<br>○ 녹용, 향수도 포함<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관세법 시행령 ('16년 1월 1일)<br>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 215-4434 |
| 16. FTA특례법 전면개편 | ① 법령 체계<br>○ 36개 조문 | 법령 체계 정비<br>○ 46개 조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6년 7월 1일)<br>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 215-4471 |
| | ② FTA 일반원칙 미규정 | FTA 일반원칙<br>○ 협정관세 적용요건<br>○ 원산지 증명원칙 | |
| | ③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미비<br>○ 조사대상자의 협정관세 적용보류<br>○ 원산지조사시 남용권 금지조항 없음 |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br>○ 원산지조사시 조사권 남용금지<br>○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 상담 및 교육 지원<br>○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감면 등 근거 마련<br>○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 |
| | ④ 하위법령 규정(시행령)<br>○ 원산지인증수출자<br>○ 협정관세 적용제한자<br>○ 관세청 지도 · 감독 근거 | 하위법령 규정 법률근거 명확화<br>○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br>○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 명확화<br>○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br>(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 국세청

| | | | |
|---|---|---|---|
| 1.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 ○ 단독가구 신청자격 60세 이상 | ○ 단독가구 신청자격 50세 이상으로 완화<br>(참고) 국세청홈페이지 〉 세목별 정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16년 1월)<br>국세청 소득지원과 044) 204-3812, 3817 |
| 2. 모바일 상담 확대 | ○ 홈택스 분야만 모바일 상담 실시 | ○ 세법분야까지 확대 실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사무처리규정 ('16년 1월)<br>국세청 고객만족센터 064) 780-6008 |

## 국토교통부

| | | | | |
|---|---|---|---|---|
| 1. 지역개발 사업 관리업무 | | ○ 국토부(지역정책과)에서 지역개발사업 관리 등 업무 총괄 | ○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br>(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지역개발사업 관리, 지방국토청에 위임 | 보조금관리법 지역개발지원법 ('16년 1월)<br>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 201-3667 |
| 2. 공장 설립, 건축 행위 등 토지 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 ① 일괄협의 제도도입 | ○ 관계기관 협의기간 약 3~4개월 소요 | ○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동시진행<br>→ 최소 60일 인허가 기간 | 토지인허가 간소화법 ('16년 1월 21일) |
| | ② 개별 위원회 통합심의 | ○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침 | ○ 위원회의 통합운영 추진<br>→ 최소 60일 이상 단축 | |
| | ③ 인허가 협의 기간 명시 | ○ 인허가 협의기간 장기화 | ○ 협의기간 및 서류 보완회수 명시<br>→ 인허가 장기화 요인 제거 | |
| | ④ 사전심의 제도 도입 | ○ 모든 인허가 조건 충족 후 인허가 신청 | ○ 요건 미충족 사전심의제도 도입<br>→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 예방 | |
| | ⑤ 이견 조정 기능 강화 | ○ 민원인이 직접 조정하여 조정 장기화 | ○ 행정기관 주도의 조정 추진<br>→ 조정의 실효성 제고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 201-3707 |
| | ⑥ 허가전담 부서 설치 | ○ 인허가 전담조직 부재 | ○ 허가전담부서 설치<br>→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 | |
| | ⑦ 통합인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 | ○ 시스템 미비 | ○ 통합지원시스템 구축<br>→ 대국민 인허가 서비스 제공<br>(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 |

| | | | |
|---|---|---|---|
| 3.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 ○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 ○ 학교 및 일반 주민<br>(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소음대책 중기계획 수립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6년 6월)<br>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 201-4342 |
|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 ○ 제1종구역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제3종 가 구역)<br>(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소음대책 중기계획 수립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6년 6월)<br>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 201-4342 |

## 해양수산부

| | | | |
|---|---|---|---|
| 1.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대출 실시 | - | ○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 구입액의 80%까지 융자금 지원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16년 3월)<br>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 200-5461 |
| 2.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 ○ 신 설 | ○ 태풍, 적조,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으로 인해 어업인 경영위기 발생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br>(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 〉 수산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 | 수산발전기금 사업지침 ('16년 1월 1일)<br>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 200-5431 |
| 3.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 ○ 유조차량만으로 급유업 등록 불가 | ○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으로 등록시켜 소규모 항만에서나 소형선박 등에 대해 급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기에 안정적인 급유 가능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6년 상)<br>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 200-5773 |
|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확대 | ○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도서 (제주본섬 제외) | ○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도서 (제주본도의 읍,면지역 포함)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16년 1월 1일)<br>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 200-5465 |
| 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 21개 품목 | ○ 24개 품목 (+3개)<br>○ 보장범위<br>- 미역·다시마 보장재해 추가 : 조수(潮水)<br>- 전복 보험목적물 확대 :<br>(기존) 해상 → (확대) 해상·육상 양식<br>(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농어업재해 보험법 및 시행령 ('16년 3월)<br>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 200-5471 |

| | | | |
|---|---|---|---|
| 6.<br>어선원보험<br>당연<br>(의무)가입대상<br>확대 | ○ 5톤이상 어선 | ○ 4톤이상 어선으로 확대<br><br>(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br>('16년 1월)<br><br>해양수산부<br>소득복지과<br>044) 200-5471 |
| 7.<br>어업인의<br>안전재해에<br>대비한<br>「어업인안전보험」 출시 | ○ 민간보험 (보조사업) | ○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국가 정책보험)<br>(보험료 50%이상 국고지원)<br><br>(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br>('16년 1월)<br><br>해양수산부<br>소득복지과<br>044) 200-5471 |
| 8.<br>혼획(混獲)이<br>허용되는 어업,<br>혼획저감장치<br>부착 조업 | ○ 혼획저감장치 기준 부재<br>(과도한 혼획 발생으로 어획물 선별에 따른 어업인 불편 발생) | ○ 여러 종류의 혼획저감장치 중 선택적으로 어구에 부착하여 조업함으로써 효율적 조업 및 자원관리 가능 | 혼획관리고시<br>('16년 6월 1일)<br><br>해양수산부<br>어업정책과<br>044) 200-5516 |
| 9.<br>비관리청<br>항만공사<br>시행허가 절차<br>간소화 |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신설·개축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함께 장비 설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 ○ 하역장비 등을 설치 신고하는 경우 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절차를 생략 | 항만법<br>('16년 6월 예정)<br><br>해양수산부<br>항만정책과<br>044) 200-5921 |
| 10.<br>1종 항만배후단지<br>민간개발·분양 허용 | ○ 공공개발·임대만 가능 | ○ 민간개발·분양도 가능(병행추진)<br><br>(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배후단지<br>개발계획 변경<br>('15년 12월)<br><br>해양수산부항만투자<br>협력과<br>044) 200-5962 |
| 11.<br>국가 시행<br>연안정비사업 대상<br>기준 상향 조정 |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br><br>(참고)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2015. 3. 3) | 연안관리법 시행령<br>('16년 1월)<br><br>해양수산부<br>연안계획과<br>044) 200-5263 |
| 12.<br>해수욕장<br>안전강화 등<br>이용환경 개선<br>(예정) | ○ 개정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 외 흡연 금지 및 차마출입 금지 | ○ 금연구역, 차마출입 구역 등 관련사항을 조례로 지정하게 하여 각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정책 시행 가능<br><br>○ 정비보수 명령 미이행시설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br>(공포 6개월 후 시행)<br><br>해양수산부<br>해양레저과<br>044) 200-5252 |
| 13.<br>육상폐기물<br>해양배출 전면금지 | ○ '15. 12. 31까지는 폐수 및 폐수오니 배출허용 | ○ 폐수 및 폐수오니 등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br><br>(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폐기물배출해역 정밀조사 | 해양환경관리법<br>제23조<br>('13년 3월)<br><br>해양수산부<br>해양보전과<br>044) 200-5303 |
| 14.<br>5개 물류기업<br>인증제<br>「물류정책기본법」으로<br>일원화 | ○ 5개 분야 및 개별법령별 시행 | ○ 물류정책기본법으로 통합<br><br>(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공고 〉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규칙 |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규칙<br>('15년 12월)<br><br>해양수산부<br>해운정책과<br>044) 200-5726 |
| 15.<br>외항여객선<br>유류할증제 개선 | ○ 외항여객선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관리 미비 | ○ 외항여객선사별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 신고·부과 및 변동사항 선사 홈페이지에 고지 | 해운법 제11조<br>('16년 1월)<br><br>해양수산부<br>해운정책과<br>044) 200-5718 |
| 16.<br>천일염 생산시설<br>전기요금 20% 인하 | ○ 전기공급약관상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하도록 정하여 연간 약 13억원 소요 |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하여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20% 인하한 요금 적용<br>(연간 약 3억원 절감) |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br>('16년 1월)<br><br>해양수산부<br>유통정책과<br>044) 200-5449 |
| 17.<br>국가와 항만공사가<br>운영하는 시설에서도<br>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 ○ 민간 운영시설 일부만 보안료 징수 가능 |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대상을 국가와 항만공사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민간의 보안료 징수요건 완화와 징수방법 개선으로 보안료 징수 실효성 제고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관련 고시<br>('16년 상)<br><br>해양수산부<br>항만운영과<br>044) 200-5777 |
| 18.<br>부두운영회사(TOC)<br>부두임대료 체계 개편 | ○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복잡한 선석임대료<br><br>○ 기존-신설 TOC간 임대료 단가 상이 | ○ 기존 선석임대료를 안벽의 재산가치를 반영한 안변 임대료로 개편<br><br>○ 창고·야적장·통로 임대료는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 '16년 상반기<br><br>해양수산부<br>항만운영과<br>044) 200- 5775 |
| 19.<br>해양원격의료<br>서비스 확대 | ○ 원양선박 6척 | ○ 원양선박 20척<br><br>(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해양원격의료서비스 추진계획<br>('16년 3월)<br><br>해양수산부<br>선원정책과<br>044) 200-5745 |

## 환경부

| | | | |
|---|---|---|---|
|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 ○ 5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16.1.1까지 적용유예함 |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공공수역으로 폐수 방류시 5개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부담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16년 1월 1일)<br>환경부 수질관리과 044) 201-7061 |
|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 ○ 기준 완화 적용 | ○ 청정지역에 설치된 3~5종 사업장 및 유예 받은 5개 업종에 대하여 기준 강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년 1월 1일)<br>환경부 수질관리과 044) 201-7071 |
| 3.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를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 |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 | 가축분뇨법 (공포 후 6개월 경과일)<br>환경부 유역총량과 044) 201-7025 |
| 4.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에 관한 규정 | ○ 미설정 | ○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에 관한 규정 (제정-신설)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년 9월 25일)<br>환경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추진단 044) 201-7266 |
| 5.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간 단축 | ○ 협의기간 30일 | ○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 통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6년 1월 1일)<br>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 201-7277 |
| 6. 사전적격심사 제도(PQ) 시행 | - | ○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사전적격심사제도 (PQ) 신설 | 환경영향평가법 ('16년 1월 21일)<br>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 201-7277 |
|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 ○ 미실시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실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15년 9월 3일)<br>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 201-7361 |
| 8.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 ○ '15년 신고대상 : 6개 업종 | ○ '16년 신고대상 : 20개 업종(14개 업종 추가)<br>* 대상업종 세부현황 : 참고 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16년 1월 1일)<br>환경부 대기관리과 044) 201-6909 |
| 9.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 - | ○ 대기오염도의 측정결과 공개 등 |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16년 1월 1일)<br>환경부 대기관리과 044) 201- 6902 |
| 10.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 ○ 도시재이용수 | ○ 도시재이용수 세분화<br>- 세척·살수용수, 청소·화장실 용수(수질기준 강화)로 세분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년 3월 5일) |
| | ○ 공업용수 수질기준으로 이용 목적, 수요자 요구와 상관없는 기준 | ○ 공업용수 수질기준 삭제<br>- 수요처와 공급처간의 협의에 의해 수요처 요구에 맞도록 개선 |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 201-7141 |

| | | | | |
|---|---|---|---|---|
| 11.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 시행 | ① 환경오염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 | | ○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추정 및 정보청구권 제도 도입 |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16년 1월 1일) |
| | ② 환경책임 보험 도입 | | ○ 환경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환경부 정책총괄과 044) 201-6650 |
| | ③ 환경오염 피해 구제 급여 도입 | | ○ 국가가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 |
| 12.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 | ○ 사업비 환수금 미납 시 독촉할 수 있는 근거 부재 | ○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을 신설하여, 환수금 미납 시 납부를 독촉하고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16년 중) |
| | | |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 201-6668 |
| 13. 파생모델별 환경표지 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 | ○ 파생제품 모델별로 환경표지 인증 신청 | ○ 기본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으면 그에 딸린 파생제품도 인증을 부여받음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16년 2월 1일) |
| | | |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 201-6669 |
| 14. 환경안전 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 | ○ '09. 3. 22 이후 설치된 어린이활동 공간은 설치 시부터 기준 준수 의무화 | ○ '09. 3.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16. 1.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화 (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 유치원은 '18. 1. 1일부터) | 환경보건법 제23조 ('16년 1월 1일) |
| | |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 201-6757 |





## 기상청

| | | | |
|---|---|---|---|
| 1. 기상정보 선진화, 슈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중요) | ○ 슈퍼컴퓨터 3호기 운영 | ○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 미리)운영<br>○ 기상청 슈퍼컴퓨팅 성능 향상<br>- 3호기(758TF) → 4호기(5,800TF)운영<br>○ 수치모델 성능 향상<br>-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해상도 증가 (25km → 17km)<br>- 국지앙상블 예측모델 운영(3km해상도)<br><br>(참고) 기상청홈페이지 〉 행정과정책 〉 보도자료 〉 기상용 슈퍼컴퓨터(4호기) 낙찰예정사 선정 | - ('16년 3월) |
| | | |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043) 711-0230 |
| 2.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 |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학 등 공공분야 개방 | ○ 개인, 기업 등 민간분야 전면 개방<br>- 웹포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br><br>(참고) 기상청홈페이지 〉 날씨 〉 태풍 | - ('16년 6월) |
| | | | 기상청 기상기술 융합팀 02) 2181-0906 |
| 3.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 확대 | ○ 인터넷망 접속<br>○ 위험기상감시, 통합기상 분석 콘텐츠 이용 | ○ 업무망(행정망)에서 접속 가능<br>○ 그래픽캐스트, 뇌우감시추적, 3차원 기상표출 시스템 활용 가능<br><br>(참고) 웹페이지 afso.kma.go.kr | - ('16년 2월) |
| | | | 기상청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02) 2181-0654 |
| 4. 3차원 기상분석 날씨 해설영상 (VOD)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 ○ 단순 날씨정보 전달<br>○ 캐스터 해설 | ○ 3차원 기상표출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적·입체적 분석<br>○ 전문 기상예보관 해설 | - ('16년 2월) |
| | | | 기상청 예보국 위험기상대응팀 02) 2181-0657 |

| | | | |
|---|---|---|---|
| 5.<br>GIS기반의 태풍 정보 동적 제공 | ○ 태풍통보문 | ○ 지리정보(GIS)기반으로 태풍 상세정보를 동적으로 제공<br><br>(참고) 기상청홈페이지 〉 날씨 〉 태풍 | –<br>('16년 5월)<br><br>기상청 예보국<br>국가태풍센터<br>070) 7850-6371 |
| 6.<br>북극해빙정보 확대 서비스 개시 | ○ 북극 전역의 해빙정보 제공<br>○ 웹기반의 서비스 | ○ 북극항로의 해빙정보 추가 제공<br>○ 북극해빙 3개월 전망 정보 제공<br>○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제공<br><br>http://seaice.kma.go.kr | –<br>('15년 11월)<br><br>기상청<br>위성분석과<br>070) 7850-5801 |
| 7.<br>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 (110번)로 확대 운영 | ○ 기상상담전화 131번호로만 운영 | ○ 기상상담전화 131번호와 더불어 110번호 연동체계 구축 | –<br>('16년 4월) |
| | ○ 예보변경 콜백 서비스<br>- 지역: 서울·경기 | ○ 기상상담전화 131번호와 더불어 110번호 연동체계 구축 | 기상청<br>기상서비스정책과<br>02) 2181-0860 |
| | ○ 외국어상담 서비스<br>- 평일 9~18시 | ○ 외국어상담서비스<br>토·일요일 9~18시로 운영시간 확대 | |
| 8.<br>웹기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시스템 운영 | ○ 지자체 공문을 통한 서비스 간접 신청 | ○ 웹기반의 신청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 | –<br>('16년 4월)<br><br>기상청<br>기상기술 융합팀<br>02) 2181-0909 |
| 9.<br>세계기상통신망 전환 | ○ 한국 - 일본기상청 통신속도: 128Kbps | ○ 한국-일본 세계기상통신망을 국제전용회선에서 WMO 기간망으로 전환(속도 4Mbps 개선 포함)<br>○ 위성관측자료의 추가 입수(GNSS Radio Occultation 등) 및 수치예보 활용<br>-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항법 시스템 | –<br>('16년 2월)<br><br>기상청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br>02) 2181-0413<br><br>국립기상과학원<br>수치모델연구부<br>수치자료응용과<br>02) 2181-6832 |





## 국민안전처

| | | | |
|---|---|---|---|
| 1.<br>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관리제 추진 | ○ 신 설 | ○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4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별 사망자수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br>('15년 6월)<br><br>국민안전처<br>안전기획과<br>02) 2100-0422 |
| 2.<br>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서비스 개선 | ○ 115개 시군구<br>○ 실시간 서비스 미제공 | ○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br>○ 교통사고 돌발정보 등 6종의 실시간 정보 제공<br>○ 쉽고 간단한 정보검색 및 제공 단계로 메뉴구조 개선 (2단계 수준) |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br>('15년 6월)<br><br>국민안전처<br>안전기획과<br>02) 2078-7820 |
| 3.<br>빅데이터 기반 「주간안전사고 예보」 분야 확대 | ○ 안전사고10종 예보<br>(화재, 농기계, 물놀이, 어린이놀이기구, 산악, 승강기, 붕괴, 폭발, 기계, 추락) | ○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보 분야 확대<br>(한파, 폭염 추가 예보)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br>('16년 1월)<br><br>국민안전처<br>안전기획과<br>02) 2078-7820 |
| 4.<br>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규정 마련 | ○ 신 설 | ○ 폭설시 적설하중에 취약한 시설물<br>(PEB, 아치판넬 구조)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부여 |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br>('16년 상반기)<br><br>국민안전처<br>자연재난대응과<br>02) 2100-0717 |

| | | | | |
|---|---|---|---|---|
| 5.<br>민간소유<br>다중이용건축물의<br>위기상황 매뉴얼<br>작성 관리 의무화 | ○ 신 설 | |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소유 연면적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에서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고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br><br>※ 다만, 민간시설은 시행일 후 3개월 이내 매뉴얼 작성·관리 | 재난안전법령<br>('15년 12월 31일)<br><br>국민안전처<br>민관제도담당관<br>02) 2100-0972 |
| 6.<br>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 ①<br>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벌칙근거 마련 | ○ 신 설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br><br>(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br>('16년 1월)<br><br>국민안전처<br>소방산업과<br>02) 2100-0867 |
| | ②<br>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근거 마련 | ○ 신 설 |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r><br>(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소방 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br>('16년 1월)<br><br>국민안전처<br>소방산업과<br>02) 2100-0867 |

| | | | | |
|---|---|---|---|---|
| 7.<br>수상구조사 자격제도신설 | ①<br>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 ○ 신 설 | ○ 구조를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자격부여<b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취득 후 2년부터 6월 내 보수교육 필수<br>○ 부정사용·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 자격취소 및 정지 가능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br>('16년 7월)<br><br>국민안전처<br>해양수색구조과<br>032) 835-2445 |
| | ②<br>수상구조법 하위법령 마련 | ○ 신 설 | ○ 시험과목·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br>○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br>○ 보수교육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br>('16년 7월)<br><br>국민안전처<br>해양수색구조과<br>032) 835-2445 |
| 8.<br>안전韓-TV 시청 방법 확대 | ○ PC에서만 시청 가능 | | ○ PC이외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도 시청가능 (반응형 웹 구축)<br>○ 스마트 DMB 앱을 통해서도 시청가능<br><br>(참고)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 홈페이지 : tv.mpss.go.kr | 국민안전처<br>직제 시행규칙<br>('15년 12월)<br><br>국민안전처<br>홍보담당관실<br>02) 2100-0019 |

## 보건복지부

| | | | |
|---|---|---|---|
| 1.<br>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ㅇ 간암 검진주기 1년<br>ㅇ 자궁경부암검진 연령 30세 | ㅇ 간암 검진주기 6개월<br>ㅇ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20세 | 암관리법 시행령<br>('16년 1월)<br><br>보건복지부<br>질병정책과<br>044) 202-2515 |
| 2.<br>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ㅇ 암·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급여 (100% 환자 부담)<br>ㅇ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희귀질환 본인부담 비율 20~60% 적용 | ㅇ ('16.1월)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급여 확대<br>ㅇ ('16.3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비율 10%)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고시<br>('16년 1월)<b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br>('16년 3월)<br><br>보건복지부<br>보험급여과<br>044) 202-2745 |
| 3.<br>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등 의료자원 신고(13종) | ㅇ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신고 이원화 | ㅇ 지자체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신고 일원화<br>-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종)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br>-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종) :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br>-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종)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br>*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br>의료법 시행규칙<br>약사법 시행규칙<br>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br>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br>('16년 1월 1일)<br><br>보건복지부<br>보험평가과<br>044) 202-2780<br><br>보건복지부<br>의료기관정책과<br>044) 202-2473<br><br>보건복지부<br>의료자원정책과<br>044) 202-2457<br><br>보건복지부<br>약무정책과<br>044) 202-2489<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br>02) 3019-7217 |
| 4.<br>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ㅇ 국가예방접종 14종백신 지원 | ㅇ 국가예방접종 15종 백신 지원<br><br>(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터 〉 보도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16년 상반기~)<br><br>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br>043) 719-6839 |
| 5.<br>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ㅇ 118만원<br>('15년 하반기, 4인가구) | ㅇ 127만원('16년, 4인가구)으로 확대<br><br>(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br>('15년 7월 개정·시행)<br><br>보건복지부<br>기초생활보장과<br>044) 202-3052 |
| 6.<br>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 ㅇ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 지급 | ㅇ 자활장려금이 내일키움통장 정부 추가 지원으로 전환<br>- 본인 저축액에 사업단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장려금 및 수익금 지원 이외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 | 국민기초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br><br>보건복지부<br>자립지원과<br>044) 202-3072, 3077 |
| 7.<br>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ㅇ 신 설 | ㅇ 700개 읍면동에 600만원 지원<br>(서울 50%, 그 외 지역 70% 지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법률<br>('16년 1월)<br><br>보건복지부<br>지역복지과<br>044) 202-3125 |
| 8.<br>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 ①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신규 설치 (17개소) | ㅇ 신 설 | ㅇ 17개소 신규 설치 | 2016년 4월 이후<br><br>보건복지부<br>장애인서비스과<br>044) 202-3347 |
| | ② 행동발달 증진센터 신규설치 (2개소) | ㅇ 1개소 운영중 | ㅇ 2개소 신규 추가 설치 | '16년 4월 이후<br><br>보건복지부<br>장애인서비스과<br>044) 202-3347 |
| | ③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 예산 2배 확대 | ㅇ 사업예산 5억 | ㅇ 사업예산 10억 | '16년 4월 이후<br><br>보건복지부<br>장애인서비스과<br>044) 202-3347 |
| | ④ 공공 후견서비스 확대 | ㅇ 신 설 | ㅇ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발달장애인 권리행사를 돕는 후견법인을 지정 등 | '16년 4월 이후<br><br>보건복지부<br>장애인서비스과<br>044) 202-3347 |

| | | | | |
|---|---|---|---|---|
| 9.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급여 대상 확대 | ①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 확대 | ㅇ 57,500명 | ㅇ 61,000명 | '16년 1월<br>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 202-3341 |
| | ② 최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가산급여 지원 | ㅇ 신 설 | ㅇ 사업예산 12억 | '16년 1월<br>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 202-3341 |
| | ③ 활동보조급여 단가 인상 | ㅇ 8,810원 | ㅇ 9,000원 | '16년 1월<br>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 202-3341 |
| 10. 전 국민 대상 노후 준비 서비스 시행 | ① 서비스 대상 확대 | ㅇ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 (2,900만명) | ㅇ 전 국민(5,100만명)<br>(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 노후준비지원법, 국민연금법 ('15년 12월)<br>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044) 202-3367 |
| | ② 서비스 영역 확장 | ㅇ 재무 중심 | ㅇ 재무 외에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 등으로 서비스 내용 확장<br>(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노후준비지원법 ('15.12월) | 노후준비지원법, 국민연금법 ('15년 12월) |
| | | ㅇ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서비스 | ㅇ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br>(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044) 202-3367 |
| | | ㅇ 공적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 조회 사이트 개별 링크 | ㅇ 공적연금정보 및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조회 기능 개발·시행 ('16. 3월)<br>(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 |
| 11.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연령 확대 | | ㅇ 만 12세 기초수급가구 아동<br>ㅇ 기초수급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 ㅇ 만 12세, 만 13세 기초수급가구 아동<br>ㅇ 기초수급가구(중위소득 40%, 생계/의료) | ('16년 1월)<br>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 202-3417 |

| | | | |
|---|---|---|---|
| 12. 입양아동 양육수당 | ㅇ ('15년)만15세 미만까지 월15만원 지급 (국내 입양가정) | ㅇ ('16년) 만16세 미만까지 월15만원 지급 (국내 입양가정) | 입양특례법 제3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16.1.1)<br>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 202- 3413 |
| 13.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편의 확대 | ① 서비스 대상자 (추계) : 3만명 | ㅇ 서비스 대상자(추계) : 3.8만명 |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07년 5월)<br>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 202-3459 |
| | ② 서비스 시행중인 대상자 및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부존재 | ㅇ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개선<br>- 서비스 시행중인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과입급시 행복e음 통해 환급하거나, 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br>- 서비스 해지자에게는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동 환급 실시 |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07년 5월)<br>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 202-3459 |
| | ③ 바우처카드 발급횟수 월5회 (매월 4, 11, 19, 22, 26일) | ㅇ 바우처카드 발급횟수 확대<br>- 매주 월, 목요일 8회 |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07년 5월)<br>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 202-3459 |
| 14. 노인 사회활동지원 | ① (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 지원 | ㅇ (사업명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16년 1월 ~ |
| | ② (사업규모) 33.7만명*<br>* 추경예산 3.3만명 별도 | ㅇ (사업규모) 38.7만명 | |
| | ③ (공익활동 대상) 기초연금수급자 (일부 프로그램 미수급자 포함) | ㅇ (공익활동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044) 202-3472 |
| | ④ (취업창업활동) 3.8만명 | ㅇ (취업창업활동) 4.9만명<br>고령 근로자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 |
| | ⑤ (전담인력 인건비) 월116.7만원 (1,929명) | ㅇ (전담인력 인건비) 월126.1만원(2,318명) | |

| | | | |
|---|---|---|---|
| 15.<br>노인 무릎인공 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 ㅇ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ㅇ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 | 노인복지법<br>('15년 3월)<br>보건복지부<br>노인정책과<br>044) 202-3458 |
| 16.<br>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ㅇ 전국 230개 | ㅇ 2016년 시간제보육반 380개로 확대<br>(참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영유아보육법<br>('14년 3월~)<br>보건복지부<br>보육사업기획과<br>044) 202-3569 |
| 17.<br>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 ㅇ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 허용 | ㅇ 개별 사업장에서는 월 60시간미만 근무하더라도, 복수사업장에서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허용<br>(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br>('16년 1월 1일)<br>보건복지부<br>국민연금정책과<br>044) 202-3633 |
| 18.<br>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 ㅇ 일련번호 일부 부착<br>ㅇ 의약품 공급시 익월말일까지 공급내역 보고 | ㅇ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 보고<br>(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의약품유통경로 한눈에본다 | 약사법 시행규칙<br>('16년 1월)<br>보건복지부<br>약무정책과<br>044) 202-2487 |
| 19.<br>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 추진 | ㅇ 산제(가루약)만 인정 | ㅇ 연조엑스제(짜먹는약), 정제(알약) 등 다양한 제형 인정 | '16년 1월 예정<br>한의약산업과<br>보험약제과 |
| 20.<br>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 ㅇ 담당 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ㅇ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업무 수행 |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br>('14년 12월)·<br>시행('15년 7월)<br>보건복지부<br>복지정보과<br>044) 202-3161 |





## 고용노동부

| | | | | |
|---|---|---|---|---|
| 1.<br>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등 | ①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ㅇ 10~20% | ㅇ 10%<br>(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br>('15년 12월)<br>고용노동부<br>고령사회인력 정책과<br>044) 202-7456 |
| | ②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설 | ㅇ 신 설 | ㅇ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으로 단축 시, 감액임금의 1/2 지원<br>(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br>('15년 12월)<br>고용노동부<br>고령사회인력 정책과<br>044) 202-7456 |
| 2.<br>"아빠의 달" 급여 지급기간 확대 | | ㅇ 1개월 | ㅇ 3개월로 지급기간 확대<br>(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마당 〉 대상자별정책(여성) 〉 일·가정 양립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br>('16년 1월)<br>고용노동부<br>여성고용정책과<br>044) 202-7472 |
| 3.<br>최저임금액 인상 | | ㅇ 시간급 5,580원 | ㅇ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br>(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e고용노동뉴스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br>(2015-39호)<br>('15년 8월 5일)<br>고용노동부<br>근로기준정책과<br>044) 202 - 7529/7535 |

| | | | | |
|---|---|---|---|---|
| 4.<br>직장어린이집<br>보육교사 등에 대한<br>인건비 지원금액 | | ○ 80만원 | ○ 60만원으로 축소<br><br>(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대상자별정책 (여성) 〉 일·가정 양립 지원 | 고용노동부고시<br>('16년 1월)<br><br>고용노동부<br>여성고용정책과044)<br>202-7479 |
| 5.<br>해외취업<br>연수 대학<br>장기 교육<br>과정 확대 | ①<br>(가칭)<br>청해진 대학 | - | ○ IT, 건축, 금융 등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학과 또는 과정을 선정하고 장기지원(최대 2년)으로 확대<br>○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학과 또는 과정)을 선정, 중장기적으로 통합 프로그램(기술+어학+문화+생활정보)를 지원<br><br>(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보도 / 해명자료 〉 연간 1만명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발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br>('09년 10월)<br><br>고용노동부<br>청년취업지원과<br>044) 202-4794 |
| | ②<br>해외취업<br>성공장려금 | ○ 취업자 1인당 300만원 지원 |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 진출 청년에 대하여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br><br>(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 / 해명자료 〉 연간 1만명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발표 | 청년고용촉진<br>특별법 제12조<br>('09년 10월)<br><br>고용노동부<br>청년취업지원과<br>044) 202-4794 |
| | ③<br>민간취업<br>알선지원금 | ○ 1인당 200만원을 알선기관에 지원 |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br>(연봉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br><br>(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보도 / 해명자료 〉 연간 1만명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발표 | 청년고용촉진<br>특별법 제12조<br>('09년 10월)<br><br>고용노동부<br>청년취업지원과<br>044) 202-4794 |

| | | | | |
|---|---|---|---|---|
| 6.<br>청년취업<br>인턴제<br>양질의<br>일자리<br>취업 기회<br>확대 | ①<br>강소·중견<br>기업 지원<br>규모 확대 | ○ 2015년 1.5만명 | ○ 2016년 3만명 | 청년취업인턴제<br>시행지침<br>('16년 1월)<br><br>고용노동부<br>청년취업<br>지원과<br>044) 202-7446 |
| | ②<br>정규직<br>전환 지원금<br>지원기간<br>확대 | ○ 인턴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총 390만원 지원비급여 | ○ 인턴수료하고 정규직 전환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95만원,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95만원 각각 지원 (총 390만원) | 청년취업인턴제<br>시행지침<br>('16년 1월)<br><br>고용노동부<br>청년취업<br>지원과<br>044) 202-7446 |
| 7.<br>장애인 고용부담금<br>부담기초액 인상 | | ○ 71만원 | ○ 75만 7천원으로 인상<br><br>(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공고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결정 고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시<br>('16년 1월)<br><br>고용노동부<br>장애인고용과<br>044) 202-7483 |
| 8.<br>장애인고용장려금<br>지급단가 인상 | | ○ 중증여성 장애인 50만원 | ○ 중증여성 장애인 지급단가 60만원<br><br>(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련,예규고시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시)<br>('16년 1월)<br><br>고용노동부<br>장애인고용과<br>044) 202-7483 |
| 9.<br>공동근로복지기금<br>도입 | | ○ 신 설 |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가능<br><br>(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최근제개정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근로복지기본법<br>('16년 1월 21일)<br><br>고용노동부<br>퇴직연금복지과<br>044) 202-7561 |

## 국방부

| | | | |
|---|---|---|---|
| 1.<br>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적용기준 개선 | ○ 채용직렬별 공채 응시자격 자격증, 면허증 필수 | ○ 필수 11개 직렬(사서 등)을 제외한 직렬은 응시자격증, 면허증을 가산점 부여로 개선<br>- 토목 등 30개 직렬/ 자격증별 3 ~ 5%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관리훈령 ('16년 1월)<br>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 748-5105 |
| 2.<br>윗몸 일으키기 시행방법 개선 | ○ 목 뒤 깍지 낀 윗몸 일으키기 | ○ '교차 윗몸 일으키기'로 개선 | 부대관리 훈령 ('16년 전반기)<br>국방부 병영정책과 02) 748-5157 |
| 3.<br>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 ○ 연간 1회 | ○ 분기 1회 실시로 확대<br>○ 미이수자 인사상 불이익 부여<br>*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대상 제외 | 국방 인사관리 훈령 ('15년 9월 16일)<br>국방부 여성정책과 02) 748-5175 |
| 4.<br>군내 「성폭력 신고앱」 개발, 운영 | - | ○ 앱을 통한 성폭력 신고 및 상담 | -<br>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02) 748-5176 |
| 5.<br>학생예비군 학업보장 조항 신설 | ○ 직장 보장 조항만 존재 | ○ 학업보장 신설 | 향토 예비군 설치법 및 병역법 ('16년 3월 이후)<br>국방부 예비전력과 02) 748-5225 |
| 6.<br>예비군 훈련 입, 퇴소 중 부상, 사망 시 국가보상 | ○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만 보상 | ○ 예비군이 의무이행(훈련 등)을 위해 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 |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병역법 ('16년 3월 이후)<br>국방부 예비전력과 02) 748-5238 |
| 7.<br>예비군 훈련면제 기준 강화 | ○ 해외출국자 180일 이상 시 훈련 면제 | ○ 해외출국자 365일 이상 시 훈련면제 |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6년 1월)<br>국방부 예비전력과 02) 748-5245 |
| 8.<br>동원예비군 대상 지휘서신 발송 방법 개선 | ○ 전자메일 또는 군사우편으로 발송 | ○ 전자메일 및 군사우편 외 문자서비스를 추가하여 발송 | 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16년 1월)<br>국방부 자원동원과 02) 748-5225 |
| 9.<br>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 | ○ 의무복무하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 ○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 | 군인복지기금법 ('16년 3월)<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1 |
| 10.<br>병 봉급 인상 (15%) | ○ 병 봉급<br>- 이병 129,400원<br>- 일병 140,000원<br>- 상병 154,800원<br>- 171,400원 | ○ 병 봉급 인상(15%)<br>- 이병 148,800원 (증 19,400원)<br>- 일병 161,000원 (증 21,000원)<br>- 상병 178,000원 (증 23,200원)<br>- 병장 197,000원 (증 25,600원) | 공무원보수규정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 | | |
|---|---|---|---|---|
| 11. 군인 수당 인상 | ① 특수지 근무수당 (병) | ㅇ 갑지역 :16,500원<br>ㅇ 을지역 :13,200원 | ㅇ 갑지역 : 25,000원<br>ㅇ 을지역 : 20,000원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② 부사관 장려수당 (해병대토우, 전차중대 근무자) | - | ㅇ 3~10년 : 50,000원<br>ㅇ 10년 이상 : 70천원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③ 항공수당 (갑) 1호 | ㅇ 영관 : 1,040,600원<br>ㅇ 대위 : 831,600원<br>ㅇ 중소위 : 639,100원 | ㅇ 영관 : 1,092,600원<br>ㅇ 대위 : 873,200원<br>ㅇ 중소위 : 671,100원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④ 선박 및 함정 근무수당 (갑) 1호 | ㅇ 위관 : 547,000원 | ㅇ 위관 : 565,000원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 748-6613 |
| | ⑤ 선박 및 함정근무 수당 (을)1호 (함정근무 항공기 정비요원) | - | ㅇ 원~중사 : 237,200원<br>ㅇ 하사 : 146,400원<br>※ 기수령 중인 기술수당 지급 제외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⑥ 잠수함 출동가산금 | ㅇ 1일 9,000원 | ㅇ 1일 10,000원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 | | |
|---|---|---|---|---|
| 11. 군인 수당 인상 | ⑦ 위험근무 수당(을) 1호 | ㅇ 영관 : 90,000원<br>ㅇ 위관 : 74,000원<br>ㅇ 원중사 : 69,000원<br>ㅇ 하사 이하 : 50,000원 | ㅇ 영관 : 128,000원<br>ㅇ 위관 : 103,600원<br>ㅇ 원중사 : 96,000원<br>ㅇ 하사 이하 : 75,000원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⑧ 위험근무 수당(병)호 (헌병 현장 감식요원) | - | ㅇ 영관 : 37,000원<br>ㅇ 위관 : 29,000원<br>ㅇ 원중사 : 25,000원<br>ㅇ 하사 이하 : 18,000원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
| | ⑨ 위험근무 수당 가산금 (병) | - | ㅇ 특수임무수행 병사 1일 3,000원 가산금 지급<br>※ 특전사, UDT / SSU, 해병대신속대응 부대 근무 병사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⑩ 대우수당 (예비전력 군무원) | - | ㅇ 기본급의 4.1%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 | | |
|---|---|---|---|---|
| 12. 나라사랑 카드 2차 사업 시행 | ① 군 마트 이용요금 적립 | - | ㅇ (A은행)이용금액에 따라 5~20% 할인<br>ㅇ (B은행)전월실적에 따라 최대 10% 할인 | ('15년 12월 19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② ATM 수수료 | ㅇ 1일 9,000원 | ㅇ 당행/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 | ('15년 12월 19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③ 교통카드 할인 (대중교통) | - | ㅇ (A은행)20% 할인(최대 1만원)<br>ㅇ (B은행)5% 할인(최대 2천원) | ('15년 12월 19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④ 공중전화 요금 할인 | ㅇ 일반공중전화 대비 20~30% 할인 | ㅇ 종전 할인에서 10% 추가 할인 | ('15년 12월 19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⑤ 병 무료 상해보험 | ㅇ 급여이체자 대상<br>ㅇ 영외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천만원<br>ㅇ 영외일반사고시 1천만원 | ㅇ (공통)카드 보유자 대상<br>ㅇ (A은행)<br>- 영외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1억원<br>- 영외 일반사고시 최대 5천만원<br>*** 영내 화재, 폭발, 붕괴사고시 최대 5천만원**<br>ㅇ (B은행)<br>- 영외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5천만원<br>- 영외 일반사고시 최대 1천만원 | ('15년 12월 19일)<br>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

| | | | | |
|---|---|---|---|---|
| 13.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립 | | ㅇ 대대급 이상 병영도서관 운영 | ㅇ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추가 설립 | 병영도서관 운영훈령 ('14년 11월 28일)<br>국방부 문화정책과 02) 748-6706 |
| 14. 보호구역 관련 제도 개선 | ① 관할부대 협의기간 단축 | ㅇ 30일 | ㅇ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관할부대 협의기간이 20일로 단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16년 3월 2일)<br>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02) 748-5844 |
| | ② 관할부대 협의 생략 | ㅇ 개인묘지만 설치 | ㅇ 개인·가족의 자연장지 추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5년 11월 18일)<br>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02) 748-5844 |

## 방위사업청

| | | | |
|---|---|---|---|
| 1.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공개 조기제공 | ○ 사업예비설명회를 사업추진기본전략이나 양산계획 확정 후 제안요청서 작성 전 1회 개최 | ○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 전에 수시 개최<br>○ 사업 예비설명회를 위한 공고 시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일반업체 및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신원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충분히 설정<br>○ 사업부서장은 필요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기밀의 제공 및 설명)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기밀의 제공 및 설명)에 따라 소요결정 문서에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항목을 열람시킬 수 있도록 함<br><br>(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 발령 | 방위 사업관리규정 ('15년 8월)<br><br>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 2079-6305 |
| 2. 군용 화약류 시험시료 품질보증의무화 | ○ 신 설 | ○ 수출 등을 위해 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함<br><br>(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 발령 | 방위 사업관리규정 ('15년 10월)<br><br>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 2079-6308 |
| 3. 업체 기술료 부담 완화 | ○ 연구개발 참여업체 기술료 면제조항 부재 | ○ 연구개발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에 기술료 면제<br><br>(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 발령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5년 12월)<br><br>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02) 2079-6387 |
| 4.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 ○ 사업중단사유<br>- 일정 및 비용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br>-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br>-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 ○ 비리의혹 또는 문제점 등이 식별된 사업 추가<br><br>(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마련 | 방위사업 관리규정 ('16년 1월)<br><br>방위사업청 사업분석과 02) 2079-6533 |
| 5.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감항인증제도 체계화 | ① 900개 기준 항목 | ○ 952개 항목으로 적용기준 확대<br><br>(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표준감항인증제도 개정 | 청고시15-2 표준감항인증 기준 ('15년 11월)<br><br>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 2079-6843 |
| | ② 신 설 | ○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신설 등 감항인증 제도 보완<br><br>(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표준감항인증제도 개정 | 청훈령342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15년 10월)<br><br>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 2079-6843 |

| | | | |
|---|---|---|---|
| 6.<br>군수품<br>선택계약제도<br>시행 | ○ 신 설 | ○ 군수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인 군이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 구축<br>- 군수품 선택계약 대상 수요물자 규정<br>- 다수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심사 기준 규정<br>- 불량한 계약상대자를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br><br>(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군수품 선택계약업무처리 규정 | 청훈령336호<br>군수품 선택계약<br>업무처리 규정<br>('15년 7월)<br><br>방위사업청<br>일반장비계약<br>02) 2079-4551 |
| 7.<br>국외조달원에<br>대한체계적인<br>등록관리 시행 | ○ 신 설 | ○ 신규 등록 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서명권자 재직증명서 추가<br>○ 입찰심사 전까지 등록정보 최신화 및3년마다 일제정비 실시<br>○ 제조능력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기관 정보제공 의뢰<br><br>(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 조달원 등록정보<br>관리지침<br>('15년 7월)<br><br>방위사업청<br>조달기획관리팀<br>02) 2079-4114 |
| 8.<br>낙찰자 결정을<br>기술력 중심의<br>평가체계로 개선 | ○ 가격평가의 비중도가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도 보다 높음 | ○ 가격평가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 평가비중을 확대<br>○ 기술평가 시 벤처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br><br>(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물품 적격심사 기준 | 물품<br>적격심사 기준<br>('16년 5월)<br><br>방위사업청<br>조달기획관리팀<br>02) 2079-4173 |
| 9.<br>방산물자 수출<br>허가기관 일원화<br>및 수출,중개업<br>신고 대상 확대 | ○ 수출허가 기관<br>- 일반방산물자<br>: 산업통상자원부<br>- 주요방산물자<br>: 방위사업청<br>○ 수출·중개업 신고대상<br>- 주요방산물자 수출시 | ○ 수출허가 기관<br>- 일반 / 주요방산물자 : 방위사업청<br><br>○ 수출·중개업 신고대상<br>- 일반 / 주요방산물자 수출시<br><br>(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와 수출허가 면제 신설 | 방위사업법<br>('15년 9월 28일)<br><br>방위사업청<br>방산기술통제관<br>02) 2079-6831~9 |

## 병무청

| | | | |
|---|---|---|---|
| 1.<br>모집병 선발 시<br>성적반영 폐지 | ○ 수능(내신) 성적 반영 선발 | ○ 자격 , 면허 및 전공 위주로 선발 | 현역병모집<br>업무규정<br>('15년 12월)<br><br>병무청<br>현역모집과<br>042) 820-2720 |
| 2.<br>재징병검사<br>일자 및 장소<br>본인선택 | ○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 외 별도 기간 내 실시 | ○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로 재징병검사 일자 등 확대 | 재징병검사 규정<br>('16년 1월)<br><br>병무청<br>징병검사과<br>042) 481-2948 |
| 3.<br>나라사랑카드<br>제휴금융은행<br>복수제도 도입 | ○ 신한은행(단수) | ○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 택 1 | 병역법시행<br>규칙 제9조<br><br>병무청<br>징병검사과<br>042) 481-2941 |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1.<br>농업정책자금<br>금리인하 | ○ 융자사업 대출금리 2.5~2.7% | ○ 융자사업 대출금리를 2.0%로 인하<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림축산식품사업<br>시행지침서<br>('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농업금융정책과<br>044) 201-1756 |
| 2.<br>국산 쌀 중국<br>수출 개시 | ○ 수출 불가 | ○ 중국 수출 가능<br>-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중국 측 실사를 받아야 함<br>- 수출 전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함<br>- 수출 검역에 합격하여야 함<br><br>(참고) 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 〉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 식물방역법,<br>시행규칙, 고시<br>('16년 1월, 잠정)<br><br>농림축산식품부<br>검역정책과<br>044) 201-2074 |

| | | | |
|---|---|---|---|
| 3.<br>농식품 벤처창업<br>활성화 지원 | ○ 신 설 | ○ 기술가치평가 지원(건당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br>○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전문가 컨설팅비 지원,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br>○ 농산업체 판매지원(시제품 판매관 운영)<br>○ 농식품 전문 크라우딩 펀딩 플랫폼 운영<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청년 일자리, 농업·농촌에서 찾으세요 | –<br>(’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과학기술정책과<br>044) 201-2453 |
| 4.<br>청년농산업<br>창업지원 | ○ 신 설 | ○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br>○ 창업초기 창업안정자금 지원(최대 2년간 월 80만원)<br>○ 창업 네트워크 구축<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 –<br>(’16년 4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농촌정책과<br>044 ) 201-1518 |
| 5.<br>활기찬<br>농촌프로젝트<br>시범사업 지원 | ○ 신 설 | ○ 시범사업 대상 6개 지구 선정 · 지원<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 농어업인<br>삶의 질법<br>농어촌정비법<br>(’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지역개발과<br>044) 201-1554 |
| 6.<br>농어업인<br>건강·연금보험료<br>지원 신청절차<br>간소화 | ○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여부 확인 필요 |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가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확인절차 생략<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br>(’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농촌복지여성과<br>044) 201-1574 |

| | | | | |
|---|---|---|---|---|
| 7.<br>농어촌<br>출신<br>대학생<br>학자금<br>융자<br>지원<br>조건<br>변경 | ①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요건 | ○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 | ○ 농촌거주 비농어업인은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br>* 농촌거주 농업인 및 취약계층은 소득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지원<br><br>(참고)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안내 〉 학자금대출소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관련공지(6번) | ’16년 1학기부터<br><br>농림축산식품부<br>농촌복지여성과<br>044) 201-1578 |
| | ② 연체이자 도입 | ○ 연체이자 없음 | ○ 연체이자 부과 : 연체기간 3개월 이하(3%), 6개월 이하(6%), 6개월 초과(9%)<br><br>(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안내 〉 학자금대출소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관련공지 (6번) | ’16년 1학기부터<br><br>농림축산식품부<br>농촌복지여성과<br>044) 201-1578 |
| | ③ 신용유의자 등록기준 변경 | ○ 연체 10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 | ○ 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br><br>(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안내 〉 학자금대출소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관련공지 (6번) | ’16년 1학기부터<br><br>농림축산식품부<br>농촌복지여성과<br>044) 201-1578 |
| 8.<br>가축<br>질병<br>취약<br>분야<br>관리<br>강화 | ① 중점방역 관리 기구 | ○ 신 설 |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br>및 하위법령<br>(’15년 12월 23일)<br><br>농림축산식품부<br>방역총괄과<br>044) 201-2360 |
| | ② 벌칙 및 과태료 상향 | ○ 벌칙 : 전염병 미신고시 범칙금 1천만원 이하<br>○ 과태료 :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시 5백만원 이하 | ○ 벌칙 : 3천만원 이하<br><br>○ 과태료 : 1천만원 이하<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법 | |
| | ③ 축산차량 GPS 장착대상 확대 |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운반차량 | ○ 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 운반차량으로 확대<br>* 2016년 3월 23일까지 등록 완료<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법 | |

| | | | |
|---|---|---|---|
| 9.<br>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등 | ○ 보전비율 90% 지원<br>○ 이의제기 절차 없음 | ○ 보전비율 95%로 인상<br>○ 대상품목, 수입기여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FTA피해 보전직불제 개선 | FTA농어업법<br>('16년 상반기)<br><br>농림축산식품부<br>농업정책과<br>044) 201-1719 |
| 10.<br>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 | ○ 저소득층 가정의 초, 중, 고교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기타 시도에서 선정한 형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 | ○ 초 · 중학생의 경우,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까지 확대 지원<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학교우유급식사업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br>('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축산경영과<br>044) 201-2340 |
| 11.<br>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 ○ 신 설 | ○ 친환경농업인 등은 회원가입,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 및 자조금을 납부해야함<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20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br>('16년 4월 예정)<br><br>농림축산식품부<br>친환경농업과<br>044) 201-2436 |
| 12.<br>창조 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 지원 | ○ 농고 : 산업연계교육사업<br>○ 농대 : 미래 전문 농업 경영인 사업 | ○ 농고 : 창조농업선도고교사업 신규 추진 (3개 학교)<br><br>○ 농대 :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신규 추진 (5개 학교)<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미래농업을 이끈다 | -<br><br>('16년)<br><br>농림축산식품부<br>경영인력과<br>044) 201-1538 |
| 13.<br>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 ○ 지원조건 :<br>보조 30%, 융자 50%(3년거치 5년 상환), 자부담 20%<br>○ 사업대상 :<br>'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 후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와 법인 | ○ 보조 20%, 융자 60%(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br><br>○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 (50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자 확대<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br>('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축산경영과<br>044) 201-2336 |
| 14.<br>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 | ○ 신 설 | ○ 농축산업 훈련 비자 : 50명<br>○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 150명<br>○ 한-뉴 농업협력장학금 : 수의과학, 산림분야별 매년 최대 2명<br>○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1명) 전문가 훈련 · 연구 지원<br>○ 수의과학분야 국제 워크숍 개최<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한-뉴질랜드 FTA 협력 챕터<br>('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축산정책과<br>044) 201-2320 |
| 15.<br>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확대 | ○ 허가대상<br>- 소 : 300㎡ 초과<br>- 돼지 : 600㎡ 초과<br>- 닭 : 950㎡ 초과<br>- 오리 : 800㎡ 초과 | ○ 허가대상 : 소규모까지 확대<br>- 소 · 돼지 · 닭 · 오리 : 50㎡ 초과<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축산법 시행령 | 축산법 시행령<br>('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축산정책과<br>044) 201-2330 |
| 16.<br>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 ○ 신 설 |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상시교육 운영<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 -<br><br>('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br>축산정책과<br>044) 201-2317 |

| | | | |
|---|---|---|---|
| 17.<br>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 ㅇ 신 설 | ㅇ 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규 시행<br>– 3개시도 선정하여 40억원 내외 지원<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044) 201-2375 |
| 18.<br>동물장묘업 등록기준 개선 | ㅇ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의무 제출 | ㅇ 폐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년 1월) |
| | ㅇ 동물화장시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 (2년 1회) | ㅇ 제외 | |
| | ㅇ 동물건조장 시설 정기검사 (3개월 1회) | ㅇ 6개월 1회로 검사 주기 완화<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 201-2383 |
| 19.<br>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 투명성 제고 | ㅇ 지원되는 보조금이 5억 원(농기자재 구매 등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선정<br>ㅇ 지원되는 보조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집행내역에 대하여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후 정산 | ㅇ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 구매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조달청에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정<br><br>ㅇ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 044) 201-1384 |





| | | | |
|---|---|---|---|
| 20.<br>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ㅇ 신 설 | ㅇ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br>ㅇ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시행<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16년 6월)<br><br>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 201-2217 |
| 21.<br>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ㅇ 신 설 | ㅇ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br>ㅇ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 설정 및 표시제 시행<br><br>(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16년 1월)<br><br>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 201-2240 |

## 식약처

| | | | |
|---|---|---|---|
| 1.<br>순대, 계란, 떡볶이 떡 등의 해썹 적용 확대 | ㅇ 떡볶이떡은 '20년까지 의무적용<br>* 순대, 계란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이 아님 | ㅇ 떡볶이떡 생산업체 중 종업원수 10인이상인 곳을 '17년까지 의무적용토록 조정<br>(→ 전체 생산량의 90%가 해썹적용)<br>ㅇ 순대, 계란 가공식품을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추가<br>(→ '17년까지 모든 업체가 해썹 적용)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6년 1월, 잠정)<br><br>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043) 719- 2856<br><br>축산물위생안전과 043 ) 719-3246 |

| | | | |
|---|---|---|---|
| 2.<br>의약품 부작용<br>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 ㅇ 의약품 부작용<br>피해구제보상<br>범위 : 사망 | ㅇ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 :<br>사망 + 장애 + 장례비 | 의약품 부작용<br>피해구제에<br>관한 규정<br>('16년 1월 1일)<br><br>식품의약품안전처<br>의약품안전평가과<br>043) 719-2705 |
| 3.<br>중앙급식<br>관리지원센터<br>설치·운영 | ㅇ 미설치 | ㅇ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br>* 법적근거('14. 1. 28)마련에 따라 2016년도부터 운영<br><br>(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식품영양 〉 관련사이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 식생활<br>안전관리 특별법<br>('15년 1월 29일<br>시행)<br><br>식품의약품안전처<br>중앙센터 TF팀<br>043) 719-2313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1.<br>관광진흥법 개정 –<br>관광호텔 건립<br>규제 완화 | ㅇ 학교 인근<br>관광호텔 설립 시<br>학교환경위생정화<br>위원회의<br>심의 필요 | ㅇ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br><br>(참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관광진흥법(의안번호 1902169) | 관광진흥법<br>('16년 3월)<br><br>문화체육관광부<br>관광산업과<br>044) 203-2834 |
| 2.<br>박물관·미술관<br>등록요건 | ㅇ 안전 관련 사항은<br>'화재·도난<br>방지 시설'만 규정 | ㅇ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br><br>(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박물관·미술관<br>진흥법 시행령<br>('16년 4월 7일)<br><br>문화체육관광부<br>박물관정책과<br>044) 203-2643 |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1.<br>저소득층<br>통신요금 감면<br>대상자 확대 | ㅇ 기초생활수급자 :<br>이동 전화 및 유선서비스요금감면<br>※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 최저생계비 기준 100%이하 | ㅇ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br>ㅇ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이동전화 요금 감면(가구당 4인 한도)<br><br>※ 맞춤형 급여 수급자 분류 :<br>· 생계 –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br>· 의료 – 중위소득 기준 40% 이하<br>· 주거 – 중위소득 기준 43% 이하<br>· 교육(학생 한정) –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전기통신사업법<br>시행령<br>('16년 1월 1일)<br><br>미래부<br>통신경쟁정책과<br>02) 2110-1927 |
| 2.<br>한도 초과<br>고지 확대 | ㅇ 사용량 한도<br>초과 이후 이용자에게<br>데이터서비스만을<br>단계별로 고지 | ㅇ 사용량 한도 초과 이후, 음성 / 문자메시지 /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단계별로 고지<br><br>(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 · 알림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요금한도 초과<br>등의 고지 (고시)<br>('16년 6월)<br><br>미래부<br>통신이용제도과<br>02) 2110-1935 |
| 3.<br>창조경제혁신센터 | ㅇ 창업지원기능 중심 | ㅇ 청년일자리 지원기능(고용존) 신설<br>–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이를 청년 구직자와 매칭<br>– 전담 대기업 인프라,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 교육훈련과정 기획·운영<br>– 취·창업을 아우르는 일자리 상담서비스 제공 | ('16년 4월)<br><br>미래부<br>창조융합 기획과<br>02) 2110-1733 |
| 4.<br>SCI 단순 논문건수<br>지표의 활용 지양,<br>질적/사업화<br>성과지표 활용 유도 | ㅇ 의무 규정 없음 | ㅇ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 지양<br>ㅇ 질적지표 가중치 60% 이상 의무화<br>ㅇ 사업화 목적 사업의 사업화지표 가중치 50% 이상 의무화<br><br>(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실시 | 성과평가법<br><br>미래창조과학부<br>성과평가과<br>02) 2110-2725 |
| 5.<br>소프트웨어<br>품질성능<br>평가시험 의무화 | ㅇ 신 설 | ㅇ 상용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로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의무적으로 실시 | 소프트웨어산업<br>진흥법, 시행령,<br>시행규칙, 고시<br>('16년 1월)<br><br>미래부<br>SW산업과<br>02) 2110-1834 |

| | | | |
|---|---|---|---|
| 6.<br>하도급 구조 개선 | ○ 무제한 다단계 하도급 가능 | ○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br><br>(참고) 미래부홈페이지 〉 뉴스·알림 〉 뉴스 〉 보도자료 〉 '16년, 공공SW 참여기업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15년 12월)<br><br>미래부 SW산업과 02) 2110-1834 |
| 7.<br>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운용재원 확대 | ○ 2,000억 원 조성 (개인부담률 2.5%) | ○ '16년도 2,100억원으로 확대 (개인부담률도 4.5% 증가)<br>※ '18년까지 3,010억원으로 확대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09년 1월)<br><br>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02) 2110-2570 |
| 8.<br>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 ○ 신 설 | ○ 연구실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br><br>(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고시 ('16년 3월)<br><br>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02) 2110-2781 |
| 9.<br>개인기초연구 연구기간과 연구비 탄력지원 | ○ 리더연구자 : 3~8억 × 9년 (3+3+3)<br>○ 중견연구자 : 1억/3억×3년<br>○ 신진연구자 : 5천 만×3년 | ○ 개인연구(1개 세부사업)<br>- 자유공모 - 탄력지원<br>• 리더연구 : 현행 유지<br>• 일반연구 : 0.1~3억×1~5년<br>• 신진연구 : 0.1~1억×1~5년<br>- 전략공모 - 별도 설정 |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5년 5월)<br><br>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02) 2110-2374 |
| | ○ 연간 연구비 고정<br>○ 연구계획 조정 불가 | ○ 연차별 연구비 차등 설정 가능<br>※ (예) 1억+1억+1억 〉〉 1.5억+0.7억+0.3억+0.5억<br>○ 타당성 평가를 거쳐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 변경 허용 |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5.5월)<br><br>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02) 2110-2374 |

| | | | |
|---|---|---|---|
| 10.<br>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모든 공관으로 확대 | ○ 입국하여 공인인증기관을 대면 방문하여 발급 | ○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대면 확인 후 참조번호 / 인가코드 수령·발급받은 번호와 카드로 공인인증서 발급 | 해당없음<br><br>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02) 2110-2921 |
| 11.<br>연구서식 표준화 | ○ 부처에 따라 26~84개의 연구서식 및 8~58개의 첨부서류 사용 | ○ 연구단계별로 7종의 표준서식과 첨부서류 9종으로 표준화<br><br>(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보도자료 〉 연구수행 관리서식 표준화 | '16년 1월 1일<br><br>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 2110-2732 |
| 12.<br>국가 R&D 연구 책임성 확보 | ① 제재 부가금 | ○ 최대 150% | ○ 최대 450%<br><br>(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5년 12월)<br><br>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 2110-2732 |
| | ② 사업비 환수금 미납 | ○ 참여제한 없음 | ○ 참여제한 2년<br><br>(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 ③ 국가 연구개발 성과 개인 명의 출원·등록 | ○ 참여제한 1년 | ○ 참여제한 2년<br><br>(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1.<br>PIMS 인증<br>기준 조정 | ○ PIMS 124개 | ○ PIMS-PIPL 통합으로 86개 인증기준으로 조정<br><br>(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br>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정보통신망법<br>('12년 2월)<br><br>개인정보보호법<br>('15년 7월)<br><br>방송통신위원회<br>개인정보보호<br>윤리과<br>02) 2110-1529 |
| 2.<br>재난방송<br>의무방송사업자<br>확대<br>- 유선 및 위성방송, IPTV에서도 재난방송 실시 | ○ 69개<br>의무방송사업자 | ○ 164개 의무방송사업자로 확대<br><br>(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br>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방송통신발전<br>기본법<br>('16년 6월 예정)<br><br>방송통신위원회<br>지상파방송정책과<br>02) 2110-1428 |
| 3.<br>재난정보의<br>정확하고 신속한<br>제공을 위한<br>재난방송<br>준수사항 마련 | | ○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br>- 대피 · 구조 ·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br>- 피해자와 그 가족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금지 및 질문과 답변, 회견 등 강요 금지<br>-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br>- 오보시 지체 없이 정정방송 실시<br><br>(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방송통신발전<br>기본법<br>('16년 6월 예정)<br><br>방송통신위원회<br>지상파방송정책과<br>02) 2110-1428 |

## 문화재청

| | | | |
|---|---|---|---|
| 1.<br>'무형문화재법'<br>시행에 따른<br>달라지는<br>무형문화재 제도 | ① (명칭)<br>중요무형 문화재 | ○ (명칭) 국가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법<br>('16년 3월 28일)<br><br>문화재청<br>무형문화재과<br>042) 481-4970 |
| | ② (범위)<br>기능, 예능 | ○ (범위) 전통지식, 생활관습 등 확대<br>- 전통적 공연·예술<br>-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br>-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br>- 구전전통 및 표현<br>-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br>-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br>-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
| | ③ (지정제도)<br>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 (지정제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제도 추가 | |
| | ④ (이수 심사 주체 변경)<br>보유자(보유단체) | ○ (이수 심사 주체 변경) 문화재청장이 심사를 거쳐 발급 | |
| | ⑤ (전수교육 제도)<br>도제식 전수교육 | ○ (전수교육 제도)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추가<br>○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재정지원 등) | |
| | ⑥ (진흥정책 강화)<br>신설 | ○ (진흥정책 강화)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 /<br>무형문화재 전승자 창업·유통·제작 지원 /<br>원재료 구입 및 전통기술 개발 등 | |
| | | (참고) 문화재청홈페이지 〉 새소식 〉 보도자료 〉<br>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 |

## 여성가족부

| | | | |
|---|---|---|---|
|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 147개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새일센터 3개소 추가 지정 및 온라인 취업지원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br>○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 및 인턴십 지원 확대<br><br>(참고) 새일센터 대표전화 ☎1544-1199 | –<br>('16년 1월)<br><br>여성가족부<br>경력단절<br>여성지원과<br>02) 2100-6203 |
|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 1,500명 지원<br>○ 보건소에서 실시 | ○ 15,000여명 지원 확대<br>○ 지역의 가까운 검진기관 이용<br><br>(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 청소년복지<br>지원법<br>('16년)<br><br>여성가족부<br>학교밖청소년<br>지원과<br>02) 2100-6315 |
|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 ○ 운영시간 :<br>주중 09:00~18:00 | ○ 운영시간 : 주중 09:00~21:00 (주말 4시간 이상)<br>* 주 1회 이상 야간, 주말 운영 정례화 | –<br>('16년 1월) |
| | ○ 지원대상 :<br>일반다문화 가족 분리 | ○ 지원대상 : 다양한 모든 가족<br>* 전업맘 → 전업맘, 워킹맘·워킹대디<br>* 결혼이민자 중심 → 모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자녀지원 | |
| | ○ 주요기능<br>- 가족교육,가족상담, 가족 돌봄 나눔 등<br>-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가족교육·상담, 통번역 등) | ○ 주요기능<br>-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br>- 가족교육,가족상담, 문화, 가족 돌봄나눔<br>- 취약·위기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br>- 양육정보 제공 및 직장내 고충상담 등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br>-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강화<br><br>(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안내 〉 가족 〉 통합적 가족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여성가족부<br>가족정책과<br>02) 2100-6326 |
| 4.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실시 | ○ '13년 실태조사 최초 실시 | ○ '15년 시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 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br><br>(참고) 1차 실태조사 결과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력개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자료실 〉 '2013년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br>('16년 1월)<br><br>여성가족부<br>경력단절<br>여성지원과<br>02) 2110-6203 |
| 5.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대상 확대 | ○ 공공기관 민간기업 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지원 | ○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등 지역 여성인재를 발굴,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br><br>(참고) 교육신청문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 02-3156-6101 | –<br>('16년 1월)<br><br>여성가족부<br>여성인력<br>개발과<br>02) 2100-6195 |
| 6.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실시 |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여성 대상으로 교육 | ○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를 경력별 직종별 맞춤형 교육 지원 | –<br>('16년 1월)<br><br>여성가족부<br>여성인력 개발과<br>02) 2100-6195 |
| 7.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 ○ 소득 · 재산조사 (금융, 부채 등) | ○ 건강보험료로 확인<br><br>(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류는 간단히, 지원은 신속히" | 청소년복지<br>지원법 시행령<br>('16년 1월)<br><br>여성가족부<br>학교밖<br>청소년지원과<br>02) 2100-6313 |
| 8.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확대 | ○ 1,460개 동아리 지원<br>○ 동아리별로 100만원 지원<br>○ 동아리연합회 자율 운영<br>○ – | ○ 2,100개 동아리 지원<br>○ 동아리별 125만원 지원으로 확대<br>○ 지역 동아리 연합회 구성·운영(지자체 동아리 예산의 10% 내외 편성)<br>○ 성과에 따른 동아리 지원<br>- 우수 동아리 선정·시상<br>- 거짓·부정으로 운영한 동아리 향후 1년간 지원 중단 | 청소년활동<br>진흥법<br>('14년 1월)<br><br>여성가족부<br>청소년활동 진흥과<br>02) 2100-6257 |
| 9.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200개 운영<br>○ 청소년동반자 1,044명 | ○ CYS-Net 운영 222개 지역으로 확대<br><br>○ 청소년동반자 1,066명으로 확대<br><br>(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전화 ☎ (지역번호) 1388 | –<br>('16년)<br><br>여성가족부<br>청소년자립지원과<br>02) 2100-6275 |

| | | | |
|---|---|---|---|
| 10.<br>청소년상담사<br>자격시험<br>시행시기 변경 | ○ 청소년상담사<br>자격시험<br>상반기(3월) 시행 |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상반기에서<br>하반기로 변경<br>*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2회(3월, 10월) 실시 | –<br>('16년)<br>여성가족부<br>청소년자립지원과<br>02) 2100-6273 |
| 11.<br>다문화가족<br>자녀성장 지원<br>프로그램 확대 | ○ 2개 센터 시범사업 | ○ 전국 80여개 센터로 확대실시<br>○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부모<br>○ 주요내용<br>-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br>-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br>- 미래설계 프로그램<br>- 위기사례 지원<br>-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 –<br>('16년 1월)<br>여성가족부<br>다문화가족 정책과<br>02) 2100-6364 |
| 12.<br>한부모<br>(미혼모·부)<br>가족 지원 강화 |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br>수당지원 대상 :<br>24개월 이하의 자녀를<br>둔 생계급여수급 청소년<br>한부모 |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 :<br>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자녀연령제한 삭제)<br>(참고)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 –<br>('16년 1월) |
| | ○ 대한법률구조공단<br>무료법률지원 대상 :<br>출생신고가 안된 자녀<br>양육 미혼부 지원 불가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지원 대상 :<br>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부터 법률지원 가능<br>*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br>* 출생신고 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br>(참고) 신청 및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여성가족부<br>가족지원과<br>02) 2100-6346 |
| 13.<br>아이돌봄서비스<br>소득판정 기준 및<br>정부지원 내용<br>변경 | ○ 아이돌봄서비스<br>이용요금 :<br>6천원 (시간당)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6.5천원 (시간당)<br>*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조정 | –<br>('16년 1월) |
| | ○ 이용가정 소득유형<br>판정기준:<br>전국가구 평균소득<br>(4인 가구 기준) | ○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br>(4인 가구 기준) | 여성가족부<br>가족지원과<br>02) 2100-6352,<br>6350 |
| | | (참고)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 | | | |
|---|---|---|---|
| 14.<br>성폭력피해자<br>보호·지원시설<br>신규 지원 | ○해바라기센터 36개소<br>○성폭력상담소 100개소<br>국비지원<br>○장애인성폭력피해자<br>보호시설 국비지원 7개소<br>○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br>시설 설치신고 시 임대차<br>계약서 구비 필요 | ○ 해바라기센터 37개소로 확대<br>○ 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104개소로 확대<br>○ 국비지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8개소로 확대<br>○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시 첨부서류에서<br>임대차계약서 제외 | 성폭력방지 및<br>피해자보호 등에<br>관한 법률 시행규칙<br>('16년 1월)<br>여성가족부<br>권익정책과<br>02) 6385-6387 |
| 15.<br>성매매 피해자<br>지원 기관 확대 |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br>센터 10개소<br>○ 성매매 피해상담소<br>26개소 |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1개소로 확대<br>○ 성매매피해 상담소 27개소로 확대 | –<br>('16년 1월)<br>여성가족부<br>권익지원과<br>02) 6385-6387,<br>6396, 6398 |
| 16.<br>가정폭력피해자<br>지원시설 확충 및<br>피해자 지원확대 | ○가족보호시설 20개소<br>○ 주거지원시설 246호<br>○ 긴급피난처 전담인력<br>18명<br>○ 보호시설 입소자<br>(비수급자) 생계비<br>491백만원<br>○ 신설 | ○ 가족보호시설 21개소로 확충<br>○ 주거지원시설 266호로 확충<br>○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36명으로 증원<br>○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 생계비 지원확대 621백만원<br>○ 가정폭력 추방주간 시행(11.25~12.1) | –<br>('16년 1월)<br>여성가족부<br>복지지원과<br>02) 2100-6426 |
| 17.<br>일본군 위안부<br>피해자<br>생활안정지원 및<br>기념사업 확대 | ○ 월생활안정지원금<br>104만3천원<br>○ 간병비 월 75만 7천원<br>○ 건강치료비 및<br>정서적안정지원금<br>월 35만 6천원<br>○「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br>기」 교육 시범사업 실시<br>○ 신설 | ○ 월생활안정지원금 126만원으로 인상<br>○ 간병비 월 105만 5천원으로 인상<br>○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금<br>월 37만 9천원으로 인상<br>○「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 전국으로<br>확대실시<br>○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br>피해자에 대한<br>생활안정지원 및<br>기념사업 등에 관한<br>법률<br>('16년 1월)<br>여성가족부<br>복지지원과<br>(02-2100-6429,<br>6430) |

## 인사혁신처

| | | | | |
|---|---|---|---|---|
| 1.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 ① 기여율(공무원)·부담률(정부) 조정 | ○ 기준소득(보수예산의) 7% | ○ 9% (1+4년간 단계적 인상)<br>*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20년)9.0% | 공무원연금법 ('16년 1월)<br>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2) 2100-6888 |
| | ② 지급률 인하 | ○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 ○ 1.7% (5+5+10년간 단계적 인하)<br>* (20년)1.79% → (25년)1.74% → (35년)1.7% | 〃 |
| | ③ 소득재분배 도입 | ○ 없음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 ○ 도입<br>* 국민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1.0% 해당부분에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 〃 |
| | ④ 연급지급 개시 연령 연장 | ○ 2010년 이전 임용자 : 60세<br>○ 2010년 이후 임용자 : 65세 | ○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br>* (22년)61세 → (33년)65세 | 〃 |
| | ⑤ 유족 연금액 인하 | ○ 2010년 이전 임용자 : 70%<br>○ 2010년 이후 임용자 : 60% | ○ 모든 공무원이 60%<br>* 현재 유족연금수급자는 70% | 〃 |
| | ⑥ 연금액 한시 동결 | ○ 매년 물가인상률로 조정 | ○ 5년간('16~'20년) 동결 | 〃 |
| | ⑦ 기준소득 월액 상한 조정 | ○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배 (840만원) | ○ 1.6배(747만원)<br>* '15년도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467만원 | 〃 |
| 1.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 ⑧ 연금액 지급정지 제도 강화 | ○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전액 정지 | ○ 현행+선거직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br>* 고액연봉 : 기준소득월액 상한 초과 소득자 | 〃 |
| | |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전년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평균임금월액(338만원) 초과시 일부 정지 |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24만원) 초과시 일부 정지 | 〃 |
| | ⑨ 분할연금 제도 도입 | ○ 없음 | ○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시 해당기간 1/2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br>*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 결과 우선 적용 | 〃 |
| | ⑩ 비공무상 장해연금 | ○ 공무상 장애로 퇴직時 지급 | ○ 현행+비공무상 장애로 퇴직時에도 지급<br>* 공상 장해연금의 1/2 | 〃 |
| | ⑪ 연금수급 요건 조정 | ○ 20년 | ○ 10년 | 〃 |
| | ⑫ 기여금 납부기간 | ○ 33년 | ○ 36년(단계적 연장)<br>* 연금액은 현행 수준으로 제한 | 〃 |
| 2. 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 | | ○ 신 설 | ○ 6급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점으로 부여<br>(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 받는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15년 11월)<br>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2) 2100-6784 |
| 3.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 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 ① 채용요건 완화 | ○ 퇴직후 3년이내 | ○ 퇴직후 10년이내로 완화<br>(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공무원임용령 참조 | 공무원임용령 ('15년 9월)<br>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02) 2100-6735 |
| | ② 임용 대기기간 축소 | ○ 결원발생시 임용 | ○ 신원조회 후 임용<br>(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공무원임용령 참조 | 공무원임용령 ('15년 11월)<br>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02) 2100-6735 |

## 법무부

| | | | |
|---|---|---|---|
| 1.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집중 | ○ 특허 침해 소송을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 |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의 경우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br>-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국관할을 인정함 | 민사소송법 ('16년 1월)<br>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2100-3166 |
| 2. 일반귀화 신청자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준 강화 | ○ 자산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 자산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또는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으로 신규 적용<br>(참고) 법무부 페이지 〉 법무뉴스 〉 보도자료 〉 일반귀화허가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 국적법시행규칙 ('16년 3월 1일)<br>법무부 국적과 02) 2110-4127 |

## 법제처

| | | | | |
|---|---|---|---|---|
| 1. 입법예고 내용 확인 및 의견 제출의 편의성 획기적 제고 | ① 입법예고 게재 방식 변화 | ○ 관보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 | ○ 관보 게재는 종전 유지 방식을 유지하고, 각 부처에서 필수적으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br>○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는 부처에서 자율적 ·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 | 법제업무 운영규정 ('16년 4월)<br>법제처 법제정책총괄 담당관실 044) 200-6566 |
| | ② 입법예고 게재 자료의 충실화 | ○ 관보에는 주요 내용, 제출 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 방법 게재<br>○ 각 부처 홈페이지에는 관보 게재 자료 외에 법령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게재 | ○ 관보 게재 자료는 종전과 동일<br>○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는 관보 게재 자료(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 방법)와 종전 각 부처 홈페이지 게재 자료(법령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공하되, 추가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 및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 · 설명 자료 제공 | 법제업무 운영규정 ('16년 4월)<br>법제처 법제정책총괄 담당관실 044) 200-6566 |
| | ③ 의견제출 방식의 편리성 제고 | ○ 관보 공고문을 통해 의견제출 방식을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한정하고, 온라인 의견제출 불가능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직접 온라인 의견제출 가능 | 법제업무 운영규정 ('16년 4월)<br>법제처 법제정책총괄 담당관실 044) 200-6566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 1.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및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 ①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 ○ 180개 법률 위반사항 | ○ 279개 법률 위반사항으로 확대<br>(참고)<br>-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b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6년 1월 25일)<br>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44) 200-7752 |
| | ②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 ○ 신고자 책임감면 (징계, 형벌)<br>○ 신고자 보호조치 | ○ 신고자 책임감면(행정처분도 포함)<br>○ 내부 공익신고자 특별보호조치 신설<br>○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br>(참고)<br>-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b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6년 1월 25일)<br>공익보호지원과 044) 200-7772 |
| | ③ 공익신고 보상제도 변경 | ○ 보상금 지급 (내외부 공익신고자, 최대 10억 원) | ○ 보상금 지급(내부 공익신고자, 최대 20억원)<br>○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내외부 공익신고자)<br>(참고)<br>-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b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6년 1월 25일)<br>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044) 200-7775 |

## 조달청

| | | | |
|---|---|---|---|
| 1.<br>공공기관 유류<br>공동구매 | ㅇ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현장 할인 3.99% | ㅇ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현장할인 5.74%<br><br>(참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안내 | 경제장관 회의 관계부처 합동 ('12년 2월)<br><br>조달청 자재장비과 070) 4056-7237 |
| 2.<br>MAS공고 및<br>계약기간 확대 | ㅇ 공고 2년.<br>ㅇ 계약 2년 | ㅇ 공고 10년, 계약 기본 3년으로 확대<br><br>(참고)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6년 3월)<br><br>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 4056-7273 |
| 3.<br>조달업체<br>인증부담 완화 | ㅇ 기술항목 3분류(고도, 일반, 녹색), 10점<br>ㅇ 대상인증 19개 | ㅇ 기술항목 2분류(고도, 일반·녹색)간소화, 7점<br>ㅇ 대상인증 11개('17.1.1 시행)<br><br>(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6년 1월)<br><br>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 4056-7273 |
| 4.<br>종합심사낙찰제<br>시행 | ㅇ 최저가낙찰제<br>- 낙찰자결정방법<br>: 입찰가격이 낮은 자 | ㅇ 종합심사낙찰제<br>- 낙찰자결정방법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16년 1월 1일)<br><br>조달청 토목환경과 070) 4056-7254 |

| | | | | |
|---|---|---|---|---|
| 5.<br>조달청<br>일반용역<br>적격심사<br>세부기준<br>신인도<br>가점<br>신설 및<br>확대 | ①<br>신인도<br>가점<br>신설 | ㅇ 신 설 |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합 (0.5점)<br>-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5점)<br>- 산업표준화법 제16조의 적용을 받는 KS서비스분야의 KS서비스인증서 보유법인(0.7점)<br>-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2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6년 1월 25일)<br><br>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6년 1월 1일 공고분부터 시행) |
| | ②<br>신인도<br>가점<br>확대 | ㅇ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혁신형(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0.5점) | ㅇ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혁신형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벤처,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0.5점) | |
| | | ㅇ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0.5점) | ㅇ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1.7점)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070) 4056-6112 |
| | | ㅇ (여성 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 5년 미만 0.5점, 5년 이상 0.7점<br><br>ㅇ (여성 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 10% 이상이고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0점 (5% 및 5인 이상 0.5점) | ㅇ (여성 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 ~ 5년 미만 0.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0.75점, 10년 이상 1점<br><br>ㅇ (여성 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 10%이상이고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점(5% 및 5인 이상 0.75점) | |

## 중소기업청

### 1. 소기업 기준 개편

| 업 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
| 1.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 2. 제조업 | C | |
| 3. 건설업 | F | |
| 4. 운수업 | H | |
| 5. 출판 · 영상 · 정보 | J | |
| 6. 전문 · 과학 · 기술 | M | |
| 7. 사업서비스업 | N | |
| 8. 보건 · 사회복지 | Q | |
| 9.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10.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D | |
| 11. 하수 · 폐기물 처리업 | E | |
| 12. 도 · 소매업 | G | |
| 13. 숙박 · 음식점업 | I | |
| 14. 금융 · 보험업 | K | |
| 15. 부동산 · 임대업 | L | |
| 16. 교육서비스업 | P | |
| 17. 예술 · 스포츠 · 여가 | R | |
| 18. 개인서비스업 | S | |

별표1) 참조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 자료 〉 소기업 범위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6년 1월 1일 시행)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 481-8913

### 2.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구매 비율(10%) 의무화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비율 10% 이상 권장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 10% 이상 달성을 의무화

판로지원법 시행령 ('16년 1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 481-4569

### 3.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 별도 지원 없음

○ 한·중 FTA 취약분야 610억 원 지원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지원정책 〉 금융 〉 지원정책 상세보기

'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6년 1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 481-4382

## 특허청

### 1. 한-대만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 실시

○ 출원인이 상대국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

○ 출원인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의무 면제
(출원서에 우선권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만 기재)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교환에 관한 고시 ('16년 1월)

특허청 정보고객 정책과 041) 481-5135

## 산림청

### 1. 숲 속 야영장 및 레포츠 시설 허용

○ 신 설

○ 보전산지 내 숲 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 허용
* 「산림휴양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최근개정법령 〉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16년 1월)

산지관리과 042) 481-4141

###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신 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참고)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령검색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6년 3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 481-4211

### 3. 벌채제도 개선

○ 모두베기 최대면적 : 50ha
○ 모두베기 존치방법 : 단목, 군상, 수림대

○ 모두베기 최대면적 : 20ha

○ 모두베기 존치방법 : 군상, 수림대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산림청, 국민 여론 수렴해 벌채제도 개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년 5월)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 481-8875

| | | | |
|---|---|---|---|
| 4.<br>주택용<br>목재펠릿보일러<br>지원범위 확대 | ㅇ 도지지역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ㅇ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br>* 지역제한 없음<br>*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제한<br><br>(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년 1월)<br><br>산림청 목재산업과 042) 481-4201 |
| 5.<br>산림사업종합자금<br>변동금리 적용 | ㅇ 고정금리<br>〈신설〉 | ㅇ 변동금리 적용<br>ㅇ 숲속야영장, 레포츠시설 추가<br><br>(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 · 정책 〉 통합자료실 〉 2016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 2016년 산림사업 종합자금집행지침 ('16년 1월)<br><br>042) 481- 4191, 4192 |
| 6.<br>임업소득사업용<br>국유림 대부료<br>경감 | ㅇ 국유림 가격에 10/1000을 곱한 금액 | ㅇ 국유림 가격에 10/10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최근 공시한 해당 권역의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br><br>(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소관법령 〉 입법 및 행정예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년 6월)<br><br>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 481-4094 |
| 7.<br>산림보호구역 내<br>수목장림 설치<br>허용 | ㅇ 신 설 | ㅇ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1·2종)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 허용<br><br>(참고)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령검색 〉 산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년 1월)<br><br>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 481-4246 |